

C2018-2-1 | 2018. 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결과보고서 -

강창용·박기환·서대석·박영구·최진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강창용 | 명예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박기환 | 선임연구위원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보고서 집필  
서대석 | 부연구위원 | 농기계 임대사업 컨설팅결과보고서 집필  
박영구 | 전문연구위원 | 농기계 임대사업 컨설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최진용 | 연구원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관련 자료 수집 및 결과 분석

수탁보고서 C2018-2-1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2.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ISBN | 978-89-6013-000-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0000000000)

## 머 리 말

---

정부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여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 기계화가 미흡한 밭작물의 기계화를 제고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경영의 중요한 요소인 경영비 절감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며, 고령화와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대안으로써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되어 상당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업 초기에 구입한 농기계의 내구연수가 한계에 도달하였으나,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2017년부터 지자체별 임대사업소 평가를 기초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단계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실질적인 운영 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차등 지원에 대한 정책 의지에 대응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바쁜 영농철에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들과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들은 물론, 공정한 평가결과에 만전을 기해주신 평가위원분들, 보고서 작성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자문위원분들과 농기계 업계, 연구계,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들 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정부의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8.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 요 약

---

### 연구의 배경

정부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여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 기계화가 미흡한 밭작물의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지자체별 임대사업소 평가를 기초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 단계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실질적인 운영 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차등 지원에 대한 정책 의지에 대응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선행연구는 물론, 정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정책 자료, 관련 법 및 제도, 각 지자체별 관련 조례안,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대사업 관련 통계, 지자체 제출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태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소 조사가 필요하여 전국의 140개소(시·군 기준) 전체를 전수조사하였다. 또한, 임대농업인 3,577명과 임대사업소 전담인력 1,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이전에 3차례에 걸친 설명회 개최를 통해 임대사업 평가에 대한 이해 제고는 물론, 평가지표 입력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담보를 위해 총 2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4차례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임대사업의 평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전담인력들을 대상으로 2차례의 워크숍을 1박 2일간 실시하였다. 이밖에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시스템 웹사이트도 구축하여 편의성을 도모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원고의뢰(3건)도 추진하였다.

##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 분석결과, 최소인력 대비 정규직 보유인력 비율은 평균 56.9%이며, 보유인력 대비 전문인력 비율은 69.3%, 전문인력 질적 평가지표의 경우 평균 87.3%이었다. 평가지표인 조직확보에서 사업소가 팀(계) 이상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비중은 평균 68.6%로 분석되었다. 임대실적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로 측정되는데,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는 평균 12.6일이며, 이용 농가 수는 48.2%로 거의 과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항목인 임대료는 표준 단기 임대료 이행률이 평균 43.6%로 나타나 표준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다. 발농사용 농기계 비율은 평균 61.0%, 파종·이식·수확기 기종 구성 비율은 20.5%이며, 발농사용 농기계 대당 이용실적은 평균 12.4일,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성 비율은 14.7% 정도이다.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인 사업 지속성 확보의 평가지표 임대 농기계 정책적합 이용률은 평균이 61.7%이며, 총 수입과 운영비용의 적정 수입 창출 달성률은 66.6% 정도이다. 최소비용 달성률은 평균 179.3%에 달하며, 연간 수익률은 -1,221.9%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출원가 비율은 평균 1,321.2%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1인당 수익의 경우 9,868만 원 내외 적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 농가 비용절감효과 중에서 이용 농가 비용절감 규모는 평균 농가당 2억 9,739만 원이며, 실효적 농사비용 절감 비율은 46.0%로 산정되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항목인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는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임대사업소 조직원 자체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측정한다. 만족도 조사결과,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1점이며, 조직원 자체 평가결과는 18점 만점에 평균 11.4점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를 위해 설정된 각각의 평가지표를 측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후, 각 평가지표별 배점에 맞춰 재계산하였다. 재계산된 점수는 140개 시·군 전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적용되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점수가 높은 상위 10개 시·군의 임대사업소만 별도로 선정하였다. 선정결과, 상위 10개 사

업소(가나다 순)는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논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안동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고 있다. 첫째, 법적 내용연수보다 짧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처리가능 내용연수를 설정하고, 이 연수를 넘는 농기계의 사용실적은 평가 시 제외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종류를 상세화하여 현장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평가지표 설정 시 판단 기준을 단순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임대사업소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측정기준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비용절감 계측에 필요한 항목은 가능한 한 농기계별로 전국적으로 통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경운정지 같은 경우는 밭농사용으로도 볼 수 있어 평가 대상 농기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특화 농기계(혹은 작업기)가 평가에서 저평가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가지표 이외의 다양한 우수 사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가점 기준은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임대사업소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평가용 전산 프로그램 간 호환이 이루어지기 입력된 자료를 평가에 그대로 연동시킬 수 있는 전산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차 례

---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 제2장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개요와 지원 실적

1.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개요 ..... 13
2. 농기계 임대사업의 정책 지원 실적 ..... 16

### 제3장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 설정 및 평가사업 개요

1. 평가 대상 및 조사방법 ..... 23
2. 평가지표 개발과 설정 ..... 27
3. 평가지표 대응 조사표 작성 ..... 50
4. 평가 진행 체계 ..... 62

### 제4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실태와 평가지표 분석결과

1. 임대사업소 주요 실태분석 ..... 73
2. 평가지표 분석결과 ..... 97
3. 평가결과 종합 ..... 108

### 제5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평가를 위한 과제

1. 임대사업소 주요 실태분석을 통한 과제 ..... 113
2. 임대사업 평가 과정상의 과제 ..... 115

제6장 요약 및 결론 .....	121
참고문헌 .....	131
부록 1 「2016년 기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조사 지침서 .....	133
부록 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위원회 및 워크숍 회의록 .....	155

## 표 차례

---

### 제1장

- <표 1-1>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임대사업소 조사 개요 ..... 7
- <표 1-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임대농업인 및 사업소 조직원  
조사 개요 ..... 7
- <표 1-3>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사전 설명회 개최 ..... 8
- <표 1-4>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개요 ..... 8
- <표 1-5>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워크숍 개최 개요 ..... 9
- <표 1-6>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관련 전문가 원고의뢰 개요 ..... 10
- <표 1-7>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 및 임무 ..... 11

### 제2장

- <표 2-1> 농기계 임대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18

### 제3장

- <표 3-1>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대상 ..... 23
- <표 3-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사업소·임대농업인·사업소  
조직원 조사 개요 ..... 26
- <표 3-3>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기준(지표) 초안 ..... 28
- <표 3-4>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 초안의 측정 기준 수정 ..... 31
- <표 3-5>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 초안의 지표별 배점 수정 ..... 33
- <표 3-6>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 및 배점 확정 ..... 34
- <표 3-7>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인력 및 조직의 지표 인력 확보  
측정기준 ..... 35

<표 3-8>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인력 및 조직의 지표 전문성 측정기준 .....	36
<표 3-9>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인력 및 조직의 지표 조직 확보 측정기준 .....	37
<표 3-10>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성과의 지표 임대실적 측정기준 .....	38
<표 3-11>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성과의 지표 이용농가 수 측정기준 .....	38
<표 3-1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임대료의 지표 임대료 수준 측정기준 .....	39
<표 3-13>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밭농업 기계화 축진의 지표 밭농사용 농기계 측정기준 .....	40
<표 3-14>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밭농업 기계화 축진의 지표 여성친화형 농기계 측정기준 .....	41
<표 3-15>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편이장비 .....	42
<표 3-16>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 지속성 확보의 지표 임대농기계 정책 적합도 측정기준 .....	43
<표 3-17>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 지속성 확보의 지표 임대사업 총 수입과 운영비용 측정기준 .....	44
<표 3-18>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 지속성 확보의 지표 연간수익 측정기준 .....	45
<표 3-19>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 지속성 확보의 지표 이용농가 비용절감효과 측정기준 .....	46
<표 3-20>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 지속성 확보의 지표 사업 지속성 측정기준 .....	47
<표 3-21>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의 지표 수요자 평가 측정기준 .....	48

<표 3-2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의 지표 조직원 평가 측정기준 .....	48
<표 3-23>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가점 및 감점의 측정기준 .....	49
<표 3-24>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안내문 .....	50
<표 3-25>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사업소 일반 현황 조사문항 .....	52
<표 3-26>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검증 시 필요한 담당자 정보 .....	53
<표 3-27>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관내 지역 통계 조사문항 .....	53
<표 3-28>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보유 농기계 현황 조사문항 .....	54
<표 3-29>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전담인력 현황 조사문항 .....	56
<표 3-30>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조직 확보 현황 조사문항 .....	57
<표 3-31>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사업소 수입 및 비용 조사문항 .....	57
<표 3-3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비용절감 참고용 조사문항 .....	58
<표 3-33>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사업 지속성 조사문항 .....	59
<표 3-34>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사업소 기타 현황 조사문항 .....	59
<표 3-35>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관련 사전 설명회 개최 개요 .....	64
<표 3-36>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	65
<표 3-37>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선임 .....	66

<표 3-38> 제1차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및 주요 논의 사항 .....	67
<표 3-39> 제2차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및 주요 논의 사항 .....	68
<표 3-40> 제3차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및 주요 논의 사항 .....	69
<표 3-41> 제4차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및 주요 논의 사항 .....	70
<표 3-42>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워크숍 개최 개요 .....	71

#### 제4장

<표 4-1>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지소(분소) 보유 여부 .....	74
<표 4-2>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교육훈련 및 순회수리 여부 .....	75
<표 4-3>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이용 용도별 보유 현황 .....	77
<표 4-4>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이용 용도별 대당 임대일수 .....	79
<표 4-5>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이용 용도별 대당 이용 농가 수 .....	80
<표 4-6>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기간 비율 .....	81
<표 4-7>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전담인력 현황 .....	82
<표 4-8>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담인력의 전문성 .....	83
<표 4-9>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전담조직 구성 여부 .....	84
<표 4-10>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심의위원회 운영 여부 .....	85
<표 4-11> 심의위원회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위원 구성 현황 .....	86
<표 4-12>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총 수입 및 총 지출 .....	88
<표 4-13>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항목별 총 수입 .....	88
<표 4-14>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항목별 총 지출 .....	89
<표 4-15>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사업 지속성 .....	91

<표 4-16>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고령농·여성농 우대 지원 및 공동이용 여부 .....	92
<표 4-17>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담당자 및 사업소 인센티브 경험 .....	93
<표 4-18>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발작물 공동경영체 운영 및 최근 3년간 사업포기 경험 .....	94
<표 4-19>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농업인 대상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 여부 .....	95
<표 4-20>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인력 및 조직의 권역별 평가결과 ·	97
<표 4-21>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성과의 권역별 평가결과 .....	99
<표 4-2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임대료의 권역별 평가결과 .....	100
<표 4-23>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발농업기계화 축진의 권역별 평가결과 .....	101
<표 4-24>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 지속성 확보(1)의 권역별 평가결과 .....	102
<표 4-25>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 지속성 확보(2)의 권역별 평가결과 .....	104
<표 4-26>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의 권역별 평가결과 .....	105
<표 4-27>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가점(1)의 권역별 평가결과 .....	106
<표 4-28>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가점(2)의 권역별 평가결과 .....	107
<표 4-29>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감점의 권역별 평가결과 .....	108
<표 4-30>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에 의한 상위 10개 시·군의 각 지표별 점수 .....	109
<표 4-31>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상위 임대사업소 명단 .....	110
<표 4-3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상위 임대사업소의 주요 우수 사항 .....	111

## 그림 차례

---

### 제1장

<그림 1-1>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시스템 웹사이트 구축 단계 ..... 9

<그림 1-2> 본 과제의 연구체계도 ..... 10

### 제3장

<그림 3-1>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를 위한 조사표 기입방식 ..... 25

<그림 3-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 수정 및 확정 과정 ..... 30

<그림 3-3>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조사 지침서  
표지 및 목차 ..... 61

<그림 3-4>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사업 연구팀 구성·운영 체계도 ..... 62

### 제4장

<그림 4-1>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유 현황 ..... 78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농업부문은 농업노동력의 양적·질적 감소, 농업 노동임금의 상승 등으로 농업소득이 위축되고 있음. 특히, 밭농사의 경우 소규모의 다품목 생산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영농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사용일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비 절감 차원에서 농기계를 개별농가가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농기계는 소규모 농가나 신규 농가가 구입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이용률도 높지 않아 이들 농가가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는 것은 비경제적임.
- 이 때문에 정부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여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기계화가 미흡한 밭작물의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였음.
  -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 5개년 계획(2002~2006년)’에 반영되어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140개 지자체에 410개소를 지원하고 있음.

-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속적인 생산비 증가와 농업의 급속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있어 농업경영의 중요한 요소인 경영비 절감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음. 또한, 고령화와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대안으로서도 기여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우선,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기간 경과함에 따라 사업 초기에 구입한 농기계의 내구연수가 한계에 도달하였으나,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sup>1</sup>
  -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성격상 운영 농기계의 사용기간이 짧아 임대행위가 자주 이뤄져 많은 관리 인력이 필요하며, 임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 의지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현 단계의 체계를 고민해야 함.
- 농기계 임대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진단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더욱이 정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17년부터 지자체별 임대사업소 평가를 기초로 사업대상자 선정시 차등 지원할 계획임.
- 따라서 현 단계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실질적인 운영 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정부의 차등 지원에 대한 정책

---

1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은 중앙정부의 사업초기 해당 농기계와 작업기 구입예산과 지방정부의 해당 농기계와 작업기 구입, 운영예산임. 중앙정부 지원예산의 명목은 사전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농기계사업의 시작에 필요한 고정자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내용연수가 지난 농기계와 작업기 구입에는 사용이 불가능함.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지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원 확보에 차이가 큼.

의지에 대응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부 임대사업 예산의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합리적인 상세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전국 임대사업소의 사업평가 순위를 확정하도록 함.
  - 또한,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는 수요자(농가 및 단체)의 만족도와 니즈 파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2. 선행연구 검토

### 2.1. 농기계 임대 관련 연구

- 강정일 외(1988)에서는 처음으로 농자재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시도 하였음. 즉, 농기계와 비료, 농약산업을 대상으로 S-C-P(구조-행태-성과)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각 농자재산업의 구조 분석을 도모하였음.
- 조성주 외(1999)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농기계 내용연수를 계측함. 내구재로서 농기계를 교체하는 시점, 즉 농기계 구입 후 사용으로 인한 비용과 수익이 균형을 이루는 사용기간을 계측한 연구임.
- 강창용 외(2003)는 국내 농기계 임대와 농기계은행에 관련된 최초의 종합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농기계 임대 및 농기계은행 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 정책의 변천은 물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지방정부와 지역농협 중심의 농기계 임대와 은행사업을 분석하였으며, 중앙정부 지원 아래 농협중앙회 시범사업까지 광범위하게 검토하였음.

- 강창용 외(2005)는 수출입을 포함한 농기계 산업의 일반적인 현황과 함께 가격경쟁력, 그리고 산업의 입장에서 기본적 경쟁요소인 기술과 가격, 관리 등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음.
- 강창용 외(2012)는 정부 주도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협 중심의 농기계은행 사업의 효율적 통합화, 분업적 협력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두 사업 주체 중 어느 한 주체에 의한 통합, 제3섹터로 통합분리, 전략적 제휴 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이규승 외(2016)는 발작물을 대상으로 기계작업으로 인한 경영비 절감효과를 추정한 바 있으며, 현재 임대사업소의 현황 분석과 해외의 임대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2.2. 국가의 주요 사업평가 관련 연구

- 마상진 외(2014)는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조직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진단 및 성과 분석을 통해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농어업회의소 사업의 추진 방향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이를 위해 사업의 평가 요인들을 구성한 후, 농어업회의소 추진 현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성과 및 당면과제를 분석하였음.
- 김미복 외(2015)는 2015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적절성, 효율성을 평가하고, 임대사업의 성과지표 개선과 발전방안을 제

안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2016)는 2015년 농협 경제사업 평가지표 개선 및 성과평가에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농협 경제사업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에 수반되는 평가지표를 개선함. 농협 경제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지표별로 평가방법을 일부 보완하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의 계획 변화에 따라 일부를 조정함. 또한, 4년 동안 진행된 농협 경제사업의 성과 변동 추이와 최종 목표 달성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농협 경제사업의 성과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음.

### 2.3. 본 연구의 차별성

-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국내외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위주임. 또한, 국가 주요사업 및 재정사업의 평가는 분야별 정책 목표 이행정도, 운영의 적합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평가로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실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실적을 기초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수 조사를 통해 사업소 주요 실태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점수화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함.

### 3. 연구범위와 방법

#### 3.1. 연구범위

- 본 연구의 조사대상 사업소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전국 140개 시·군, 410개의 임대사업소 전체이며, 조사대상 농기계는 농기계 본체와 함께 부속기 일체가 해당됨. 사업소 본소 이외에 지소(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소(분소)의 실적도 모두 대상에 포함함.
-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6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임대사업소 운영 및 임대 실적 등 전체이며, 구입기간이 2016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기계(부속기 포함)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함. 단, 임대사업 평가 시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함.

#### 3.2.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고, 정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정책 자료, 임대사업 관련 법 및 제도, 각 지자체별 관련 조례안 등을 활용하였음.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관련 통계, 지자체 제출 통계 자료 등 기초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였음.
-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태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인 임대사업소 설문조사가 필요함. 조사는 표본추출에 의한 표본조사가 아닌 시·군 기준으로 140개소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각 권역별로 조사 및 컨설팅을 담당할 전문업체에서 조사를 대행하여 진행하였음.
  - 조사는 2017년 6월에 실시하였으며, 140개소 전체가 응답하여 100%의

응답률을 기록하였음. 설문조사는 직접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작성해야 하는 조사표 분량과 회수율을 감안하여 거취조사, 이메일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음.

<표 1-1>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임대사업소 조사 개요

조사대상 및 기간	회수	회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대상: 농기계 임대사업소 140개소(시·군 기준)</li> <li>조사기간: 2017.6.5.~6.26.</li> <li>조사방법: 직접방문조사, 거취조사, 이메일조사 등</li> <li>주요 조사내용: 임대농기계 보유 현황, 인력 및 조직, 임대실적, 밭농사용 농기계, 여성친화형 농기계, 총 수입 및 비용 등</li> </ul>	140개소	100.0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해 임대사업소뿐만 아니라 임대농업인 및 사업소 조직원 설문조사도 병행하였음. 조사는 2017년 6월부터 7월초까지 실시하였으며, 각 권역별 조사 및 컨설팅 담당 전문업체가 직접 방문조사를 진행하여 수행하였음.

<표 1-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임대농업인 및 사업소 조직원 조사 개요

	주요 설문조사 개요
임대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대상: 농기계 임대농업인 3,577명</li> <li>조사기간: 2017.6.5.~7.10.</li> <li>조사방법: 직접방문조사</li> <li>주요 조사내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만족도, 관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의 적정성 등</li> </ul>
사업소 조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대상: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담인력 1,190명</li> <li>조사기간: 2017.6.5.~7.10.</li> <li>조사방법: 직접방문조사</li> <li>주요 조사내용: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인력 및 조직, 운영의 적정성 등</li> </ul>

- 본 과제는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이전에 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이를 통해 임대사업 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평가지표 입력 및 심층 면접조사 사전 교육은 물론, 세부 평가

지표 설명과 평가 추진일정을 공유하고자 하였음.

<표 1-3>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사전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권역: 영남권</li> <li>• 일시 및 장소: 2017.5.31.(수) 10:30~13:00, MH컨벤션웨딩 5층 리젠시홀</li> </ul>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권역: 호남·제주권</li> <li>• 일시 및 장소: 2017.6.1.(목) 10:30~13:00, KREI 대회의실</li> </ul>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권역: 경기·강원 및 충청권</li> <li>• 일시 및 장소: 2017.6.2.(금) 13:00~16:00, 충북농업기술원 대강당</li> </ul>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가 보다 공정하게 진행되고, 최종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음.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위원 18명, 간사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회의는 소위원회까지 포함하여 총 4회 개최하였음.

<표 1-4>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개요

	일시 및 장소
제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위원장 등 15명</li> <li>• 일시 및 장소: 2017.5.16.(화), KREI 중회의실</li> </ul>
제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위원장 등 6명</li> <li>• 일시 및 장소: 2017.7.6.(목), KREI 오송사무소 회의실</li> <li>※ 평가지표 점검 및 수정 등을 위한 소위원회 형태로 개최</li> </ul>
제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위원장 등 15명</li> <li>• 일시 및 장소: 2017.7.26.(수), 서울스퀘어 중회의실 2</li> </ul>
제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위원장 등 10명</li> <li>• 일시 및 장소: 2017.12.21.(목), KTX 용산역 회의실</li> </ul>

-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 관련 정보를 사업소 담당인력들과의 공유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공지 및 이후 추진되는 컨설팅 일정 등을 설명하고자 2차례의 워크숍을 각각 1박 2일간 실시하였음.



&lt;표 1-5&gt;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워크숍 개최 개요

	일시 및 장소
제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담인력</li> <li>• 일시 및 장소: 2017.9.4.~9.5.,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그랜드 홀</li> </ul>
제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담인력</li> <li>• 일시 및 장소: 2017.12.14.~12.15.,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그랜드 홀</li> </ul>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관련 연구협의회는 연구진 자체 회의 7회,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3회, 조사 및 컨설팅 업체 회의 3회 등 13회 개최하였음. 연구협의회에서는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설문조사 양식 설정, 사전조사 후 설문조사 내용 수정, 평가위원회 결과 내용 반영 등을 논의하였음.
- 본 과제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시스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각 지자체 사업소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도메인은 <http://www.amrbe.kr>로서 전산전문업체((주)하딘)에 개발을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각 시·군 임대사업소별로 ID와 P.W.를 부여하였음.

&lt;그림 1-1&gt;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시스템 웹사이트 구축 단계

단계	내용	비고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스템 구축</li> <li>▶ 홈페이지 구축 및 기초입력시스템 구축</li> </ul>	서버, 인원 배치 등
2단계	▶ 각 임대사업소 조사자료 송부	조사업체→KREI→하딘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지표 환산 수식 결정</li> <li>▶ 시스템 상에 구현</li> </ul>	KREI의 평가수식 사용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보완 및 구축 완료</li> <li>▶ 최종평가지표 도출(점수, 순위 등)</li> </ul>	

- 연구결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에 총 3건의 원고를 의뢰하였음. 의뢰한 원고 제목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비용절감효과 분석, 지역 적정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정,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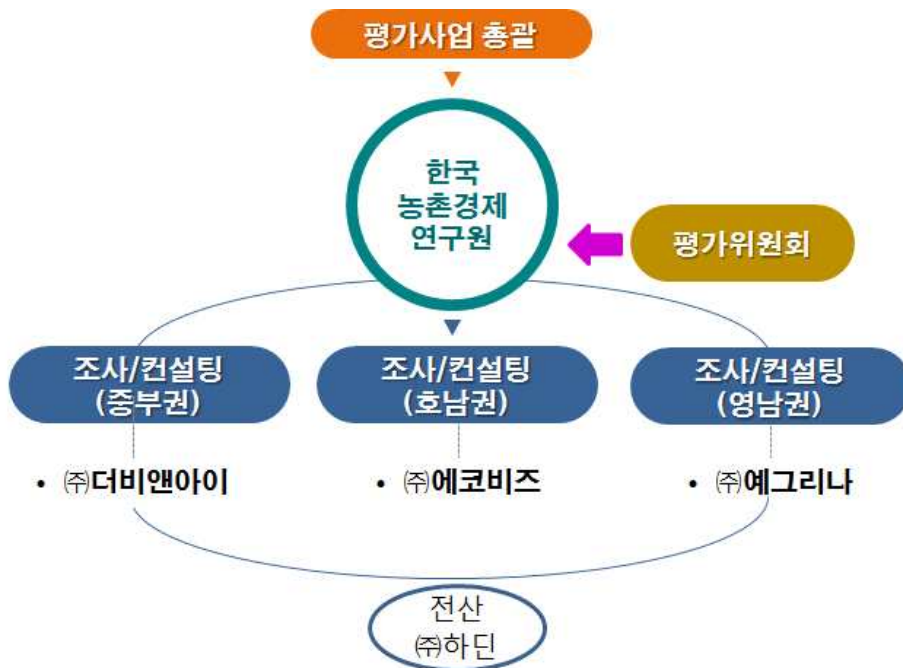
<표 1-6>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관련 전문가 원고의뢰 개요

	주요 의뢰 내용
전문가 원고의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농기계 임대사업소 비용절감효과 분석</li> <li>- 연구책임자: 환경농업연구원 김정호 박사</li> </ul>
전문가 원고의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지역 적정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정</li> <li>- 연구책임자: 경상대 김윤식 교수</li> </ul>
전문가 원고의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li> <li>- 연구자: 고려대 안병일 교수</li> </ul>

### 3.3. 연구체계

- 본 연구과제는 사업총괄 기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담당하면서 임대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임대사업소 조사/컨설팅 및 전산은 총괄 기관 책임 하에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함.

<그림 1-2> 본 과제의 연구체계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본 과제의 총괄 기관으로서 사업의 기획과 관리를 담당하며, 평가지표 개발 및 최종 분석,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설명회 개최, 보고서 작성 등의 역할을 함.
  - 공동연구기관 가운데 3개 업체는 농기계 임대사업 조사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며, 각 기관별로 담당 구역을 설정하였음.
  - 또 다른 공동연구기관 1개 업체는 전산 체계를 구축하여 임대사업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표 1-7>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 및 임무

기관명		역할 및 임무	관할 구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총괄 기획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지표 개발, 조사 및 최종 분석</li> <li>-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컨설팅 체계 구축, 관리 및 최종 시행</li> <li>- 전산 체계 구축, 관리 및 분산</li> </ul> </li> <li>○ 평가기초자료 수집 및 분산</li> <li>○ 평가결과 설명회 개최</li> <li>○ 사업 총괄보고서 작성</li> <li>○ 관계 부처 협조 및 대응</li> </ul>	전국
공동 연구	(주)더비엔아이	○ 평가관련 심층면접조사 실시	경기·강원/충청
	(주)에코비즈	○ 수요자 및 운영인력 설문조사	호남·제주
	(주)에그리나	○ 컨설팅 기초자료 수집	영남
	(주)하딘	○ 전산 체계 구축 및 지원	-



## 제 2 장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개요와 지원 실적

#### 1.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개요

- 정부는 농업기계화 사업과 더불어 농기계의 이용비용 절감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음. 그동안 농기계의 이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과 유통, 농기계 이용 방법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음. 특히, 농기계 이용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공동이용 정책들이 과거 20여년이 넘도록 시행되어 왔음.
  - 1970년대 기계계, 1980~1990년대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한 기계화 영농단이나 위탁영농회사 등이 농기계 비용 감소를 위한 공동이용 정책들임.
- 이러한 공동 이용조직들은 몇몇 농업인이 구입 주체가 되고, 이용을 같이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음. 자연히 소유와 관리, 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농업인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농업인간의 갈등이 표출되었음. 결국, 상당수의 공동이용 조직 내 농기계는 사유화로 귀결되었음.
- 최근 들어서는 농업노동력의 양적·질적 감소, 농업 노동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농가 경영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를 극복하고자 농기계

를 구입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며, 농기계의 연간 사용시간이 짧아 고정비와 수리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하게 됨.

- 특히, 밭농사는 재배규모가 영세하여 개별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이용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수도작의 경우 기계화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농기계 이용은 자율적인 농작업 위탁시장이 형성되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사용일수가 매우 제한적인 밭농사용 농기계와 작업기의 공급·이용은 미흡한 수준임.
- 이 때문에 정부는 농기계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계화가 미흡한 밭농사 등의 저비용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가나 생산자 조직 등이 농업기계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여 농작업을 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sup>2</sup>
-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거, ‘제5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02~2006년)’에서 농업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기계 구입비용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 2003년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초기에는 작목구분을 하지 않고 추진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농작업 기계화가 미흡한 밭농사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농업기계 임대사업 방향을 변경하였음.
- 농기계 임대사업은 무엇보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은 물론, 구조

---

2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은행사업은 ‘농업기계화 5개년 계획(2002~2006년)’에서 기획되어 실시한 농기계 임대 시범사업을 모태로 하고 있음. 1년간 농협중앙회, 지역조합과 함께 실시했던 이 사업은 1개년을 끝으로 그 이후에는 행정기관에서 주관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임.

적으로 농작업 기계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말농사 등의 농작업 기계화 축진이 가능해 짐으로써 경영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농기계 업체는 그동안 수요가 없어 공급하지 못했던 농기계의 수요가 창출됨으로써 농업기계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소비자도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비가 인하됨으로써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농기계 임대사업은 리스나 렌탈과 비교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sup>3</sup> 리스제이란 리스회사가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리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물건의 사용을 인정하는 제도임. 리스의 정의는 포괄적인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 거래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렌탈 거래 및 임대차 거래도 모두 포함함.

- 리스계약은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하는 회사 즉, 리스회사와 시설이나 장비를 임차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리스 물건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리스료를 지불하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함.<sup>4</sup>

-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차의 물건이 농업기계로 한정된다는 의미로서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일정기간 동안 빌려주는 사업임. 일

3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2016, p.21에서 발췌 인용하였음.

4 운용(運用)리스란 기계, 장비, 오피스텔, 차량 등을 장기적으로 임대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리스회사가 리스 자산의 유지·수선·보험료·조세공과를 부담하면서 재산을 임대하게 되므로 리스료는 높음. 금융(金融)리스는 시설 대여회사이나 실제 돈을 빌려주어 기계를 사도록 하고, 형식상 대여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하는 금융업의 일종임. 일정기간 차용인이 리스료를 지급하고, 재산의 사용권을 획득하는 리스로서 원칙적으로 리스기간 중에는 해약할 수 없으며, 리스자산에 대한 운용, 유지, 수선 등의 관리는 리스 이용자가 부담함(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6)).

반적으로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임대(리스)와 1년 미만인 단기임대(렌탈)로 구분함.

- 즉,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만 빌려주는 것으로 농기계를 소유하여 농작업을 직접 대신해 주는 농작업대행과는 차이가 있음.
- 농작업대행은 작업을 수탁 받은 사람 또는 기관에서 농작업을 직접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필요하며, 작업 시 농기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책임은 작업대행자에게 있음.
- 반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업의 운영 주체가 농기계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농기계의 조작성은 임차인인 농업인이 담당하게 되며, 계약기간 내 사용에 제한이 없고 임대료는 일정한 특징이 있음.

## 2. 농기계 임대사업의 정책 지원 실적<sup>5</sup>

### 2.1. 사업개요

- 정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의 목적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시키는데 있음. 근거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8조2에 의거함.
  - 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

<sup>5</sup> 농기계 임대사업 사업개요 및 사업시행 주요 내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서에 기초하여 재정리하였음.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의2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 농기계 임대사업은 2014년까지 총 3,079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2017년에는 540억 원, 2018년 이후에는 620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음. 농기계 임대사업의 정부 지원은 2015년까지 전액 발농사용 임대사업에만 투입되었음.
  -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은 2016년부터 책정되었으며, 매년 60억 원이 투입되어 전체 예산의 10~1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함.
  -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비도 2016년부터 책정되어 2017년까지 매년 40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2018년 이후는 60억 원으로 상향되어 집행될 예정임.
  -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비는 2016년까지 없었으나, 2017년에 20억 원, 2018년 이후는 매년 100억 원이 책정되어 있음.

&lt;표 2-1&gt; 농기계 임대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2014년 까지	2015	2016	2017	2018년 이후
합 계		307,900	44,000	52,000	54,000	62,000
국 고		152,800	22,000	26,000	27,000	31,000
지방비		155,100	22,000	26,000	27,000	31,000
밭농사용 임대사업	소계	307,900	44,000	52,000	42,000	40,000
	국고	152,800	22,000	21,000	21,000	20,000
	지방비	155,100	22,000	21,000	21,000	20,000
여성친화형 농기계	소계	-	-	6,000	6,000	6,000
	국고	-	-	3,000	3,000	3,000
	지방비	-	-	3,000	3,000	3,000
주산지 일관기계화	소계	-	-	4,000	4,000	6,000
	국고	-	-	2,000	2,000	3,000
	지방비	-	-	2,000	2,000	3,000
노후농기계 대체	소계	-	-	-	2,000	10,000
	국고	-	-	-	1,000	5,000
	지방비	-	-	-	1,000	5,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2. 주요 지원 내용

### 2.2.1.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광역시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임대대상은 농업인,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임.

- 2017년의 사업량은 42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이며, 사업 단가는 개소 당 8억~16억 원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함. 2017년의 총 사업비는 420억 원이며,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임.
- 농기계 임대는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 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음.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이모작 활성화 촉진을 위한 들녘별경영체 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또한, 인접 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농기계도 임대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하며,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 분야의 작목별 전용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 또한, 임대농기계 중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함.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 구입도 가능함. 다만, 트랙터(80마력 이상), 이앙기, 콤팩트는 구입할 수 없음.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천만 원 이내에서 집행)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 2.2.2.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주산지 일관기계화

-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사업대상자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임.
  - 지원자금은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 단가는 개소 당 5천만~8천만 원임. 2017년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임.
- 주산지 일관기계화의 지원자격으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임대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충분히 확보할 것, 주산지 중 5ha 이상 집적화 지역의 생산 단지로 공동 경작이 가능하고 생산의 규모화·집단화가 가능한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일 것임.
- 주산지 일관기계화 임대농기계 구입의 경우에는 파종·이식부터 수확까지 작업 단계별 농기계가 중심이어야 함.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 분야의 작목별 전용 농기계(콩전용 수확기 등)를 우선 구입하여 함.
- 2017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단가는 개소 당 2억 원이며,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고 50%, 지방비 50% 조건임.

## 2.2.3. 노후농기계 대체

- 노후농기계 대체 사업대상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임. 지원 자격 및 요건으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사

업 추진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지원자금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업기계 구입에 사용되어야 함.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 구입도 가능함.
  - 다만, 트랙터(80마력 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음(보통형 콤바인 제외).
- 총 사업비는 2017년 20억 원(국고 50%, 지방비 50%)이 책정되어 있으며, 사업 단가는 개소 당 2억 원임.



## 제 3 장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 설정 및 평가 개요

#### 1. 평가 대상 및 조사방법

##### 1.1. 평가 대상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의 조사대상 사업소는 정부의 지원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시행 중인 전국 140개 시·군의 41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함. 시·군 별로는 경기·강원지역이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32개소이며, 충청지역은 세종시 포함 26개소, 호남(광주광역시 포함)·제주지역의 경우 40개소, 영남 지역은 부산·대구·울산을 포함하여 42개소임.

<표 3-1>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대상

단위: 개소

권역	시·군 수	임대사업소 수	비고
경기·강원	32	94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포함
충청	26	79	세종시 포함
호남·제주	40	121	광주광역시 포함
영남	42	116	부산, 대구, 울산 포함
계	140	410	-

- 평가 대상은 시·군별로는 140개소 전체인데, 임대사업소 수로는 총 410개소에 달함.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조사대상 농기계는 전국 140개 시·군의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본체는 물론, 부속기를 포함한 일체를 대상으로 함.
-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 시점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임대사업소 운영 및 임대실적 등으로 함. 단, 2016년에 농기계를 구입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기계(부속기 포함)의 경우 평가 대상 농기계에서 제외하도록 함.

## 1.2. 평가를 위한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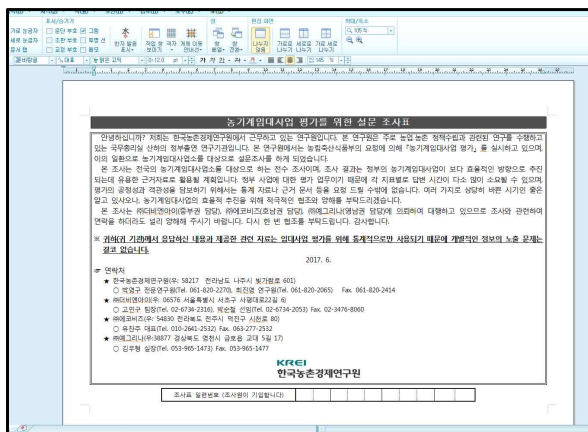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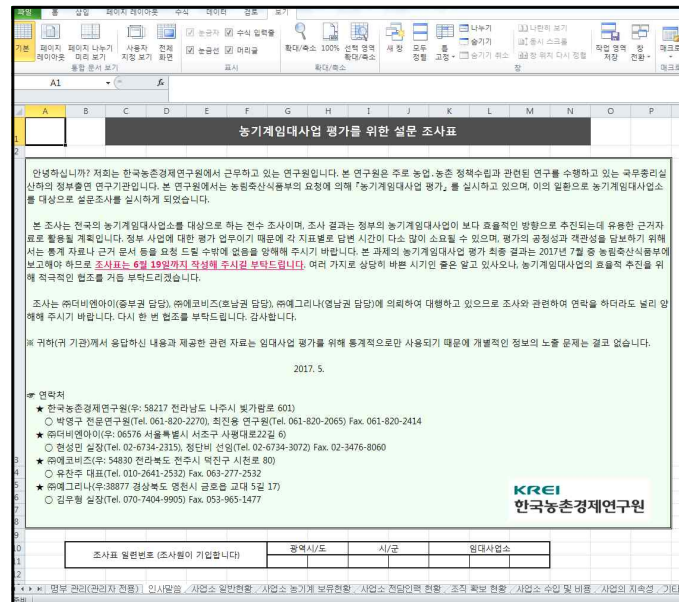
- 본 과제의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는 전국의 임대사업소를 모집단으로 하여 통계적 방법론으로 표본 추출하는 표본조사가 아닌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방법론을 채택함.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는 평가지표 확정 후, 각 지표별로 수치 산정이 가능하도록 조사표를 작성하고, 이 조사표에 의거하여 설문조사 실시하도록 함.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전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하는 직접 방문면접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함.
  - 그러나 조사대상 농기계가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물론, 부속기까지 일체를 포함하고 있어 조사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 때문에 방문조사 시 전체 조사표 작성이 불가능한 문제를 감안하여 거취조사 방법론도 병행함.
  - 또한, 조사표 회수율 제고를 위해 방문면접조사, 거취조사와 함께 이메일



조사 등의 방법론도 활용하였음.

- 조사표 기입방식은 배포한 설문조사표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 보편적이거나, 본 평가를 위한 조사표는 보유 농기계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농기계별로 임대실적 등 해당 문항을 일일이 조사표에 기입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식임.

<그림 3-1>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를 위한 조사표 기입방식



- 이로 인해 설문조사표 내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조사표를 엑셀 형태로 전환하여 엑셀 시트에 입력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입력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이트(<http://www.amrbe.kr>)에서 전산으로 입력할 수도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음.
-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해 임대사업소 이외에 별도로 임대농업인 및 사업소 조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농기계 임대농업인은 각 시·군당 20명 이상으로 총 3,577명을 조사하였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담인력 조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 가운데, 2016년에 근무하였던 전담인력 1,190명을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는 각 권역별로 전문조사 및 컨설팅 업체에서 대행하였으며, 직접 방문조사하였음.

<표 3-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사업소·임대농업인·사업소 조직원 조사 개요

조사대상	주요 설문조사 개요
임대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농기계 임대사업소 140개소(시·군 기준)</li> <li>• 조사기간: 2017.6.5.~6.26.</li> <li>• 조사방법: 직접 방문조사, 거취조사, 이메일조사 등</li> <li>• 주요 조사내용: 임대농기계 보유 현황, 인력 및 조직, 임대실적, 발농사용 농기계, 여성친화형 농기계, 총 수입 및 비용 등</li> <li>• 회수율: 100%</li> </ul>
임대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농기계 임대농업인 3,577명(각 시군 당 20명 이상)</li> <li>• 조사기간: 2017.6.5.~7.10.</li> <li>• 조사방법: 직접 방문조사</li> <li>• 주요 조사내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만족도, 관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의 적정성 등</li> </ul>
사업소 조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담인력 1,190명</li> <li>• 조사기간: 2017.6.2.~7.2.</li> <li>• 조사방법: 직접 방문조사</li> <li>• 주요 조사내용: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인력 및 조직, 운영의 적정성 등</li> </ul>

## 2. 평가지표 개발과 설정

### 2.1. 평가지표 초안 마련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지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하에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초안을 마련하였음. 평가지표 초안 작업에는 본 과제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과제 연구책임자(강창용 박사)가 참여하였으며, 농식품 부와의 수시협의회를 통해 평가기준(안)을 작성하였음.
- 작성된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기준(지표)의 초안은 인력 및 조직, 사업성과, 농기계 임대료, 발농업 기계화 촉진, 사업 지속성 확보,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 등 대분류로는 6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 대분류에 의거한 평가지표로는 인력 및 조직의 경우 인력확보, 전문성, 조직 확보 3개이며, 사업성과는 임대실적 및 이용 농가 수 2개, 농기계 임대료 지표는 임대료 수준 1개임.
  - 발농업 기계화 촉진 평가항목의 평가지표는 발농사 농기계와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2개이며, 사업 지속성 확보의 경우 임대농기계 이용 효율, 총수입과 운영비용, 연간수익, 이용농가 비용절감 효과, 신규 임대사업소 설치의 5개로 설정됨.
  -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는 사업소 이용 만족도와 농기계 임대사업의 조직원 평가 2개를 평가지표로 선정하였음.
  - 대분류 평가항목 및 각 평가지표 이외에 별도의 가점 및 감점 지표도 마련하였음.

&lt;표 3-3&gt;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기준(지표) 초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배점
인력 및 조직	1-1 인력 확보	임대사업 전담인력 확보 비율	15
	1-2 전문성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 비율	5
	1-3 조직 확보	농기계임대 전담조직 확보 여부 심의위원회 적절성	5
사업성과	2-1 임대실적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	15
	2-2 이용 농가 수	임대농기계 사용 농가 수	10
농기계 임대료	3-1 임대료 수준	농기계 임대료 적정 수준	15
밭농업 기계화 촉진	4-1 밭농사 농기계	농기계 보유대수 가운데 밭농사용 기계의 비율	5
	4-2 여성친화형 농기계	여성·고령농 조작 편의 농기계 구성 비율	5
사업 지속성 확보	5-1 임대농기계 이용효율	임대농기계 이용률 및 여성농업인 우선 임대실적	5
	5-2 총수입과 운영비용	임대수입대비 운영비용 비율	5
	5-3 연간수익	농기계임대사업 수익규모 및 수익률	5
	5-4 이용농가 비용절감 효과	임대 농기계 사용 전·후 비용 절감 크기	5
	5-5 신규 임대사업소 설치	지자체별 적정 임대사업 설치 개소 수	-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	6-1 사업소 이용 만족도	농기계임대사업 수요자 평가	3
	6-2 농기계임대사업의 조직원 평가	사업 실무자인 임대사업소 직원의 조직 합리성 평가	2
가점 및 감점	가점	정책 추진방향 반영	+1~+3
	감점	사업포기 또는 사업비 이월 등	-5~-2
계	6개 항목 15개 평가지표(가·감점 별도)		100

- 평가항목별 배점은 인력 및 조직의 경우 인력확보가 15점, 전문성 5점, 조직 확보 5점 등 25점으로 설정하였음. 사업성과 지표는 임대실적 15점, 이용농가수 10점 등 25점으로 하였음. 농기계 임대료는 15점이며, 발농업 기계화 촉진의 경우 발농사 농기계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각 5점으로 10점 만점임.
  - 사업 지속성 확보 지표는 총 20점으로서 임대농기계 이용효율, 총수입과 운영비용, 연간수익, 이용농가 비용절감효과 등을 각각 5점으로 책정하였음.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는 사업소 이용 만족도 3점, 농기계 임대사업의 조직원 평가 2점 등 5점으로 하였음.
  - 이들 평가지표는 각 지표별 점수 합계가 100점 만점이 되며, 여기에 별도로 가·감점 지표를 생성하였음. 즉, 별도로 정책 추진방향을 반영했을 경우 최소 1점에서 최대 3점까지 점수가 추가되며, 사업포기 또는 사업비 이월 등이 발생하면 최소 2점에서 최대 5점까지 점수를 감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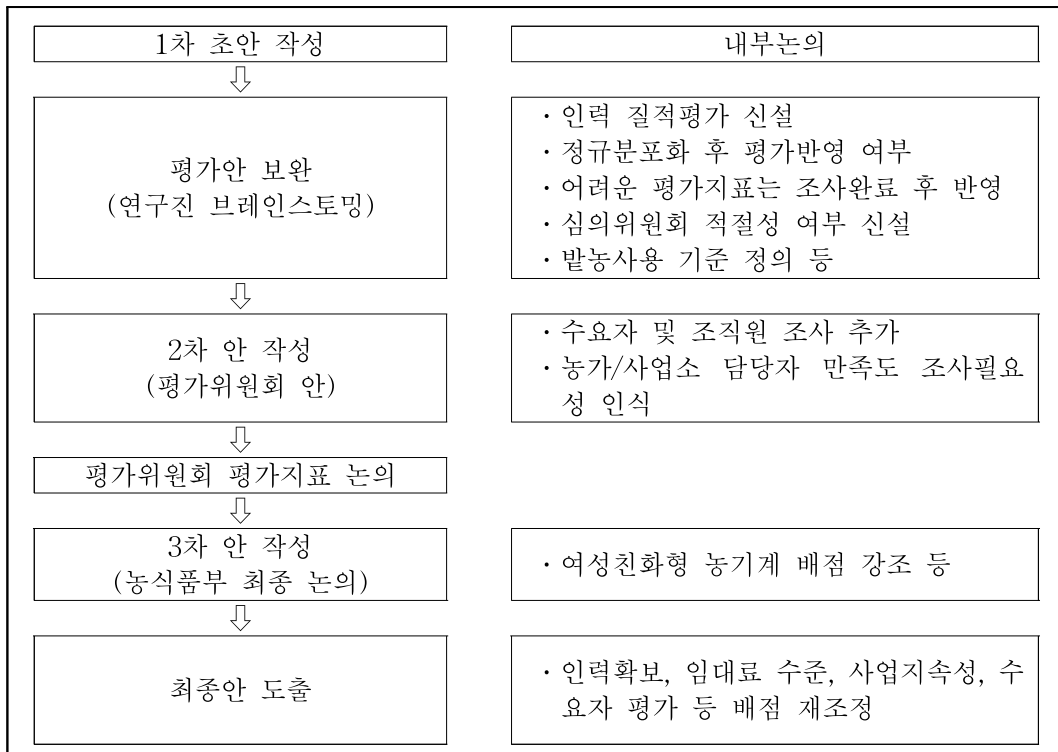
## 2.2. 평가지표 수정 및 배점 조정

### 2.2.1. 수정 과정

- 작성된 평가기준 초안을 기초로 본 과제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각 지표별 상세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이를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위원회의 논의 및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 수정안이 마련되었음.<sup>6</sup> 수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논의한 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가 확정되었음.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가 최종 확정되기까지의 수정 과정은 다음과 같음.

<sup>6</sup>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3.절을 참조할 것.

<그림 3-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 수정 및 확정 과정



### 2.2.2. 수정 및 조정 내용

- 인력 및 조직 평가항목 중에서 인력확보 평가지표는 최소 인력 충족률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전문성 지표에는 전문인력 질적 평가 항목을, 조직 확보 평가지표는 심의위원회 적절성 항목을 추가하였음.
- 사업성과 평가항목 가운데 임대실적 평가지표에서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비율은 이용 농가 수 지표에 부합하므로 이 지표로 이동시켰으며, 장기임대 농기계는 조사는 진행하되 평가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또한, 2016년 내 구입 혹은 폐기한 농기계의 경우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음.

&lt;표 3-4&gt;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 초안의 측정 기준 수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기준 변경사항
인력 및 조직	1-1 인력 확보	○ 최소 인력 충족률 항목 추가 - 권장된 최소인력 ÷ 임대사업소 총 인력×100
	1-2 전문성	○ 전문인력 질적 평가 항목 추가 - 질적전문인력 ÷ 전문인력 × 100
	1-3 조직 확보	○ 심의위원회 적절성 항목 추가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가 기준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평가
사업성과	2-1 임대실적	○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비율 → 2-2로 이동 ○ 장기임대는 조사는 하되, 평가에서 제외 ○ 2016.01.01.~12.31기간 중간에 구입하거나 폐기한 농기계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2-2 이용 농가 수	○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비율 - 임대사업소 이용농가호수/해당시군 전체 농가호수 *100
임대료	3-1 임대료 수준	○ 장기임대는 조사하되, 평가에서 제외 ○ 농작업대행 농기계 임대료를 삭제
발 농업 기계화 촉진	4-1 발농사용 농기계	○ 발농사용 농기계 대당 이용실적 항목 추가 - 대당 작업일수(면적)/잔존가격
	4-2 여성친화형 농기계	○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유 비율 ○ 여성농업인 이용비율 항목 추가 - 여성임대자수 ÷ 총 임대자 수×100
사업 지속성 확보	5-1 임대농기계 정책적합도	○ 여성친화형 임대실적 평가 항목 삭제 ○ 임대 농기계 정책 적합도로 제목 변경 ○ 농작업 용도 가중치 설정 - 경운:정지:관리:이식:수확 = 1:2:3:4:5
	5-2 총수입과 운영비용	○ 적정수입창출 평가 추가 ○ 최소비용 달성률로 변경
	5-4 이용농가 비용절감 효과	○ 비용 절감 규모 산출 방법 변경 - 농기계 감가상각비 - 임대료 × 임대일수
	5-5 사업 지속성	○ 신규임대사업소 설치 → 사업 지속성으로 대체 -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여부, 관련 조례 유무, 기금 조성 및 운용 유무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	6-1 수요자 평가	○ 수요자평가 항목 추가 - 농업인들의 이용만족도 조사
	6-2 조직원 평가	○ 임대사업소 조직원 자체 평가 항목 추가 - 사업소 조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자체평가
가점/감점	가점	○ 농기계임대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여부 삭제 - 5-5 사업지속성으로 이동 ○ 임대 농기계 이용농가 만족도 향상 노력 삭제 - 6.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로 이동 ○ 장기 임대 추진실적 항목 삭제 - 장기임대 추진은 정책적 목표와 상반될 것으로 판단
	감점	○ 미사용 농기계 비율 항목 추가 - 미사용 농기계 보유대수 / 총 농기계 보유 대수

- 평가항목 임대료의 평가지표인 임대료 수준에서 장기임대는 조사를 하되, 임대실적 평가지표와 마찬가지로 평가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료율은 삭제하도록 함.
- 발농업 기계화 촉진 평가항목 중 발농사용 농기계 평가지표는 발농사용 농기계 대당 이용실적 항목을 추가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표에서도 여성 농업인 이용비율을 추가함.
- 사업 지속성 확보의 평가지표인 임대농기계 정책적합도 중에서 여성친화형 임대실적 평가 항목은 삭제하고, 농작업 용도별 가중치를 설정하도록 함. 총 수입과 운영비용 평가지표의 경우 적정수입창출 평가를 추가하고, 임대 수입대비 운영비용 비율은 최소비용 달성률로 변경함.
  - 이용농가 비용절감효과 지표는 산출 방법을 조정하며, 사업지속성 평가 지표에서 신규 임대사업소 설치를 사업 지속성으로 대체하도록 함.
-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의 평가지표 가운데 수요자 평가에는 농업인들의 이용만족도 조사 항목을 추가하고, 조직원 평가의 지표에서는 조직원 자체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만족도 조사를 진행함.
- 가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임대 농기계 이용농가 만족도 향상 노력, 장기임대 추진실적 항목은 삭제하고, 미사용 농기계 비율 항목을 감점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
- 평가지표 초안의 각 지표별 배점은 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음. 인력 및 조직 평가항목의 경우 각 사업소 소속 지자체의 경제상황 등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인력확보 평가지표 배점을 당초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임대료 항목의 평가지표인 임대료 수준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었으며, 사업 지속성 확보 평가항목의 지표 중의 하나인 사업지속성은 신규 임대사업소 설치에서 대체됨에 따라 5점을 부여하였음.
-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의 경우 농기계 임대 주체인 농가 만족도가 중요하다라는 평가위원들 의견을 반영하여 배점을 당초 3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표 3-5>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 초안의 지표별 배점 수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변경 전 배점	변경 후 배점
인력 및 조직	1-1 인력 확보	15	<b>10</b>
	1-2 전문성	5	5
	1-3 조직 확보	5	5
사업성과	2-1 임대실적	15	15
	2-2 이용 농가 수	10	10
임대료	3-1 임대료 수준	15	<b>10</b>
발농업기계화 촉진	4-1 발농사용 농기계	5	5
	4-2 여성친화형 농기계	5	5
사업 지속성 확보	5-1 임대농기계 정책적합도	5	5
	5-2 총수입과 운영비용	5	5
	5-3 연간수익	5	5
	5-4 이용농가 비용절감 효과	5	5
	5-5 사업 지속성	-	<b>5</b>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	6-1 수요자 평가	3	<b>8</b>
	6-2 조직원 평가	2	2
가점/감점	가점	+1 ~ +3	+1 ~ +3
	감점	-5 ~ -2	-5 ~ -2

### 2.3. 평가지표 및 상세 평가항목 확정

- 평가항목의 지표 수정, 각 지표별 배점을 조정하는 등의 과정을 완료하여 최종적으로는 평가항목 6개 및 평가지표 15개를 확정하였으며, 각 지표별로 상세 평가지표도 확정하게 되었음.

&lt;표 3-6&gt;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 및 배점 확정

평가항목(6)	평가지표(15)	세부 평가지표	배점	
인력 및 조직	1-1 인력확보	가. 최소인력 대비 정규직 보유인력 비율	5	10
		나. 최소인력 충족률	5	
	1-2 전문성	가. 보유인력 대비 전문인력 비율	3	5
		나. 전문인력 질적 평가	2	
	1-3 조직확보	가. '팀(계)' 이상 명시된 조직, 사무분장 여부	3	5
		나. 심의위원회 적절성	2	
사업성과	2-1 임대실적	○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	15	15
	2-2 이용 농가수	○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 비율	10	10
임대료	3-1 임대료 수준	○ 표준 단기 임대료 이행률	10	10
발농업 기계화 촉진	4-1 발농사용 농기계	가. 발농사용 농기계 비율	1	5
		나. 과중·이식·수확기 기종 구성 비율	3	
		다. 발농사용 농기계 대당 이용실적	1	
	4-2 여성친화형 농기계	가.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유 비율	2	5
나. 여성농업인 이용비율	3			
사업 지속성 확보	5-1 임대농기계 정책적합도	○ 임대 농기계의 정책적합 이용률	5	5
	5-2 총수입과 운영비용	가. 적정수입창출 달성률	3	5
		나. 최소비용 달성률	2	
	5-3 연간수익	가. 연간 수익률	2	5
		나. 매출 원가비율	2	
		다. 1인당 수익	1	
	5-4 이용농가 비용절감 효과	가. 이용농가 비용 절감 규모	3	5
		나. 실효적 농사비용 절감 (절감액/보유농기계자산)	2	
	5-5 사업지속성	가. 농기계임대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1	5
		나.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조례 유무	2	
다. 기금 조성 및 운용 유무		2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	6-1 수요자 평가	○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8	8
	6-2 조직원 평가	○ 임대사업소 조직원 자체 평가	2	2
가점/감점	가점	○ 정책 추진방향 반영	+1~+3	+1~+3
	감점	○ 사업포기 또는 사업비 이월 등	-5~-2	-5~-2
계(가·감점은 별도)			100	100

- 확정된 평가항목에 대한 상세한 측정방법과 측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력 및 조직의 평가지표인 인력 확보는 농기계 보유대수별로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임. 측정기준은 최소인력 대비 정규직 보유 인력 비율 및 최소인력 충족률임.

<표 3-7>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인력 및 조직의 지표 인력 확보 측정기준

평가 지표	1-1. 인력 확보																												
측정 방법	○ 농기계 보유 대수별 임대사업 운영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하여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최소인원 확보 여부를 판단																												
	평가지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가. 최소인력 대비 정규직 보유인력 비율																												
	나. 최소인력 충족률																												
측정 기준	<p><b>가. 최소인력 대비 정규직 보유 인력 비율</b></p> <p><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인원 대비 전담인원(정규직, 계약직)의 인력확보율을 기준으로 평가</li> <li>○ 전담인력은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한정</li> <li>○ 조사결과 보유 농기계가 400이상이 많이 나올 경우 최소인원 수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규직 보유인력 비율: <math>\text{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인원} \div \text{최소인원(계약직 포함)} \times 100</math></li> <li>② 최소인원: <math>\text{보유 대수별 최소인력} + (\text{분소 수} \times 2\text{명})</math>                      * 단, 분소가 있을 경우 계약직만 분소 개소 수 <math>\times 2\text{명}</math> 추가                      예) 분소 1개소, 분소 2개소, 농기계 대수 350일 경우: 정규직 4명, 계약직 10명(6+4)으로 총 14명의 최소 운영 인원 필요                      * 농기계 보유대수별 임대사업 운영 최소 인원(명)</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보유농기계</th> <th>100대 미만</th> <th>~200</th> <th>~300</th> <th>~400</th> <th>400대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정규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계약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r> </tbody> </table>					보유농기계	100대 미만	~200	~300	~400	400대 이상	정규직	1	2	3	4	5	계약직	1	3	5	6	7	계	2	5	8	10	12
보유농기계	100대 미만	~200	~300	~400	400대 이상																								
정규직	1	2	3	4	5																								
계약직	1	3	5	6	7																								
계	2	5	8	10	12																								
	<p><b>나. 최소인력 충족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인력 충족률을 산정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text{최소인력 충족률} = \text{권장된 최소인력} \div \text{임대사업소 총 인력} \times 100</math></li> </ul> </li> </ul>																												

- 최소인력 대비 정규직 보유 인력 비율은 농기계 보유 대수별로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정규직 인원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최소인력 충족률은 최소 인력을 임대사업소 전체 인력으로 나눈 비율임.
- 평가항목 인력 및 조직의 또 다른 평가지표인 전문성은 임대사업소 전담인력의 전문인력 구성비를 평가하는 것임. 측정기준으로는 보유인력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 및 전문인력 질적 평가임.

<표 3-8>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인력 및 조직의 지표 전문성 측정기준

평가 지표	1-2. 전문성																		
측정 방법	<p>○ 농기계 관련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등과 같은 임대사업소의 전문인력 구성 비율을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40%;">평가지표</th> <th style="width: 10%;">매우 우수</th> <th style="width: 10%;">우수</th> <th style="width: 10%;">보통</th> <th style="width: 10%;">미흡</th> <th style="width: 10%;">매우 미흡</th> </tr> </thead> <tbody> <tr> <td>가. 보유인력 대비 전문인력 비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나. 전문인력 질적 평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평가지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가. 보유인력 대비 전문인력 비율						나. 전문인력 질적 평가					
평가지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가. 보유인력 대비 전문인력 비율																			
나. 전문인력 질적 평가																			
측정 기준	<p><b>가. 보유인력 대비 전문인력 비율</b></p> <p><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p> <p>○ 보유인력 대비 전문인력의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정규직+계약직)</p> <p>① 구성 비율: <math>\text{전문인력} \div \text{보유인력} \times 100</math></p> <p style="margin-left: 20px;">예) 임대사업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인원이 8명이고, 보유인력이 13명인 경우: <math>8 \div 13 \times 100 = 62\%</math>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p> <p>② 전문인력: 전문경력관, 5년 이상 경력자, 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 농기계학과 졸업자, 농기계 자격증 소지자, 전문교육(실습포함 2주 이상) 이수자</p> <p><b>나. 전문인력 질적 평가</b></p> <p><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p> <p>○ 전문인력 중 질적으로 뛰어난 인원의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p> <p style="margin-left: 20px;">- 구성비율: <math>\text{질적 전문인력} \div \text{전문인력} \times 100</math></p> <p style="margin-left: 20px;">* 질적 우수 전문인력: 전문경력관, 5년 이상 경력자, 농기계학과 졸업자, 농기계 자격증 소지자</p> <p style="margin-left: 40px;">· 단, 계약직임에도 농기계관련 업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경력자로 인정</p>																		

- 보유인력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은 전문경력관이나 무기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5년 이상 경력자, 농기계학과 졸업자, 전문교육 이수자 등 전문인력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함. 전문인력 질적 평가는 전문인력 중 전문경력관, 5년 이상 경력자, 농기계학과 졸업자, 농기계 자격증 소지자가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산정함.
- 인력 및 조직 항목의 평가지표 가운데 조직 확보의 측정방법은 농기계 임대 전담조직 확보 여부로써 농기계 임대 전담조직 확보 여부 및 위원회 적절성 여부가 측정기준임.
  - 농기계 임대 전담조직 확보는 팀(계) 이상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위원회 적절성 여부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가 기준에 맞게 설정되었는지를 평가함.

<표 3-9>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인력 및 조직의 지표 조직 확보 측정기준

평가 지표	1-3 조직 확보											
측정 방법	○ 농기계임대 전담조직을 확보 여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60%;">평가지표</th> <th style="width: 20%;">여</th> <th style="width: 20%;">부</th> </tr> </thead> <tbody> <tr> <td>가. “팀(계)” 이상 명시된 조직·사무분장 여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r> <tr> <td>나. 심의위원회 적절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body> </table>			평가지표	여	부	가. “팀(계)” 이상 명시된 조직·사무분장 여부	3		나. 심의위원회 적절성	2	
평가지표	여	부										
가. “팀(계)” 이상 명시된 조직·사무분장 여부	3											
나. 심의위원회 적절성	2											
측정 기준	가. 농기계임대 전담조직 확보 여부 <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 ○ 팀(계) 이상으로 명시된 조직이 있는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계) 이상의 별도 조직으로 구분하여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여”로 인정함.</li> </ul> 나. 위원회 적절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가 기준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기계 구입계획에 반영했는지 여부</li> <li>-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 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되었는지 여부</li> <li>-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각 1인 이상 포함되었는지 여부</li> <li>- 위 기준을 전부 충족할 경우 “여”로 인정함.</li> </ul>											

- 평가항목인 사업성과의 평가지표인 임대실적의 경우 임대농기계의 해당 임대일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농기계 해당 임대일수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보유한 단기임대 농기계의 임대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표 3-10>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성과의 지표 임대실적 측정기준

평가 지표	2-1. 임대실적					
측정 방법	○ 보유한 임대농기계의 해당 평균 임대일수를 산정, 평가					
	평가지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단기임대) 농기계 해당 임대일수					
측정 기준	<b>(단기임대) 농기계 해당 임대일수</b> <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 ○ 2016.01.01.~12.31.까지 보유 단기임대 농기계 임대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대상기간 중간에 구입하거나 폐기한 농기계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 60마력 이상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은 제외 * 단, 실적 조사는 전체 농기계와 작업기를 대상으로 모두 실시 - 임대 농기계 및 작업기 임대일수: 기종별 연간 해당 임대일수를 산정 - 농기계 해당 임대일수: 총 임대일수÷총 농기계와 작업기 대수 - 장기임대 농기계 임대실적은 조사하되, 평가에서는 제외					

<표 3-11>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성과의 지표 이용농가 수 측정기준

평가 지표	2-2. 이용농가 수					
측정 방법	○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비율 산정, 평가					
	평가지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비율					
측정 기준	<b>임대사업소 이용 농가비율</b> <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 ○ 2016.01.01.~12.31.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한 농가호수를 해당 시·군의 전체 농가호수의 비율평가 -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비율: 총 임대사업소 이용농가호수÷해당 시·군 농가호수×100					

- 평가항목인 임대료의 평가지표는 임대료 수준으로서 농기계 임대료의 적정 수준을 평가함. 이를 위해 실제 임대료를 표준 임대료로 나눈 표준 단기임대료 이행률을 측정기준으로 함.<sup>7</sup>

<표 3-1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임대료의 지표 임대료 수준 측정기준

평가 지표	3-1. 임대료 수준					
측정 방법	○ 임대농기계 임대료의 적정 수준 평가					
	평가지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표준 단기임대료 이행률					
측정 기준	<b>표준 단기임대료 이행률</b> <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단기임대료 이행률: 실제 임대료÷표준 임대료(개별산정, 합산, 평균)×100</li> <li>○ 개별 농기계의 이행 임대료율을 계산한 다음 모든 기종의 임대료율을 합산, 평균치를 사용함.</li> <li>○ 표준 임대료는 임대농기계 구입가격 대비 1일 임대료 비율로 평가                      - 표준 임대료: 농업기계화 촉진법령 110쪽 참조</li> </ul>					

- 발농업 기계화 촉진 항목의 평가지표인 발농업 기계화는 임대농기계 가운데 파종·이식·수확기 기종 및 발농사용 농기계의 구입금액 비율을 평가함. 측정기준으로는 발농사용 농기계 비율, 파종·이식·수확기 기종 구성 비율, 발농사용 농기계 대당 이용실적의 3가지임.

7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령」에 의거하여 그 기준이 책정되어 있음. 농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른데, 구입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농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격×1.5퍼센트임. 구입가격이 100만~500만 원 미만의 경우 1일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격×1.2퍼센트, 500만~1,000만 원 미만은 농기계 구입가격×1.0퍼센트, 1,000만~5,000만 원 미만은 농기계 구입가격×0.7퍼센트, 5,000만 원 이상은 농기계 구입가격×0.5퍼센트임(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 발농사용 농기계 비율은 보유 농기계 구입금액 대비 발농사용 농기계 구입금액 비율로 평가하며, 파종·이식·수확기 기종 구성 비율은 보유 농기계 구입금액에 대한 파종·이식·수확기 구입금액 비율로 측정함. 발농사용 농기계 해당 이용실적은 이용면적을 발농사용 농기계 잔존가격으로 나누는 수치로 산정함.

<표 3-13>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발농업 기계화 촉진의 지표 발농사용 농기계 측정기준

평가 지표	4-1. 발농사용 농기계					
측정 방법	○ 전체 임대농기계 가운데 파종·이식·수확기 기종 및 발농사용 농기계의 구입금액 비율을 평가					
	평가지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가. 발농사용 농기계 비율					
	나. 파종·이식·수확기 기종 구성 비율					
	다. 발농사용 농기계 해당 이용실적					
측정 기준	<b>가. 발농사용 농기계 비율</b>					
	□ 판단기준					
	○ 전체 보유 농기계에 구입금액에 대한 발농사용 농기계 구입금액의 비율로 평가 예) 보유 농기계 구입금액 800백만 원, 발농사용 농기계 구입금액 400백만 원인 경우: 발농사용 농기계 비율=400백만 원÷800백만 원×100=50%					
	<b>나. 파종·이식·수확기 기종 구성 비율</b>					
□ 판단기준						
○ 전체 보유 농기계 구입금액에 대한 파종·이식·수확기 구입금액 비율로 평가 - 단, 트랙터와 경운기 등의 동력원은 제외						
○ 파종·이식·수확기 기종 구성 비율: 파종·이식·수확기 구입금액÷전체 보유 농기계 구입금액×100						
<b>다. 발농사용 농기계 해당 이용실적</b>						
□ 판단기준						
○ 발농사용 임대농기계 사용일수(면적)를 발농사용 농기계 잔존가격으로 나누어 평가						
○ 발농사용 농기계 해당 이용실적: 전체 발농사용 농기계 이용실적(면적)÷발농사용 농기계 잔존가격						



- 밭농업 기계화 촉진 항목의 평가지표 가운데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유 비율 및 여성농업인 이용비율을 측정기준으로 함.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유 비율의 경우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금액을 보유 농기계 구입금액으로 나눈 비율임. 여성농업인 이용 비율은 여성 임대자수를 총 임대자 수로 나누어 측정함.

<표 3-14>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밭농업 기계화 촉진의 지표 여성친화형 농기계 측정기준

평가 지표	4-2. 여성친화형 농기계					
측정 방법	○ 여성·고령농 조작 편의 농기계의 구성 비율 평가					
	평가지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가.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유비율					
	나. 여성농업인 이용비율					
측정 기준	<b>가.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유 비율</b> <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보유농기계에 대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비율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첨부1 참고</li> </ul> </li> <li>○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성 비율: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비÷전체 보유농기계 구입비×100</li> </ul> <b>나. 여성농업인 이용비율</b> <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의 임대사업소 이용 비율로 평가</li> <li>○ 여성농업인 이용비율: 여성 임대자수÷총 임대자수×100</li> </ul>					

- 한편,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편이장비로 명시한 농기계만을 대상으로 함.

&lt;표 3-15&gt;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편이장비

	개발 농업기계명	특성	제조회사
2010	하이브리드식 농수산물건조기	농수산물을 히트펌프 열을 이용해 건조	길빙 등
	반건시 제조장치	감을 균일한 품질로 빠른 기간에 반건시로 제조	태인기업 등
	바퀴부착 직립형목초가위	밀고 다니면서 목초 절단	
	레일이동형 작업의자	레일 위에서 밀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의자	
	헤어리베치 종자선별장치	헤어리베치 종자 선별	
2011	밭작물 중경제초기	밭작물의 제초작업	
	견과류 수확물 조핍장치	견과류 과실을 간편하게 수확할 수 있는 포집장치	아강 등
	논농사용 제초기	논에서 조간, 주간의 제초	
	슬립 조인트형 3륜 손수레	방향전환 가능한 뒷바퀴를 갖는 3륜 손수레	대경정공
2012	분화류 이식시스템	프러그묘를 자동으로 이식하는 장치	죽암기계 등
	반자동 인삼정식기	묘삼을 공급하면 골을 파고 심는 장치	삼생공업
	시설원예 원격 환경제어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온실환경 자동제어	남경 등
	속옷일체형 서열작업복	자외선 차단, 쾌적성 등 기능성 소재 작업복	
	외기 및 토양환경측정장착	외기환경과 토양환경을 동시에 측정	
2013	참깨 예취기	참깨를 예취하여 배출	한서정공
	손잡이 회전가위	손 등 쪽으로 돌려 착용 가능한 절단 가위	
	재귀반사 기능 작업복	냉감 및 흡한속건 기능 농작업	
	재귀반사 기능 방제복	경량소재, 땀 배출 용이	대경정공
	보행지지겸용 운반수레	보행지지 및 농작물 운반 겸용	대경정공
	고추 수확운반차	수확한 고추를 수집 및 운반	신화정공 등
2014	잡곡 파종기	조, 수수 등 씨앗을 심는 기계	신진기계 등
	꽃감 중량 선별기	꽃감을 무게별로 선별하는 기계	
	송풍기능 농약 방제복	바람이 잘 통하는 농약 방제복	
	발누름판 부착 삽	땅을 쉽게 팔수 있도록 발누름판을 부착하는 삽	
	농작업화	편하게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한 농작업화	
그 외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60마력 미만),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자료: 농촌진흥청.

- 사업 지속성 확보의 평가지표 중 하나인 임대농기계 정책 적합도는 임대농기계의 정책적합 이용률을 측정기준으로 함. 이 기준은 보유 농기계를 경운정지용, 일반 관리용, 파종용, 수확용, 이식용으로 분류하여 5분류별 전체 작업 실적을 대상으로 산출하여 사용함.

<표 3-16>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 지속성 확보의 지표 임대농기계 정책 적합도 측정기준

평가지표	5-1. 임대농기계 정책 적합도					
측정방법	○ 임대농기계 및 작업기 당 이용 농가수와 면적을 평가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평가지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임대농기계의 정책적합 이용률					
측정기준	<p><b>임대농기계의 정책적합 이용률</b></p> <p><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p> <p>○ 임대농기계의 이용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 보유 농기계의 특성별 5분류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운정지용, 일반 관리용, 파종용, 수확용, 이식용</li> </ul> <p>② 분류에 따른 임대 농가수와 임대면적, 임대 사용일수</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대상 임대사업소에 대한 조사결과 정리</li> <li>- 보유농기계 5분류별 전체 작업 실적(임대 농가수, 임대면적과 일수)을 구한 다음 대상으로 산출</li> <li>- 5분류 결과를 통합할 때 가중치를 부여, 통합점수를 계산, 활용</li> <li>- 가중치의 경우 농기계화가 미흡하고, 어려운 부분에 높은 가중치 부여</li> <li>- 가중치: 경운정지:일반 관리:파종:수확:이식=1:2:3:4:5</li> <li>- 개발지표에 의한 점수의 전국 임대사업소 정규 분포도 작성</li> </ul>					

- 임대사업 총 수입과 운영비용 평가지표의 측정기준은 적정 수입창출 평가 및 최소비용 발생 여부 평가의 2가지임. 적정 수입창출 평가는 권장 총 수

입에서 실질 총 수입을 빼고, 이를 권장 총 수입으로 나누어 산출함. 최소비용 발생 여부 평가는 총 운영비용을 농기계 잔존가치로 나누어 구함.

<표 3-17>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 지속성 확보의 지표 임대사업 총 수입과 운영비용 측정기준

평가 지표	5-2. 임대사업 총 수입과 운영비용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 농기계 규모에 적절한 최대 수입창출 평가</li> <li>○ 보유 농기계 임대 운용 시 최소발생 여부 평가</li> </ul>					
	평가지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가. 적정 수입창출 달성률					
	나. 최소비용 달성률					
측정 기준	<b>가. 적정 수입창출 평가</b>					
	<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임대사업소별 정부 권유 적정 임대수입액을 산정(총 수입)한 후, 실질 수입과 비교하고, 달성비율을 산정</li> <li>○ 적정 수입창출 달성률: (권장 총 수입-실질 총 수입)÷권장 총 수입×100</li> <li>○ 전국 분포도를 5단계로 분류하여 평가 점수 부여</li> </ul>					
	<b>나. 최소비용 발생 여부 평가</b>					
	<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사업소별 농기계 잔존가치를 산정한 다음 전국 분포도 작성, 5단계로 분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 활용</li> <li>○ 최소비용 달성률: 총 운영비용÷농기계 잔존가치×100</li> <li>○ 전국 분포도를 5단계로 분류하여 평가 점수 부여</li> </ul>					
<b>다. 평가지표 가, 나의 가중치 부여 필요(평가위)</b>						

- 연간수익 지표의 경우 연간 수익률, 매출 원가비율, 고용 1인당 수익규모의 3가지를 측정기준으로 설정함. 연간 수익률은 임대관련 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이를 임대관련 수입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매출 원가비율은 임대사업 원가 대비 임대관련 수입의 비율임. 고용 1인당 수익규모의 경우 총 수익을 총 인력수로 나누어 산정함.

<표 3-18>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 지속성 확보의 지표 연간수익 측정기준

평가 지표	5-3. 연간수익
----------	-----------

측정 방법	○ 전체 사업에서 수익규모, 수익률, 1인당 수익 지표를 통해 사업체로서의 수익성 평가					
	평가지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가. 연간 수익률					
	나. 매출 원가비율					
	다. 1인당 수익					

측정 기준	<p><b>가. 연간 수익률</b></p> <p><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소의 수입규모도 중요하기에 전체 규모의 수익판단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li> <li>○ 연간 수익률: <math>(\text{총 임대와 관련 수입} - \text{총 운영비용}) \div \text{총 임대와 관련 수입} \times 100</math></li> <li>○ 전국 분포도를 5단계로 분류하여 평가 점수 부여</li> </ul> <p><b>나. 매출 원가비율</b></p> <p><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매출액 대비 원가비율로 간접적인 수익률을 판단</li> <li>○ 매출 원가비율: <math>\text{임대사업 총 원가} \div \text{총 임대와 관련 수입} \times 100</math></li> <li>○ 전국 분포도 작성, 중앙치에 최대 점수를 상과 하위에는 적은 점수를 부여</li> </ul> <p><b>다. 고용 1인당 수익규모</b></p> <p><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사업소를 위해 고용된(자원봉사도 포함) 연간 총 고용량을 산정해서 사용, 이때 전국 고용인 임금을 평균한 다음 이를 1인 고용으로 간주하여 표준화하고, 총 고용인 수를 조정. 왜냐하면 10원 일고와 20원 일고를 동일 수자로 하면 편기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임.</li> <li>○ 연간 발생한 총 수익을 종업원 수로 나눠서 임대사업소별 고용 1인당 수익액을 산출, 평가 자료로 활용</li> <li>○ 1인당 고용 수익률: <math>\text{총 수익}(\text{총 임대와 관련 수입} - \text{총 운영비용}) \div \text{총 인력 수}</math></li> <li>○ 전국 분포도를 5단계로 분류하여 평가 점수 부여</li> </ul>					
----------	---	--	--	--	--	--

- 이용농가 비용절감효과의 평가지표는 임대농기계 사용 전·후 비용절감 규모와 실효적 농사비용 절감을 측정기준으로 함.<sup>8</sup> 임대농기계 사용 전·후 비용절감 규모의 경우 자가 구입 시 면적당 비용에서 임대농기계 이용 시 면적당 비용을 제한 후, 총 임대작업면적을 곱하여 계산함. 실효적 농사비용 절감은 비용 절감액을 보유 농기계 자산액으로 나누어 계상함.

<표 3-19>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 지속성 확보의 지표 이용농가 비용절감효과 측정기준

평가 지표	5-4. 이용농가 비용절감효과					
측정 방법	○ 농민들 입장에서 임대농기계 활용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 평가					
	평가지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가. 이용농가 비용 절감규모					
	나. 실효적 농사비용 절감(절감액/보유 농기계 자산)					
측정 기준	<b>가. 임대농기계 사용 전·후 비용 절감 규모</b>					
	<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 ○ 임대농기계사용전후 절감 비용: (자가 구입 시 면적당 비용-임대농기계 이용 시 면적당 비용)×총 임대작업면적 ○ 전국 분포도를 5단계로 분류하여 평가 점수 부여					
	<b>나. 실효적인 농사비용 절감</b>					
	<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 ○ 실효적인 비용절감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계산된 총 비용절감액을 보유 농기계 자산액으로 나눠서 농기계 보유자산 원당 비용 절감액을 산출 ○ 전국 분포도를 5단계로 분류하여 평가 점수 부여					

8 임대농기계로 인한 비용절감 규모는 4가지 방법(인축 사용, 농기계 구입 사용, 농작업 위탁, 임대농기계 사용)을 모두 계산하고, 농가별 해당 방법별로 개별적으로 작업별로 계산해야 하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함. 평가위원회와 다수 전문가에 의하면,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경우의 비용을 직접 비교해서 임대사업의 효과(비용절감효과)를 계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업 위탁의 경우에도 조사는 실시하는 것으로 함.

- 사업의 지속성 평가지표는 농기계 임대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지자체 조례 유무, 기금조성 및 운영 여부로 측정함.

<표 3-20>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 지속성 확보의 지표 사업 지속성 측정기준

평가 지표	5-5. 사업의 지속성		
측정 방법	○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여부와 조례 유무 조사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 의지 평가		
	평가지표	여	부
	가. 농기계임대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2	0
	나.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조례 유무	1	0
	다. 기금 조성 및 운용 유무	1	0
측정 기준	<b>가. 농기계임대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b>		
	<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 ○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된 지자체의 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를 통한 임대사업의 미래 적극성 검토(미래성 검토)		
	<b>나.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지자체 조례 유무</b>		
	<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 ○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한 조례 유무를 검토를 통한 지자체의 현재까지의 관련사업 활성화 의지 반영(현재 반영성 검토)		
<b>다. 기금 조성 및 운용 여부 유무</b>			
<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 ○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 유무를 검토를 통해 지자체의 현재까지의 관련사업 활성화 의지 반영(현재 반영성 검토)			

- 평가항목인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는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자와 조직원 평가로 구분하며, 수요자 평가는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 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해 계산함. 조직원 평가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소 운영자인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의 자체평가 결과를 기초로 산정함.

<표 3-21>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의 지표 수요자 평가 측정기준

평가 지표	6-1. 농기계임대사업 수요자 평가				
측정 방법	○ 사업 수요자인 농업인의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				
	평가지표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농업인의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만족도				
측정 기준	<b>농업인의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만족도</b>				
	<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 ○ 농기계임대사업의 실질적 수요자인 농업인들의 이용만족도 측정 ○ 이용편의성, 접근성, 임대사업소의 사후관리, 임대가격, 직원의 친절도 등을 5점 척도화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 ○ 농업인 만족도: (평가지표별 점수×가중치)의 합계 ○ 전국 분포도를 5단계로 분류하여 평가 점수 부여 ○ 임대농기계 미이용 농민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컨설팅 자료로만 활용				

<표 3-2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의 지표 조직원 평가 측정기준

평가 지표	6-2. 농기계임대사업의 조직원 평가				
측정 방법	○ 사업 실무자인 임대사업소 직원의 조직 합리성 평가				
	평가지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조직원 자체평가				
측정 기준	<b>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조직원 자체평가</b>				
	<input type="checkbox"/> 판단기준 ○ 농기계임대사업의 실질적 운용자인 사업소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자체 평가 ○ 급여수준, 복리후생, 의사결정의 합리성, 업무의 피로도 등을 5점 척도화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 ○ 조직원 만족도: (평가지표별 점수×가중치)의 합계 ○ 전국 분포도를 5단계로 분류하여 평가 점수 부여 ○ 시장, 군수, 국과장 등은 심층 면담 조사 실시, 결과는 컨설팅 활용				



- 기본적인 평가항목 이외에 가점 및 감점을 설정하였는데, 가점은 고령농·여성농 우대 지원, 농기계 공동이용 여부, 사업소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발작물 공동경영체 운영, 임대농기계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 여부 등으로 측정함. 감점의 경우는 임대사업 포기 또는 사업비 이월, 임대일수 1~5일 이하 농기계 보유대수, 미사용 농기계 비율을 측정기준으로 함.

<표 3-23>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가점 및 감점의 측정기준

평가 지표	가점 및 감점	
측정 방법	<input type="checkbox"/> 가점	
	평가지표	배점
	○ 고령농·여성농 우대 지원(1), 타 시·군, 농협, 민간 등과 농기계 공동이용(2)	3
	○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등 지자체 노력 - 민원수당 등(1), 임대사업소 담당자 및 조직 포상(1), 근무평가 가점 부여(1)	3
	○ 발작물 공동경영체 운영 시·군·구 - 농식품부 지정 발작물 공동경영체 포함 시군 가점 부여	2
	○ 임대농기계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 여부	우수 3
	- 임대 시 안전교육 확인 여부(1)	보통 2
	- 여성 교육인의 별도의 안전교육 여부(1)	추진 1
	- TV·신문등 홍보실적(1)	
	<input type="checkbox"/> 감점	
	평가지표	배점
	○ 사업 포기 또는 사업비 이월 (최근 3년간) - 사업포기: -5점, 사업비 이월: -3점	-5~-3
○ 임대일수 1일 이상 5일 이하 농기계 보유대수 - 10~15%(-2), 15~20%(-3), 20~30%(-4), 30% 이상(-5)	-5~-2	
○ 미사용 농기계 비율(임대일수 0인 농기계) - 미사용 농기계 보유대수 / 총 농기계 보유 대수 - 10~15%(-2), 15~20%(-3), 20~30%(-4), 30% 이상(-5)	-5~-2	

### 3. 평가지표 대응 조사표 작성

- 확정된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각 지표별 수치 도출이 가능하도록 조사표를 작성하였음. 설문조사표는 안내문(인사말), 임대사업소 일반 현황, 사업소 농기계 보유 현황, 사업소 전담인력 현황, 조직 확보 현황, 사업소 수입 및 비용, 사업의 지속성, 기타 현황 등 크게 8개로 구분하였음.

#### 3.1. 설문조사표 대분류별 조사문항

##### 3.1.1. 안내문(인사말)

- 인사말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취지와 평가 담당기관, 평가일정, 조사대행 등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작성함으로써 피조사원이 조사표 작성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함. 안내문 하단에는 조사 결과의 코딩 작업에 필요한 조사표 일련번호를 제시하여 추후 분석 시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표 3-24>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안내문

####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본 연구원은 주로 농업·농촌 정책수립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에 의해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 조사이며, 조사 결과는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정부 사업에 대한 평가 업무이기 때문에 각 지표별로 답변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나 근거 문서 등을 요청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과제의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최종 결과는 2017년 7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해야 하므로 조사표는 6월 19일까지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바쁜 시기인 줄은 알고 있으나,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조사는 (주)더비엔아이(중부권 담당), (주)에코비즈(호남권 담당), (주)에그리나(영남권 담당)에 의뢰하여 대행하고 있으므로 조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귀 기관)께서 응답하신 내용과 제공한 관련 자료는 임대사업 평가를 위해 통계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정보의 노출 문제는 결코 없습니다.

2017. 6.

☞ 연락처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 박영구 전문연구원, 최진용 연구원
- ★ (주)더비엔아이(우: 06576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2길 6)
  - 현성민 실장, 정단비 선임
- ★ (주)에코비즈(우: 5483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80)
  - 유찬주 대표
- ★ (주)에그리나(우:38877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교대 5길 17)
  - 김우형 실장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표 일련번호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광역시/도		시/군		임대사업소	

### 3.1.2.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반 현황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일반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표 문항에는 임대사업소의 지소(분소) 보유 여부, 교육훈련 및 순회수리 여부, 임대사업소 면적, 임대사업소 고정설비·장비의 현재 조달비용 등이 있음.
  - 조사 문항 가운데 농기계 교육훈련 여부는 평가지표 가점에서 ‘임대농기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과정에서 조사된 내용의 의문사항, 조사표 누락 문항 등이 있을 경우 확인을 위해 담당자 개인 정보 조사 문항을 포함시켰음.

<표 3-26>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검증 시 필요한 담당자 정보

성명	부서명	연락처	이메일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지역 통계에는 관내의 농가 수, 농가인구, 논 면적, 밭 면적 등을 조사하는 문항이 있으며, 농가 수 및 논 면적 중 밭작물 이용면적, 밭 면적은 평가지표 ‘임대농기계 이용농가 수’ 지표 산정 시에 활용하고자 함.

<표 3-27>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관내 지역 통계 조사문항 Q1. 귀 사업소 관내의 지역 통계 데이터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가구수	인구수	농가수	농가 인구수	경지면적	논 면적		밭 면적
					논 면적	논 면적 중 밭작물 이용면적	
호	명	호	명	천m <sup>2</sup>	천m <sup>2</sup>	천m <sup>2</sup>	천m <sup>2</sup>

▶ 주요 밭작물 재배 작목 및 비중(면적기준)

작목명 1	비중	작목명 2	비중	작목명 3	비중	작목명 4	비중	작목명 5	비중

### 3.1.3.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보유 현황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문항은 본 과제 of 임대사업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기종은 물론, 이용 용도 및 농작업 용도, 여성친화형 농기계 여부, 내용연수,

<표 3-28>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보유 농기계 현황 조사문항

**Q**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 현황(2016년 기준)

Q3. 귀 사업소에서 임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기종별 보유 현황을 모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유 현황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기준이며, 지소(분소)가 있는 경우 지소(분소) 현황까지 포함하여 기재해 주세요. 동일한 기종이 2대 이상인 경우 각각 별도로 작성해 주십시오.

관리 번호	농기계 기종		이용 용도	농작업 용도	여성 친화형 농기계 여부
	기종명	규격	밭 농사용: 1, 논 농사용: 2, 논+밭용: 3, 축산용: 4, 기타: 5	경운: 1, 정지: 2, 파종: 3, 이식: 4, 수확: 5, 제초: 6, 배토: 7, 파쇄: 8, 살포: 9, 탈곡: 10, 피복: 11, 정선: 12, 결속: 13, 박피: 14, 기타: 15	
⋮					

구입 시기 (연도)	2016년 구입하여 실적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하면 1)	제조 회사명	구입가격				내용연수	
			중앙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기타	기타의 자원 조달 방법	계	법정 연수
⋮								

임대												
임대일수 및 면적			임대료		임대기간 (단기임대 1, 장기임대 2)		이용 농가수			안전교육 여부		
임대 일수	임대 작업 면적	1일 작업가능 면적	일 기준	면적 기준			남	여	계	남	여	계
⋮												

작업 대행							
작업 대행 일수 및 면적			작업대행료		이용 농가수		
작업 대행 일수	작업대행 면적		일 기준	면적 기준	남	여	계
⋮							

임대일수 및 임대료·이용 농가 수, 안전교육 여부 등을 조사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지표의 상당 부분을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보유 농기계의 이용 용도 및 농작업 용도 조사문항으로는 밭농업 기계화 촉진 평가항목 중의 하나인 ‘밭농사용 농기계’ 평가지표의 값을 측정하는데 이용함. 여성친화형 농기계 여부 및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 수의 조사문항은 밭농업 기계화 촉진 평가항목 가운데 ‘여성친화형 농기계’ 평가지표 분석 시에 활용하게 됨.
- 임대일수 및 임대료,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 수 조사문항을 통해서도 사업성과 평가항목인 ‘임대실적’ 및 ‘이용 농가 수’ 평가지표를 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수준’ 평가지표의 산출도 가능하게 됨.
- 이밖에도 본 조사문항은 평가지표인 ‘임대농기계 정책 적합도’, ‘이용농가 비용절감효과’의 분석에 활용 가능함. 또한, 평가지표 감점요인에서 ‘임대일수 1일 이상 5일 이하 농기계 보유대수’와 ‘미사용 농기계 비율’ 산정 시에 이용하게 될 문항임.

### 3.1.4.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담인력 현황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전담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근무연수, 담당업무, 인건비, 해당 전담인력의 전문 인력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사업소 전담인력의 고용형태는 인력 및 조직 평가항목의 평가지표인 ‘인력 확보’에서 최소 인력 대비 정규직 보유 인력 비율과 최소 인력 충족률을 산정하는데 이용함. 전문 인력의 경우 ‘전문성’ 평가지표를 측정하는데 활용

가능함.9

- 이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조사함으로써 ‘총 수입과 운영비용’ 평가지표를 산정하기 위한 인건비로 적용할 수 있음.

<표 3-29>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전담인력 현황 조사문항

Q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담인력 현황(2016년 기준)								
Q4. 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담인력의 현황을 각각의 인력별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인력 현황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이며, 지소(분소)가 있는 경우 지소(분소)의 인력까지 포함하여 기재해 주세요.								
직원 번호	성별 (남: 1, 여: 2)	근무지 (본소: 1, 지소 (분소): 2)	고용형태 (정규직 1, 계약직 2)	정규직의 경우 근무연수	계약직의 경우 연간 근무일수	담당 업무 (임대사업 관리 1, 농기계 수리 및 관리 2, 서무 3, 기타 4)	인건비	
							인건비 금액	담당업무 중 임대사업 투입비율
전문 인력(해당되는 항목: 1)								
전문 경력관	5년 이상 경력자	무기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농기계학과 졸업자	농기계 자격증 소지자	전문교육 이수자		

3.1.5.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조직 확보 현황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조직 확보 현황은 전담조직 구성·운영 여부와 농기계 임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등을 파악하는 조사문항임. 이 문항을 통해 인력 및 조직 평가항목의 평가지표인 ‘조직 확보’에서 농기계 임대 전담

9 본 과제의 평가에서 이용하는 전문인력이란 전문경력관, 5년 이상 경력자, 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 농기계학과 졸업자, 농기계 자격증 소지자, 전문교육(실습포함 2주 이상) 이수자를 말함.





- 한편, 평가지표인 ‘이용 농가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각 농작업별 농기계 임대사업 대비 농작업 위탁 및 직접 구입 시 비용 절감 정도를 문의하는 질문문항을 추가함.

<표 3-3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비용절감 참고용 조사문항

Q6. 귀하께서는 농가가 ① 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② 농가가 농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③ 농가가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의 3가지를 비교해 볼 때 농가의 농기계 관련 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①의 경우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②의 경우와 ③의 경우는 각각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기입해 주세요.

농작업	①농가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②농가가 농작업 위탁하는 경우	③농가가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경운	100		
정지	100		
파종	100		
이식	100		
수확	100		
제초	100		
배토	100		
파쇄	100		
살포	100		
탈곡	100		
피복	100		
정선	100		
결속	100		
박피	100		

### 3.1.7.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사업 지속성 및 기타 현황

-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업 지속성 확보 평가항목 가운데 ‘사업 지속성’ 평가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관련 조례 유무,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을 위한 기금 조성 여부를 파악해야 함. 파악

된 조사결과는 사업의 지속성 지표를 분석하는데 활용하게 됨.

<표 3-33>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사업 지속성 조사문항

Q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성(2016년 기준)				
농기계 임대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지자체 조례 유무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을 위한 기금 조성 여부	조성하고 있다면	조성하고 있다면
			조성 시기	기금의 금액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기타 현황으로는 고령농·여성농 우대지원, 농기계 공동이용 경험, 사업소 담당자 및 임대사업소의 인센티브 경험, 발작물 공동경영체 운영 여부, 임대농업인 대상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 임대일수 5일 이하 및 미사용 농기계 보유대수를 조사하게 됨.

- 이들 조사결과는 ‘가점 및 감점’ 평가지표를 분석하는데 활용하는 측정 지표가 됨.

<표 3-34>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사업소 기타 현황 조사문항

Q 기타 현황(2016년 기준)						
고령농이나 여성농가 우대지원 여부	농기계 공동이용 경험 여부	담당자 및 임대사업소의 인센티브 경험			발작물 공동경영체 운영 중이거나 경험 여부	
		임대사업소 담당자의 민원수당 수혜 여부	임대사업소 담당자 및 조직의 포상 경험	임대사업소 업무로 인한 근무평가 가점 부여 전담인력 존재 여부		
임대농업인 대상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사업 포기 경험	임대일수 5일 이하 및 미사용 농기계 보유대수	
농기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여성농업인 대상 별도의 농기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임대 농기계에 대한 홍보 실적 여부			총 농기계 보유대수	임대일수 1~5일 이하 농기계 보유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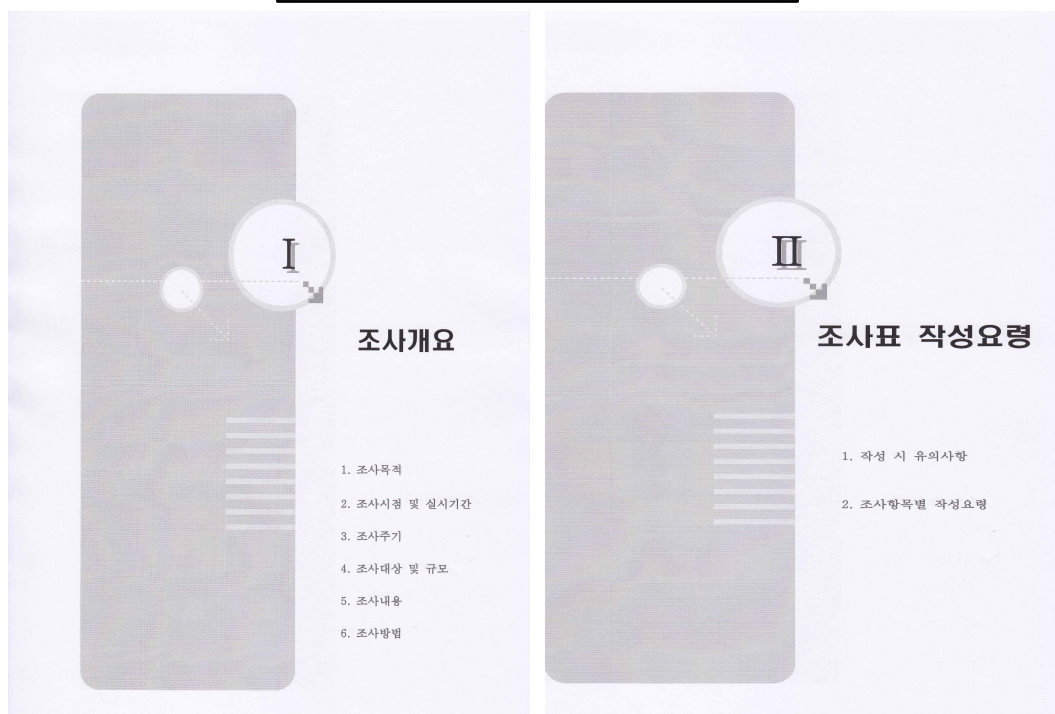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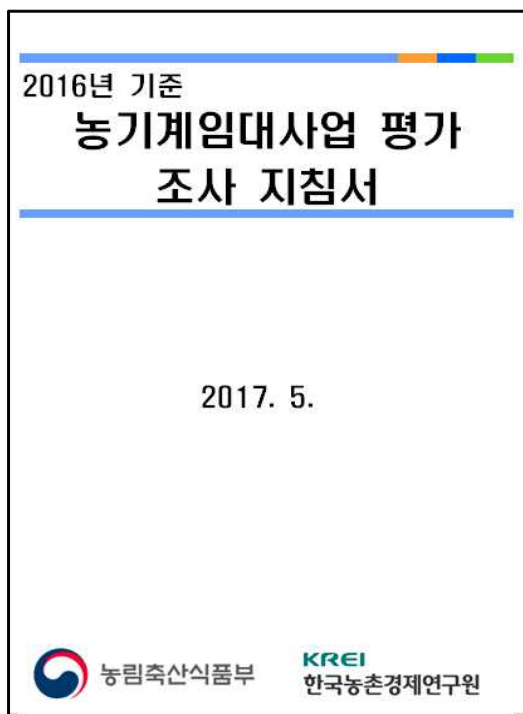
### 3.2. 조사원 및 피조사자를 위한 지침서 작성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용 조사표는 작성해야 할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많은 평가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이 때문에 조사표 작성 시 방문조사한 조사원은 물론, 응답해야 하는 사업소 전담인력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조사표 작성이 다소 애매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조사문항 등을 하나하나 응대해 주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인 관계로 동일한 질문 내용이 임대사업소마다 반복될 가능성도 존재함.
- 이로 인해 방문조사를 통해 조사표 회수를 담당하는 조사원과 거취조사 시에 직접 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소 전담인력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용 조사표 작성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이 필요함.
- 조사 지침서는 크게 조사 개요와 조사표 작성 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사 개요에는 조사목적, 조사시점 및 실시기간, 조사주기, 조사대상 및 규모, 조사내용, 조사방법을 기술하였음.
- 조사표 작성 요령은 우선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조사 항목별로 작성 요령을 상세히 제시하였음.<sup>10</sup> 응답자가 개발된 조사입력 시스템을 활용할 때 필요한 시·군 등의 코드번호 활용 ID와 비밀번호 생성 사례를 기술하였음.
  - 각 조사문항별 기입 요령은 가급적 상세히 작성함으로써 조사표 작성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특히, 작성하기에 애로가 있는 문항에는 예시를 제시하였고, 근거자료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자세히 언급하였음.

---

<sup>10</sup> 조사 지침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할 것.

<그림 3-3>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의 조사 지침서 표지 및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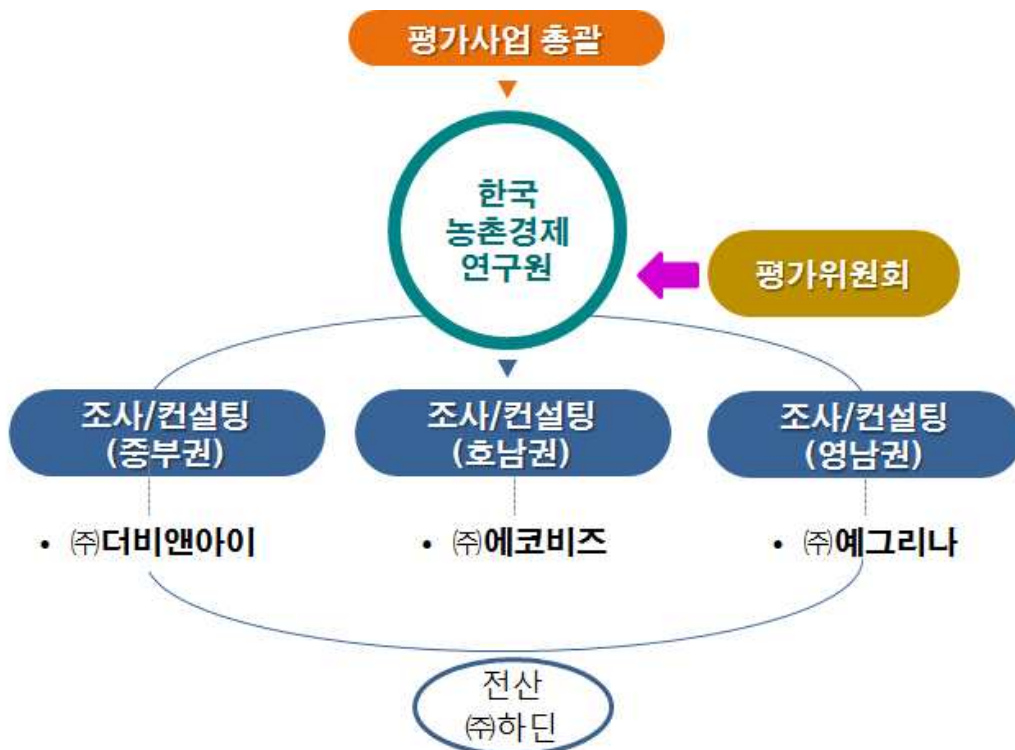


## 4. 평가 진행 체계

### 4.1. 평가사업 연구팀 구성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팀을 구성하였는데, 평가사업 총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음. KREI에서는 사업 총괄 기획 운영 및 관리 역할을 하면서 평가지표 개발, 조사 및 최종 분석,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컨설팅 체계 구축 및 관리·최종 시행, 전산 체계 구축과 관리 및 분산 등이 주요 업무임.

<그림 3-4>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사업 연구팀 구성·운영 체계도



- 또한, KREI는 평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산, 평가결과 설명회 개최, 사업 총괄보고서 작성, 관계 부처 협조 및 대응 등의 역할 수행함. 이와 함께 전산 전문 업체를 선정 후, 이 업체가 조사결과와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함.
- 총괄 기관인 KREI의 관리 하에 평가사업 조사 대행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각 권역별로 선정함. 이들 업체는 평가 관련 권역별 기초자료 분석, 평가관련 심층면접조사 실시, 수요자 및 운영인력 설문 실시, 컨설팅 기초자료 수집 등의 역할을 담당함.
  - 권역별로 중부권(경기·강원 및 충청)을 담당할 업체는 (주)더비앤아이이며, 호남권(호남·제주)은 (주)에코비즈, 영남권(영남)은 (주)에그리나로 선정되었음.

## 4.2. 평가 진행 이전 사전 설명회 개최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임대사업 의의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 도모는 물론, 평가지표 관련 데이터를 정확히 입력하여 오차·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또한, 평가지표별 데이터 입력 요령 및 평가항목·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평가 이후에 진행될 일정, 사업소별 컨설팅 계획 수립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진행하였음.
- 사전 설명회는 권역별로 나누어 중부권(6.2.(금)), 호남권(6.1.(목)), 영남권(6.31.(수)) 등 총 3차례 걸쳐 실시되었음. 설명회 주최는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총괄기관인 KREI가 담당하였으며, 대상은 평가사업 조사 대행 및 컨설팅 업무 담당 업체와 전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담인력이었음.

&lt;표 3-35&gt;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관련 사전 설명회 개최 개요

권역	개최일시	장소	임대사업 담당자 참석(명)
중부권(경기/강원/충청)	6. 2.(금) 13:00~16:00	충북농업기술원 대강당	119
호남권(호남/제주)	6. 1.(목) 10:30~13:00	KREI 대회의실	83
영남권(영남)	5.31.(수) 10:30~13:00	MH 컨벤션웨딩 5층 리젠시홀	100

- 3차례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임대사업소 전담인력 및 조사·컨설팅대행업체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조사표(안) 및 지침서(안)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 후 최종 조사표와 조사 지침서를 확정하였음.
- 사전 설명회에서는 임대용 농기계의 기종별 주관적인 표준면적·임대면적 및 작업면적 산출 곤란 문제, 보유 농기계의 자체 판단 내용연수 산정의 어려움,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이외에 농가에 대한 구두 안전 설명도 안전교육에 포함 가능한지 여부, 보유 농기계 가운데 폐기된 농기계의 작성 여부,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음.

### 4.3.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4.3.1. 평가위원회 역할

-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대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위원회의는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구 자문을 하며, 평가지침·방안 및 결과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함.
  - 평가위원회 위원은 연구진의 자문위원 역할을 겸임하며, 사업 운영 총괄 기관인 KREI의 평가 지침과 방안에 대한 공정성 및 적정성을 심의·의결 하도록 함.
  - 또한,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발표)를 최종 심의, 지차체별 평가 순위 등을 의결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컨설팅 등에 대해 자문함.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위촉을 통해 구성함. 평가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사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지명을 통해 위촉함.
  - 평가위원회 위원은 20인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는데, 당연직은 정책담당자(농기계 담당, 발작물 담당)이며, 위촉직은 농기계 관련 학계, 유관기관, 농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함. 이 외에 평가 및 컨설팅 연구사업 총괄기관에서 1인의 간사를 둠.

<표 3-36>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구성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li> <li>· 학계</li> <li>· 유관기관</li> <li>· 농업인 대표</li> <li>· 정책담당</li> <li>· 간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자문과 평가지침 및 결과에 대한 최종심의·의결하고 이를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위원 겸임 가능</li> <li>- 평가 지침의 공정성 적정성 심의</li> <li>-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순위 결정</li> <li>- 도출된 결과의 컨설팅방안 검토</li> </ul> </li> </ul>

#### 4.3.2. 평가위원회 선임·운영

-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오세익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위원은 농기계 관련 학계와 유관기관, 농업인 대표, 정부관계자 등 18명과 1명의 간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였음.

<표 3-37>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선임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오세익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학계 (8인)	김석현 김윤식 김태균 김학진 남주석 안병일 정선옥 조가옥	전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고려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유관기관 (3인)	김경선 김경수 신승엽	농촌진흥청 농기자재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농민대표 (4인)	마두환 박철선 심창훈 임병희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전국과수농협연합회 한여농 총장 쌀전업농 총장
당연직 (3인)	과장 과장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간사	서대석	KREI

- 평가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안과 최종평가 결과 도출 등을 위해 위원장이 소집하고 평가위원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심의/의결은 평가방법을 준용함.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유고 또는 결석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 KREI는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업무를 지원하고, 평가위원은 KREI의 원활하고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자문위원 겸직과 위탁연구(원고)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사업 총괄기관인 KREI는 평가위원에게 사업 예산 및 규정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교통비 별도)을 지급함.

#### 4.3.3. 평가위원회 개최

- 제1차 평가위원회는 15명의 평가위원이 참석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과 연계되는 농기계 보유, 밭농업 지역과 논농업 중심지역의 차별성을 고려한 공정성 확보, 밭농사용 기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정보 제공 필요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표 3-38> 제1차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및 주요 논의 사항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li> <li>- 2017.5.16.(화)</li> <li>• 장소</li> <li>- KREI 중회의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오세익</li> <li>· 위원</li> <li>- 김정선(농촌진흥청)</li> <li>- 김정수(농기계협동조합)</li> <li>- 김윤식(경상대 교수)</li> <li>- 김철순(농림축산식품부)</li> <li>- 김학진(서울대 교수)</li> <li>- 남주석(강원대 교수)</li> <li>- 마두환(한농연)</li> <li>- 박철선(과수농협연합회)</li> <li>- 신승엽(국립농업과학원)</li> <li>- 심창훈(한여농)</li> <li>- 임병희(쌀전업농중앙회)</li> <li>- 정선옥(충남대 교수)</li> <li>- 조가옥(전북대 교수)</li> <li>- 최승묵(농림축산식품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과 매칭되는 농기계 보유수 중요</li> <li>▶ 밭농업 지역과 논농업 중심 지역의 차별성 고려하여 공정성 확보 필요</li> <li>▶ 밭농사용 기계의 보다 명확한 정의 및 정보 제공</li> <li>▶ 조사결과를 정규분포화하여 도출한 후 공정성에 위배되면 평가 지표 개선 필요</li> <li>▶ 사업지속성 확보 부분의 가점 상향, 인력확보 부분의 배점 하향 제안</li> <li>▶ 조직의 정규직 구성 여부와 예산 등의 확보 등</li> </ul>

- 또한, 조사 결과를 정규분포화하여 도출한 후 공정성에 위배되면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지속성 확보 부분의 가점 상향과 인력 확보 부분의 배점 하향을 제안하였음. 이와 함께 조직이 정규직으로 구성되고 예산과 조직이 확보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지표임을 강조하였음.
- 제2차 평가위원회는 평가지표 점검 및 수정에 중점을 두기 위해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6명의 평가위원이 참석하였음. 제2차 평가위원회에서는 60마력 이상 트랙터의 구분 불가 문제가 있어 트랙터 전체를 마력 구분 없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일반 관리용 농기계는 해당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되 차년도 평가에서 좀 더 세밀히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비용절감효과 지표는 기계별 감가상각비에서 임대일수와 임대료를 곱한 값을 뺀 후 전체 기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추정하고, 지표별 평가점수를 비연속적인으로 계층화하지 않고 5점을 기준으로 하여 140개 사업소를 연속적으로 순위화하도록 하였음.
  - 임대료 판단 기준이 사업소마다 다른 경우 임대효과 산출이 불가능(예컨대 콩 정선의 경우 포당, kg당, 면적당 등 다양)하므로 전국적으로 일치시키도록 정부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표 3-39> 제2차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및 주요 논의 사항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li> <li>- 2017.7.6.(목)</li> <li>• 장소</li> <li>- KREI 오송사무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오세익</li> <li>· 위원</li> <li>- 김경선(농촌진흥청)</li> <li>- 김윤식(경상대 교수)</li> <li>- 김태균(경북대 교수)</li> <li>- 신승엽(국립농업과학원)</li> <li>- 정선옥(충남대 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마력 이상 트랙터의 구분 불가 문제</li> <li>▶ 일반 관리용 기계의 작업 실적 산출 문제</li> <li>▶ 이용농가 비용절감효과 추정 문제</li> <li>▶ 지표별 평가점수의 5점 기준으로 순위화</li> <li>▶ 임대료 판단기준 다양성 존재 등</li> <li>※ 차년도 평가 시 반영 요망 사항</li> </ul>

- 위원회에서는 정책적합도 평가 방법을 설정하였고, 적정 수입창출효과에서 달성율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또한, 수요자와 조직원 평가 점수 항목 간 가중치를 결정하였음.
  - 이밖에도 임대사업의 차별화 서비스 제공 시 가점 부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 가점 부여 등 차년도 평가사업 진행 시 반영 요망 사항을 논의하였음.
- 제3차 평가위원회는 15명의 평가위원이 참석하였으며, 평가를 위한 조사 및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한 후, 각 권역별로 우수 사례로 추천된 임대사업소개요에 대해 발표·논의하였음. 최종적으로는 평가결과로 인해 선정된 임대사업소 상위 시·군의 지표별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우수임대사업소 10개소를 결정하여 의결하였음.

<표 3-40> 제3차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및 주요 논의 사항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li> <li>- 2017.7.26.(수)</li> <li>• 장소</li> <li>- 서울스퀘어 중회의실 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오세익</li> <li>• 위원</li> <li>- 김정선(농촌진흥청)</li> <li>- 김경수(농기계협동조합)</li> <li>- 김윤식(경상대 교수)</li> <li>- 김철순(농림축산식품부)</li> <li>- 김학진(서울대 교수)</li> <li>- 남주석(강원대 교수)</li> <li>- 마두환(한농연)</li> <li>- 박철선(과수농협연합회)</li> <li>- 신승엽(국립농업과학원)</li> <li>- 심창훈(한여농)</li> <li>- 임병희(쌀전업농중앙회)</li> <li>- 정선옥(충남대 교수)</li> <li>- 조가옥(전북대 교수)</li> <li>- 최승묵(농림축산식품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와 평가진행 과정 설명</li> <li>▶ 권역별 조사업체의 추천 임대사업소 관련 논의</li> <li>▶ 평가결과, 임대사업소 상위 시군 10개소 결정 등</li> </ul>

- 제4차 평가위원회는 10명의 평가위원이 참석하여 2017년도 평가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결과를 통한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차년도 평가사업 방향 검토와 차년도 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등에 관해 논의하였음.

<표 3-41> 제4차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및 주요 논의 사항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li> <li>- 2017.12.21.(목)</li> <li>• 장소</li> <li>- KTX 용산역 회의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오세익</li> <li>• 위원</li> <li>- 김윤식(경상대 교수)</li> <li>- 김석현(전남대 교수)</li> <li>- 김태균(경북대 교수)</li> <li>- 김학진(서울대 교수)</li> <li>- 남주석(강원대 교수)</li> <li>- 신승엽(국립농업과학원)</li> <li>- 안병일(고려대 교수)</li> <li>- 정선옥(충남대 교수)</li> <li>- 조가옥(전북대 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도 평가사업 결과 보고</li> <li>▶ 평가결과를 통한 문제점 논의</li> <li>▶ 차년도 평가사업 방향 검토</li> <li>▶ 차년도 평가지표의 수정 및 보완 등</li> </ul>

#### 4.4. 평가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 관련 정보를 사업소 전담인력들과 공유하고, 평가 결과 공지 및 이후 추진되는 컨설팅 일정 등을 설명하고자 2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실시하였음.
- 제1차 워크숍은 9월 4~5일(1박 2일)에 개최되었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추진 정책(농림축산식품부 최호중 과장), 평가결과 및 향후 컨설팅 내용과 일정(KREI 박기환 박사 및 서대석 박사), 우수 임대사업소 사례(홍천군, 무주군, 안동시) 등에 대해 발표 후, 토론회를 가졌음.

- 제2차 워크숍은 12월 14~15일(1박 2일)에 개최되었으며, 농업 기계화 추진 전략과 농기계 임대사업(농림축산식품부 이형석 주무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요 실태분석 및 컨설팅 경과·우수사례(KREI 박기환 박사 및 서대석 박사) 등에 대해 발표 후,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회 장을 마련하였음.

<표 3-42>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워크숍 개최 개요

	일시 및 장소	주요 발표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li> <li>- 2017.9.4.~9.5.</li> <li>• 장소</li> <li>-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그랜드 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1</li> <li>-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추진 정책 설명(농림축산식품부 최호중 과장)</li> <li>▶ 발표 2</li> <li>-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KREI 박기환 박사)</li> <li>▶ 발표 3</li> <li>- 농기계 임대사업 컨설팅 내용과 일정(KREI 서대석 박사)</li> <li>▶ 발표 4</li> <li>- 우수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례발표(홍천군, 무주군, 안동시)</li> </ul>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li> <li>- 2017.12.14.~12.15.</li> <li>• 장소</li> <li>-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그랜드 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1</li> <li>- 농업기계화 추진 전략과 농기계 임대사업(농림축산식품부 이형석 주무관)</li> <li>▶ 발표 2</li> <li>- 농기계 임대사업 주요 실태분석(KREI 박기환 박사)</li> <li>▶ 발표 3</li> <li>- 농기계 임대사업 컨설팅 경과 및 우수사례(KREI 서대석 박사)</li> <li>▶ 발표 4</li> <li>- 농기계 임대사업 10대 과제와 개선방안(KREI 박영구 연구원)</li> </ul>





## 제 4 장

---

### 농기계 임대사업소 실태와 평가지표 분석결과

#### 1. 임대사업소 주요 실태분석

##### 1.1.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반 현황

- 전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체를 조사한 결과, 지소(분소)를 보유한 임대사업소는 64.3%로 2/3 정도는 지소(분소)를 가지고 있음. 이는 사업소 소속 시·군 지역이 광범위하여 관내 농업인이 사업소까지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응하고자 지소(분소)를 설립하기 때문임.
- 권역별로는 충청지역이 지소(분소)를 보유한 임대사업소가 7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경기·강원은 59.4%로 가장 낮음. 이를 다시 도별로 살펴보면, 지소(분소)를 보유한 비중이 가장 높은 도는 강원도로 87.5%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이 전북 78.6%, 경북 75.0%, 충남 7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제주도의 경우 지소(분소)가 있는 임대사업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lt;표 4-1&gt;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지소(분소) 보유 여부

단위: 개소 수, %

권역	있음	없음	계
전국	90(64.3)	50 (35.7)	140(100.0)
경기·강원	19(59.4)	13 (40.6)	32(100.0)
강원	14(87.5)	2 (12.5)	16(100.0)
경기	5(31.3)	11 (68.8)	16(100.0)
충청	19(73.1)	7 (26.9)	26(100.0)
충북	8(72.7)	3 (27.3)	11(100.0)
충남	11(73.3)	4 (26.7)	15(100.0)
영남	26(61.9)	16 (38.1)	42(100.0)
경북	18(75.0)	6 (25.0)	24(100.0)
경남	8(44.4)	10 (55.6)	18(100.0)
호남·제주	26(65.0)	14 (35.0)	40(100.0)
전북	11(78.6)	3 (21.4)	14(100.0)
전남	15(68.2)	7 (31.8)	22(100.0)
제주	-	4(100.0)	4(100.0)

주 1) 계는 시·군수 기준이며, (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2)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비중은 평균 94.3%로 대부분임. 농기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임대사업소의 연간 평균 교육시간은 1,812시간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호남·제주의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100% 농기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강원은 농기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비중이 경기도가 81.3%로 나타나 평균 90.6%를 기록하고 있음.
  - 교육시간은 전남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경남, 경북, 강원, 경기 등의 순으로 조사됨.<sup>11</sup>

11 연간 교육시간의 경우 도별 편차가 심한 편인데, 이는 정규 교육시간만 표기한 도가 있는가 하면, 임대 농업인에게 구두로 이루어진 교육도 포함한 도도 있으며, 사업소 전담인력 전체 인원이 실시한 교육을 모두 합한 경우도 있기 때문임. 다만, 평가지표에서 점수화할 때에는 교육훈련 여부만 포함되고, 교육시간은 고려하지 않아 편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77.9%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훈련 비중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임. 도별로는 충북과 제주도가 100% 순회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북과 경기도는 순회수리 비중이 각각 57.1%, 50.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음.

<표 4-2>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교육훈련 및 순회수리 여부

단위: 개소 수, %

권역	농기계 교육훈련				농기계 순회수리 여부		
	하고 있음	평균 연간 교육시간 (시간)	하지 않음	계	하고 있음	하지 않음	계
전국	132 (94.3)	1,812	8 (5.7)	140(100.0)	109 (77.9)	31(22.1)	140(100.0)
경기·강원	29 (90.6)	1,410	3 (9.4)	32(100.0)	22 (68.8)	10(31.3)	32(100.0)
강원	16(100.0)	1,919	-	16(100.0)	14 (87.5)	2 (2.5)	16(100.0)
경기	13 (81.3)	1,366	3(18.8)	16(100.0)	8 (50.0)	8(50.0)	16(100.0)
충청	24 (92.3)	654	2 (7.7)	26(100.0)	23 (88.5)	3(11.5)	26(100.0)
충북	11(100.0)	338	-	11(100.0)	11(100.0)	-	11(100.0)
충남	13 (86.7)	921	2(13.3)	15(100.0)	14 (93.3)	1 (6.7)	15(100.0)
영남	39 (92.9)	2,578	3 (7.1)	42(100.0)	33 (78.6)	9(21.4)	42(100.0)
경북	21 (87.5)	2,570	3(12.5)	24(100.0)	16 (66.7)	8(33.3)	24(100.0)
경남	18(100.0)	2,588	-	18(100.0)	17 (94.4)	1 (5.6)	18(100.0)
호남·제주	40(100.0)	2,070	-	40(100.0)	29 (72.5)	11(27.5)	40(100.0)
전북	14(100.0)	503	-	14(100.0)	8 (57.1)	6(42.9)	14(100.0)
전남	22(100.0)	3,413	-	22(100.0)	17 (77.3)	5(22.7)	22(100.0)
제주	4(100.0)	168	-	4(100.0)	4(100.0)	-	4(100.0)

주 1) 계는 시·군수 기준이며, (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2)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3) 수치는 본소와 지소(분소)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차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교육시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

## 1.2.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보유 현황

### 1.2.1. 이용 용도별 보유 농기계

-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5만 7,555대이며, 임대사업소(시·군 기준) 당 평균 41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도별로는 경북이 9,488대로 16.5%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남은 15.9%인 9,149대를 보유하고 있음.
- 농기계 이용 용도별로는 밭농사용이 전체의 54.4%인 3만 1,28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논농사용과 밭농사용 겸용이 17.9%인 1만 274대, 논농사용 농기계는 8,342대로 14.5%를 차지하여 밭농사용이 가장 많음.
- 밭농사용 농기계의 보유 비중은 제주도가 91.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이 경기도 65.1%, 충북 62.8%, 충남 62.4% 등의 순임. 반면, 경남과 전남의 경우 밭농사용 농기계 보유 비중이 각각 35.9%, 41.2%로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경남과 전남은 대신 논농사용과 밭농사용 겸용 농기계 보유 비중이 각각 25.8%, 25.5%로 평균 17.9%보다 높은 비중을 보임.
-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가운데,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보유 비중은 18.2%로 높지 않은 편임.<sup>12</sup> 최근 여성농업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농가 가운데 상당수의 여성이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농 활동을 하고 있어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보유 비중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sup>12</sup>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구입한 농기계의 구입금액 대비 여성친화형 농기계 비중도 14.8%로 파악됨.

&lt;표 4-3&gt;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이용 용도별 보유 현황

단위: 대, %

권역	밭농사용	논농사용	논+밭농사용	축산용	기타	계
전국	31,288 (54.4)	8,342 (14.5)	10,274 (17.9)	2,320 (4.0)	5,331 (9.3)	57,555 (100.0)
경기·강원	7,047 (59.7)	1,543 (13.1)	1,859 (15.8)	585 (5.0)	762 (6.5)	11,796 (100.0)
강원	4,397 (56.9)	985 (12.7)	1,202 (15.6)	504 (6.5)	638 (8.3)	7,726 (100.0)
경기	2,650 (65.1)	558 (13.7)	657 (16.1)	81 (2.0)	124 (3.0)	4,070 (100.0)
충청	8,643 (62.6)	1,821 (13.2)	2,175 (15.7)	467 (3.4)	709 (5.1)	13,815 (100.0)
충북	3,929 (62.8)	572 (9.1)	993 (15.9)	246 (3.9)	515 (8.2)	6,255 (100.0)
충남	4,714 (62.4)	1,249 (16.5)	1,182 (15.6)	221 (2.9)	194 (2.6)	7,560 (100.0)
영남	7,465 (48.9)	2,189 (14.3)	2,536 (16.6)	872 (5.7)	2,195 (14.4)	15,257 (100.0)
경북	5,396 (56.9)	1,230 (13.0)	1,045 (11.0)	460 (4.8)	1,357 (14.3)	9,488 (100.0)
경남	2,069 (35.9)	959 (16.6)	1,491 (25.8)	412 (7.1)	838 (14.5)	5,769 (100.0)
호남·제주	8,133 (48.7)	2,789 (16.7)	3,704 (22.2)	396 (2.4)	1,665 (10.0)	16,687 (100.0)
전북	3,834 (55.1)	976 (14.0)	1,375 (19.8)	184 (2.6)	586 (8.4)	6,955 (100.0)
전남	3,765 (41.2)	1,813 (19.8)	2,329 (25.5)	207 (2.3)	1,035 (11.3)	9,149 (100.0)
제주	534 (91.6)	-	-	5 (0.9)	44 (7.5)	5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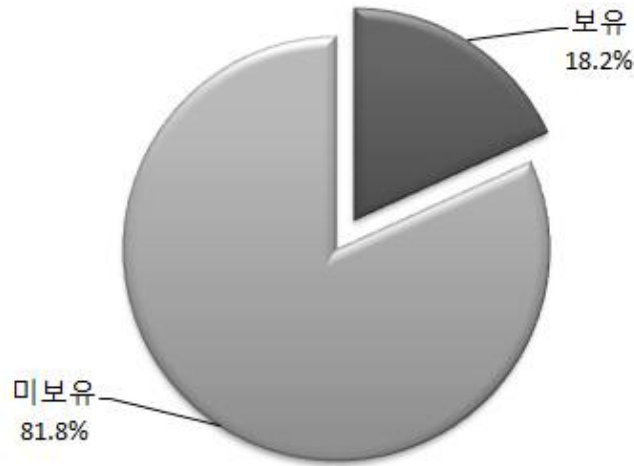
주 1) (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2)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3) 수치는 본소와 지소(분소)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그림 4-1>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유 현황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 1.2.2. 농기계 임대일수 및 이용 농가수

-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의 해당 임대일수는 임대일수가 0인 농기계를 모두 포함하여 평균 10.9일로 분석됨. 권역별로는 호남·제주의 해당 임대일수가 12.1일로 가장 많으며, 경기·강원이 8.8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 용도별로는 밭농사용 농기계의 해당 임대일수는 평균 10.4일이며, 도별로는 제주도가 21.0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전북 11.8일, 경북 11.4일 등의 순임. 반면, 강원과 경남의 해당 임대일수는 각각 8.3일, 8.6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임.
  - 논농사와 밭농사 겸용 농기계의 경우 해당 임대일수가 11.9일로 밭농사용보다 많으며, 도별로는 전남 12.9일, 충북 12.8일, 경북 12.6일, 충남 12.5일 등의 순으로 조사됨.

&lt;표 4-4&gt;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이용 용도별 해당 임대일수

단위: 일

권역	발농사용	논농사용	논+발농사용	축산용	기타	계
전국	10.4	9.6	11.9	7.8	15.8	10.9
경기·강원	8.9	7.9	9.2	8.7	8.9	8.8
강원	8.3	6.6	9.0	8.3	8.1	8.2
경기	10.0	15.3	14.1	11.1	13.2	10.0
충청	9.9	8.1	12.7	7.2	14.6	10.2
충북	9.4	7.3	12.8	6.3	16.2	10.2
충남	10.3	8.5	12.5	8.1	10.1	10.3
영남	10.6	9.1	10.8	7.4	16.4	11.1
경북	11.4	10.1	12.6	8.0	18.2	12.2
경남	8.6	7.8	9.4	6.8	13.8	9.3
호남·제주	11.9	10.0	12.3	8.3	17.4	12.1
전북	11.8	14.2	11.3	11.0	16.5	12.4
전남	10.7	7.7	12.9	5.8	16.9	11.2
제주	21.0	-	-	14.4	40.6	22.4

주 1)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2) 수치는 본소와 지소(분소)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한 농가 수는 해당 평균 8.6농가로 한 농기계에 7농가 정도가 임대하는 것으로 분석됨.<sup>13</sup> 농기계 해당 평균 이용 농가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로 12.3농가인 반면, 강원도는 6.8농가로 가장 적은 지역임.
- 발농사용 농기계의 평균 임대 농가 수는 8.4농가로 논농사용(7.0농가)이나 축산용(6.5농가)에 비해 많은 편임. 도별로는 역시 제주도가 21.0농가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북 11.8농가, 경북 11.4농가, 전남 10.7농가, 충남 10.3농가 등의 순임.

<sup>13</sup> 이용 농가 수가 0인 농기계도 포함하여 산정한 수치임.

&lt;표 4-5&gt;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이용 용도별 해당 이용 농가 수

단위: 농가

권역	밭농사용	논농사용	논+밭농사용	축산용	기타	계
전국	8.4	7.0	9.1	6.5	12.3	8.6
경기·강원	7.4	6.6	7.5	7.5	7.7	7.3
강원	6.9	5.4	7.2	7.0	7.2	6.8
경기	10.0	15.3	14.2	11.2	13.2	8.3
충청	9.9	8.1	12.7	7.2	14.6	7.9
충북	9.4	7.3	12.8	6.3	16.2	8.3
충남	10.3	8.5	12.5	8.1	10.1	7.6
영남	9.0	7.3	9.0	6.2	13.6	9.3
경북	11.4	10.1	12.6	8.0	18.2	10.0
경남	7.3	6.6	8.8	6.0	11.0	8.0
호남·제주	11.9	10.0	12.3	8.3	17.4	9.6
전북	11.8	14.2	12.3	11.0	16.5	9.8
전남	10.7	7.7	12.9	5.8	16.9	9.2
제주	21.0	-	-	14.4	40.6	13.2

주 1)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2) 수치는 본소와 지소(분소)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임대기간은 단기임대 형태가 전체의 99.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장기임대는 0.2%에 불과함.<sup>14</sup> 특히, 충북과 경남, 전남, 제주의 경우 장기임대는 없으며, 100% 단기임대만 한 것으로 나타남.

- 장기임대 농기계의 기종으로는 쇠토기, 쟁기, 휴대용 자동전지가위, 잔가지파쇄기, 퇴비살포기, SS분무기, 느타리 버섯 배지 입상기, 무논정지기 등이 있음.

<sup>14</sup>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의 장기임대 기준은 1년이며, 이 이외의 기간은 모두 단기임대로 간주하였음.



&lt;표 4-6&gt;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기간 비율

단위: %

권역	단기임대	장기임대	계
전국	99.8	0.2	100.0
경기·강원	99.6	0.4	100.0
강원	99.7	0.3	100.0
경기	99.6	0.4	100.0
충청	99.9	0.1	100.0
충북	100.0	-	100.0
충남	99.7	0.3	100.0
영남	100.0	0.0	100.0
경북	99.9	0.1	100.0
경남	100.0	-	100.0
호남·제주	99.9	0.1	100.0
전북	99.8	0.2	100.0
전남	100.0	-	100.0
제주	100.0	-	100.0

주 1)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2) 수치는 본소와 지소(분소)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 1.3.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담인력 현황

-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전국적으로 총 1,357명이며, 임대사업소 당 전담인력은 시·군 기준으로 9.7명임.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905명으로 66.7%이며, 계약직은 33.3%인 452명으로 나타남.<sup>15</sup>

15 정규직은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정규 직원인 ‘상용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을 포함함. 계약직은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 근로자로서 임시 및 일용 근로자를 말함.

- 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과 충남으로 각각 73.9%, 73.7%이며, 다음이 강원 73.1%, 경기 72.1% 등의 순임. 반면, 경북과 제주도는 임대사업소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중이 각각 53.7%, 59.1%로 낮은 편임.

- 임대사업소 정규직 전담인력의 근무연수는 평균 9.7년이며, 계약직의 연간 근무일수는 평균 232.6일로 조사됨.

<표 4-7>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전담인력 현황

단위: 명(%), 연, 일

권역	고용형태			정규직 평균 근무연수	계약직 평균 연간 근무일수
	정규직	계약직	계		
전국	905(66.7)	452(33.3)	1,357(100.0)	9.7	232.6
경기·강원	213(72.4)	81(27.6)	294(100.0)	9.7	261.3
강원	145(73.1)	56(26.9)	201(100.0)	8.9	257.6
경기	68(72.1)	25(27.9)	93(100.0)	11.2	269.2
충청	199(70.6)	83(29.4)	282(100.0)	10.1	224.2
충북	84(66.7)	42(33.3)	126(100.0)	8.9	211.8
충남	115(73.7)	41(26.3)	156(100.0)	11.8	237.3
영남	255(58.5)	181(41.5)	436(100.0)	10.3	210.9
경북	159(53.7)	137(46.3)	296(100.0)	11.2	197.5
경남	96(68.6)	44(31.4)	140(100.0)	8.9	251.6
호남·제주	238(69.0)	107(31.0)	345(100.0)	8.2	256.2
전북	92(64.3)	51(35.7)	143(100.0)	9.7	248.5
전남	133(73.9)	47(26.1)	180(100.0)	7.0	271.2
제주	13(59.1)	9(40.9)	22(100.0)	10.2	223.6

주 1) (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2)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3) 수치는 본소와 지소(분소)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전담인력의 전문인력 비율은 평균 69.3%로

&lt;표 4-8&gt;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담인력의 전문성

단위: 명, %

권역	전문 경력관	5년 이상 경력자	무기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농기계학과 졸업자	농기계 자격증	전문교육 이수자	계
전국	65 (3.6)	350 (19.3)	371 (20.5)	79 (4.8)	101 (5.6)	687 (38.0)	156 (8.6)	1,809 (100.0)
경기·강원	12 (3.0)	81 (20.0)	75 (18.6)	21 (5.2)	10 (2.5)	150 (37.1)	55 (13.6)	404 (100.0)
강원	6 (2.2)	52 (19.4)	61 (22.8)	4 (1.5)	3 (1.1)	104 (38.8)	38 (14.2)	268 (100.0)
경기	6 (4.4)	29 (21.3)	14 (10.3)	17 (12.5)	7 (5.1)	46 (33.8)	17 (12.5)	136 (100.0)
충청	17 (4.5)	79 (20.7)	81 (21.3)	12 (3.1)	26 (6.8)	128 (33.6)	38 (10.0)	381 (100.0)
충북	7 (4.2)	28 (17.0)	42 (25.5)	4 (2.4)	12 (7.3)	59 (35.8)	13 (7.9)	165 (100.0)
충남	10 (4.6)	51 (23.6)	39 (18.1)	8 (3.7)	14 (6.5)	69 (31.9)	25 (11.6)	216 (100.0)
영남	17 (3.0)	101 (17.8)	133 (23.4)	26 (4.6)	34 (6.0)	224 (39.4)	34 (6.0)	569 (100.0)
경북	13 (3.7)	59 (16.6)	89 (25.0)	9 (2.5)	19 (5.3)	143 (40.2)	24 (6.7)	356 (100.0)
경남	4 (1.9)	42 (19.7)	23 (20.7)	13 (8.0)	10 (7.0)	81 (38.0)	10 (4.7)	213 (100.0)
호남·제주	19 (4.2)	89 (19.6)	82 (18.0)	20 (4.4)	31 (6.8)	185 (40.7)	29 (6.4)	455 (100.0)
전북	10 (4.8)	43 (20.8)	23 (11.1)	13 (6.3)	10 (4.8)	90 (43.5)	18 (8.7)	207 (100.0)
전남	9 (4.1)	39 (17.9)	53 (24.3)	7 (3.2)	15 (6.9)	84 (38.5)	11 (5.0)	218 (100.0)
제주	-	7 (23.3)	6 (20.0)	-	6 (20.0)	11 (36.7)	-	30 (100.0)

주 1) 복수응답 기준임.

2) (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3)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4) 수치는 본소와 지소(분소)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써 전문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임대사업소 전담인력의 항목별 전문성을 살펴보면, 농기계 자격증 소지자가 38.0%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무기계약직 20.5%, 5년 이상 경력자 19.3%, 전문교육 이수자 8.6%, 농기계학과 졸업자 5.6%, 임기제 공무원 4.8%, 전문경력관 3.6%임.

#### 1.4.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조직 확보 현황

- 전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가운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비중은 72.1%로 높은 편이나, 여전히 전담조직 없이 운영되는 사업소도 27.9%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4-9>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전담조직 구성 여부

단위: 개소 수, %

권역	전담조직 구성 여부			아니오	계
	예	운영 시 팀제 이상			
		예	아니오		
전국	101(72.1)	96 (95.0)	5 (5.0)	39 (27.9)	140(100.0)
경기·강원	25(78.1)	24 (96.0)	1 (4.0)	7 (21.9)	32(100.0)
강원	12(75.0)	12(100.0)	-	4 (25.0)	16(100.0)
경기	13(81.3)	12 (92.3)	1 (7.7)	3 (18.8)	16(100.0)
충청	24(92.3)	22 (91.7)	2 (8.3)	2 (8.3)	26(100.0)
충북	10(90.9)	9 (90.0)	1(10.0)	1 (10.0)	11(100.0)
충남	14(93.3)	13 (92.9)	1 (7.1)	1 (7.1)	15(100.0)
영남	29(69.0)	28 (96.5)	1 (3.5)	13 (31.0)	42(100.0)
경북	17(70.8)	17(100.0)	-	7 (29.2)	24(100.0)
경남	12(66.7)	11 (91.6)	1 (8.4)	6 (33.3)	18(100.0)
호남·제주	23(57.5)	22 (95.7)	1 (4.3)	17 (42.5)	40(100.0)
전북	11(78.6)	10 (90.9)	1 (9.1)	3 (21.4)	14(100.0)
전남	12(54.5)	12(100.0)	-	10 (52.6)	22(100.0)
제주	-	-	-	4(100.0)	4(100.0)

주 1) 계는 시·군수 기준이며, (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2)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임대사업소의 경우 전담조직이 팀제 이상인 비중은 95.0%로 대다수의 사업소가 별도 팀을 운영 중에 있음.
- 권역별로는 충청지역에서 92.3%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강원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78.1%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영남지역의 전담조직 구성 비중은 69.0%, 호남·제주는 57.5%로 평균 이하의 수치를 보임.
  - 도별로는 충남과 충북의 전담조직 구성 비중이 각각 93.3%, 90.9%로 대부분이며, 다음으로 경기 81.3%, 전북 78.6%, 강원 75.0% 등의 순임.
- 농기계 임대사업소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소는 평균 95.0%의 비중으로 대부분인 가운데, 호남·제주 지역에서는 100%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음.

<표 4-10>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심의위원회 운영 여부

단위: 개소 수, %

권역	예	아니오	계
전국	133 (95.0)	7 (5.0)	140(100.0)
경기·강원	30 (93.8)	2 (6.2)	32(100.0)
강원	16(100.0)	-	16(100.0)
경기	14 (87.5)	2(12.5)	16(100.0)
충청	25 (96.2)	1 (3.8)	26(100.0)
충북	10 (90.9)	1 (9.1)	11(100.0)
충남	15(100.0)	-	15(100.0)
영남	38 (90.5)	4 (9.5)	42(100.0)
경북	21 (95.2)	3 (4.8)	24(100.0)
경남	17 (94.4)	1 (5.6)	18(100.0)
호남·제주	40(100.0)	-	40(100.0)
전북	14(100.0)	-	14(100.0)
전남	22(100.0)	-	22(100.0)
제주	4(100.0)	-	4(100.0)

주 1) 계는 시·군수 기준이며, (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2)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가운데, 위원회에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농기계 구입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소의 비중은 89.5%

<표 4-11> 심의위원회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위원 구성 현황

단위: 개소 수, %

권역	수요조사 후 구입계획 반영			평균 위원 인원수 (명)	여성농업인 등 포함 여부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전국	119 (89.5)	14 (10.5)	133 (100.0)	10.0	124 (93.2)	9 (6.8)	133 (100.0)
경기·강원	27 (90.0)	3 (10.0)	30 (100.0)	9.7	28 (93.3)	2 (6.7)	30 (100.0)
강원	15 (93.8)	1 (6.3)	16 (100.0)	9.3	15 (93.8)	1 (6.3)	16 (100.0)
경기	12 (85.7)	2 (14.3)	14 (100.0)	10.1	13 (92.9)	1 (7.1)	14 (100.0)
충청	22 (88.0)	3 (12.0)	25 (100.0)	10.5	24 (96.0)	1 (4.0)	25 (100.0)
충북	9 (90.0)	1 (10.0)	10 (100.0)	9.2	10 (100.0)	-	10 (100.0)
충남	13 (86.7)	2 (13.3)	15 (100.0)	10.8	14 (93.3)	1 (6.7)	15 (100.0)
영남	32 (84.2)	6 (15.8)	38 (100.0)	9.8	36 (94.7)	2 (5.3)	38 (100.0)
경북	16 (76.2)	5 (23.8)	21 (100.0)	10.5	20 (95.2)	1 (4.8)	21 (100.0)
경남	16 (94.1)	1 (5.9)	17 (100.0)	8.5	16 (94.1)	1 (5.9)	17 (100.0)
호남·제주	38 (95.0)	2 (5.0)	40 (100.0)	10.8	36 (90.0)	4 (10.0)	40 (100.0)
전북	13 (92.9)	1 (7.1)	14 (100.0)	10.5	13 (92.1)	1 (7.1)	14 (100.0)
전남	21 (95.5)	1 (4.5)	22 (100.0)	9.7	19 (86.4)	3 (13.6)	22 (100.0)
제주	4 (100.0)	-	4 (100.0)	17.5	4 (100.0)	-	4 (100.0)

주 1)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음.

2) 계는 시·군수 기준이며, ( ) 내는 각 계에 대한 구성비임.

3)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임. 권역별로는 호남·제주의 수요조사 후 구입계획 반영 비중이 95.0%로 가장 높으며, 경기·강원이 90.0%, 충청지역 88.0%, 영남 8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농기계 임대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평균 10명 정도이며, 제주도가 17.5명으로 가장 많음.

- 심의위원 가운데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가 각 1인 이상이 포함된 경우는 평균 93.2%로 대부분임. 특히, 충북과 제주도의 경우 100%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가 각 1인 이상 포함된 것으로 조사됨.

## 1.5. 농기계 임대사업소 수입 및 비용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수익 구조를 분석해 보면, 사업소의 총 수입은 9,781만원인 반면, 총 지출액은 8억 3,908만원으로 7억 4,127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도별로는 충북의 적자폭이 9억 9,078만원으로 가장 크며, 다음이 경북 8억 7,072만원, 강원 7억 8,111만원 등의 순임.

- 경기도와 제주도의 적자폭은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각각 3억 3,080만원, 3억 6,367만원임.

- 농기계 임대사업소 총 수입은 평균 9,781만원인데, 이중 임대료 수입이 대부분인 91.0%를 차지하며, 운송비 등 기타 수입은 9.0% 정도임. 임대사업소 총 수입 가운데, 임대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충남 97.9%과 경북 95.7%, 경남 94.3%, 강원 93.3% 등임.

- 반면, 전북의 경우 총 수입에서 임대료 수입의 비중은 44.9%로 과반이 되지 않으며, 기타 수입이 55.1%를 차지함. 이는 전북지역이 농기계 임대 시 농가에 직접 임대농기계를 가져다주고 운송비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4-12>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총 수입 및 총 지출 단위: 천 원

권역	평균 총 수입(A)	평균 총 지출(B)	A-B
전국	97,810	839,078	-741,268
경기·강원	96,744	656,876	-560,132
강원	120,337	901,450	-781,113
경기	73,880	404,684	-330,803
충청	99,080	987,731	-888,651
충북	132,831	1,123,611	-990,780
충남	73,861	897,414	-823,553
영남	90,134	897,552	-807,418
경북	108,639	979,357	-870,718
경남	65,562	785,855	-720,293
호남·제주	119,751	828,292	-708,540
전북	237,385	979,353	-741,968
전남	90,497	810,253	-719,756
제주	64,701	428,370	-363,669

주: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표 4-13>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항목별 총 수입 단위: 천 원, %

권역	평균 임대료 수입	평균 운송비 등 수입	계
전국	88,977 (91.0)	8,832 (9.0)	97,810(100.0)
경기·강원	86,498 (89.4)	10,245(10.6)	96,744(100.0)
강원	112,280 (93.3)	8,057 (6.7)	120,337(100.0)
경기	60,716 (82.2)	13,163(17.8)	73,880(100.0)
충청	91,931 (92.8)	7,148 (7.2)	99,080(100.0)
충북	118,670 (89.3)	14,160(10.7)	132,831(100.0)
충남	72,323 (97.9)	1,538 (2.1)	73,861(100.0)
영남	85,913 (95.3)	4,221 (4.7)	90,134(100.0)
경북	103,965 (95.7)	4,673 (4.3)	108,639(100.0)
경남	61,843 (94.3)	3,718 (5.7)	65,562(100.0)
호남·제주	92,341 (77.1)	27,410(22.9)	119,751(100.0)
전북	106,632 (44.9)	130,753(55.1)	237,385(100.0)
전남	88,922 (89.3)	1,574 (1.7)	90,497(100.0)
제주	64,701(100.0)	-	64,701(100.0)

주 1) (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2)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총 지출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농기계의 연 감가상각비가 6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이 인건비 18.1%, 임대사업 수행운영비 12.4%, 농기계 수리비 7.6%, 차량유지 관리비 1.3%의 순임.

<표 4-14>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항목별 총 지출

단위: 천 원, %

권역	농기계 연 감가상각비	인건비	농기계 수리비	차량유지 관리비	임대사업 수행운영비	계
전국	508,282 (60.6)	152,008 (18.1)	63,688 (7.6)	10,789 (1.3)	104,311 (12.4)	839,078 (100.0)
경기·강원	455,349 (69.3)	33,565 (5.1)	65,733 (10.0)	16,344 (2.5)	85,885 (13.1)	656,876 (100.0)
강원	661,201 (73.3)	36,873 (4.1)	88,439 (9.8)	20,559 (2.3)	94,378 (10.5)	901,450 (100.0)
경기	249,497 (61.7)	30,260 (7.5)	39,783 (9.8)	8,966 (2.2)	76,178 (18.8)	404,684 (100.0)
충청	711,071 (72.0)	33,646 (3.4)	88,060 (8.9)	7,451 (0.8)	147,503 (14.9)	987,731 (100.0)
충북	966,597 (86.0)	35,928 (3.2)	70,199 (6.2)	4,604 (0.4)	46,283 (4.1)	1,123,611 (100.0)
충남	523,687 (58.4)	31,972 (3.6)	101,157 (11.3)	8,745 (1.0)	231,853 (25.8)	897,414 (100.0)
영남	471,109 (52.5)	253,805 (28.3)	56,530 (6.3)	10,883 (1.2)	105,226 (11.7)	897,552 (100.0)
경북	552,024 (56.4)	280,515 (28.6)	57,676 (5.9)	6,518 (0.7)	82,625 (8.4)	979,357 (100.0)
경남	363,222 (46.2)	218,192 (27.8)	55,001 (7.0)	16,591 (2.1)	132,849 (16.9)	785,855 (100.0)
호남·제주	457,847 (55.3)	216,811 (26.2)	53,576 (6.5)	7,804 (0.9)	92,254 (11.1)	828,292 (100.0)
전북	415,474 (42.4)	285,516 (29.2)	62,976 (6.4)	11,787 (1.2)	203,600 (20.8)	979,353 (100.0)
전남	510,294 (63.0)	208,764 (25.8)	45,348 (5.6)	6,350 (0.8)	39,497 (4.9)	810,253 (100.0)
제주	317,699 (74.2)	20,600 (4.8)	63,871 (14.9)	4,200 (1.0)	22,000 (5.1)	428,370 (100.0)

주 1) (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2)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는 정부지원을 통해 구입한 것이므로 총 지출에서 농기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후, 사업소 수익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즉, 사업소의 총 수입 9,781만 원에다 농기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총 지출액 3억 3,080만 원을 빼면 적자는 2억 3,299만 원으로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됨.

## 1.6.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사업 지속성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사업 지속성 관련 항목 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여부를 살펴보면, 사업소의 42.9%는 수립하고 있는 반면, 과반 이상인 57.1%는 중장기 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도별로는 경기도가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비중이 68.8%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전북 57.1%, 경남 55.6% 등임. 특히, 강원도와 충북의 경우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비중이 각각 25.0%, 27.3%로 상당히 낮은 편임.
-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가 있는 비중은 99.3%로 거의 대부분 관련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경기도의 1개 시·군에서만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를 보유하고 있음.
- 농기계 임대사업소 가운데,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비중은 3.6%로 극히 미미한 수준임. 기금조성은 경기·강원지역과 영남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됨.
  - 기금을 조성한 임대사업소의 평균 조성 시기는 2007년도이며, 조성된 기금의 금액은 1억 6,700만 원으로 파악됨.

&lt;표 4-15&gt;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사업 지속성

단위: 개소 수, %

권역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관련 조례 보유			기금조성 여부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전국	60 (42.9)	80 (57.1)	140 (100.0)	139 (99.3)	1 (0.7)	140 (100.0)	5 (3.6)	135 (96.4)	140 (100.0)
경기·강원	15 (46.9)	17 (53.1)	32 (100.0)	31 (96.9)	1 (3.1)	32 (100.0)	3 (9.4)	29 (90.6)	32 (100.0)
강원	4 (25.0)	12 (75.0)	16 (100.0)	16 (100.0)	-	16 (100.0)	1 (6.3)	15 (93.8)	16 (100.0)
경기	11 (68.8)	5 (31.3)	16 (100.0)	15 (93.8)	1 (7.2)	16 (100.0)	2 (12.5)	14 (87.5)	16 (100.0)
충청	9 (34.6)	17 (65.4)	26 (100.0)	26 (100.0)	-	26 (100.0)	-	26 (100.0)	26 (100.0)
충북	3 (27.3)	8 (72.7)	11 (100.0)	11 (100.0)	-	11 (100.0)	-	11 (100.0)	11 (100.0)
충남	6 (40.0)	9 (60.0)	15 (100.0)	15 (100.0)	-	15 (100.0)	-	15 (100.0)	15 (100.0)
영남	20 (47.6)	22 (52.4)	42 (100.0)	42 (100.0)	-	42 (100.0)	2 (4.8)	40 (95.2)	42 (100.0)
경북	10 (41.7)	14 (58.3)	24 (100.0)	24 (100.0)	-	24 (100.0)	1 (4.2)	23 (95.8)	24 (100.0)
경남	10 (55.6)	8 (44.4)	18 (100.0)	18 (100.0)	-	18 (100.0)	1 (5.6)	17 (94.4)	18 (100.0)
호남·제주	16 (40.0)	24 (60.0)	40 (100.0)	40 (100.0)	-	40 (100.0)	-	40 (100.0)	40 (100.0)
전북	8 (57.1)	6 (42.9)	14 (100.0)	14 (100.0)	-	14 (100.0)	-	14 (100.0)	14 (100.0)
전남	8 (36.4)	14 (63.6)	22 (100.0)	22 (100.0)	-	22 (100.0)	-	22 (100.0)	22 (100.0)
제주	-	4 (100.0)	4 (100.0)	4 (100.0)	-	4 (100.0)	-	4 (100.0)	4 (100.0)

주 1) 계는 시·군수 기준이며, ( ) 내는 각 계에 대한 구성비임.

2)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 1.7.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타 현황

○ 고령농가나 여성농가에 대해 우대지원이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전체의

21.4% 정도임. 권역별로는 경기·강원지역의 40.6%에서 고령농가나 여성농가에 대한 임대지원이 있으며, 영남지역은 임대지원 비중이 7.1%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타 시·군, 농협, 민간 등과 농기계를 공동 이용한 경향이 있는 비중은 12.1%로 분석됨. 도별로는 경기도가 31.3%로 공동 이용 경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충청 20.0%, 경남 16.7%, 전남 13.6% 등의 순임.

<표 4-16>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고령농·여성농 임대 지원 및 공동이용 여부  
단위: 개소 수, %

권역	고령농·여성농 임대 지원			농기계 공동이용 여부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전국	30(21.4)	110 (78.6)	140(100.0)	17(12.1)	123 (87.9)	140(100.0)
경기·강원	13(40.6)	19 (59.4)	32(100.0)	7(21.9)	25 (78.1)	32(100.0)
강원	9(56.3)	7 (43.8)	16(100.0)	2(12.5)	14 (87.5)	16(100.0)
경기	4(25.0)	12 (75.0)	16(100.0)	5(31.3)	11 (68.8)	16(100.0)
충청	9(34.6)	17 (65.4)	26(100.0)	3(11.5)	23 (88.5)	26(100.0)
충북	4(36.4)	7 (63.6)	11(100.0)	-	11(100.0)	11(100.0)
충남	5(33.3)	10 (66.7)	15(100.0)	3(20.0)	12 (80.0)	15(100.0)
영남	3 (7.1)	39 (92.9)	42(100.0)	3 (7.1)	39 (92.9)	42(100.0)
경북	1 (4.2)	23 (95.8)	24(100.0)	-	24(100.0)	24(100.0)
경남	2(11.1)	16 (88.9)	18(100.0)	3(16.7)	15 (83.3)	18(100.0)
호남·제주	5(12.5)	35 (87.5)	40(100.0)	4(10.0)	36 (90.0)	40(100.0)
전북	2(14.3)	12 (85.7)	14(100.0)	1 (7.1)	13 (92.9)	14(100.0)
전남	3(13.6)	19 (86.4)	22(100.0)	3(13.6)	19 (86.4)	22(100.0)
제주	-	4(100.0)	4(100.0)	-	4(100.0)	4(100.0)

주 1) 계는 시·군수 기준이며, ( ) 내는 각 계에 대한 구성비임.

2)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 농기계 임대사업소 담당자가 민원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업소는 전체의 2.1%, 근무평가에서 가점을 부여 받은 전담인력 비중도 3.6%에 불과한 실정임. 다만, 임대사업소 담당자 및 조직이 포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중은 31.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편임.

<표 4-17>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담당자 및 사업소 인센티브 경험

단위: 개소 수, %

권역	민원수당			포상경험			가점부여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전국	3 (2.1)	137 (97.9)	140 (100.0)	44 (31.4)	96 (68.6)	140 (100.0)	5 (3.6)	135 (96.4)	140 (100.0)
경기·강원	1 (3.1)	31 (96.9)	32 (100.0)	15 (46.9)	17 (53.1)	32 (100.0)	4 (12.5)	28 (87.5)	32 (100.0)
강원	1 (6.3)	15 (93.8)	16 (100.0)	8 (50.0)	8 (50.0)	16 (100.0)	1 (6.3)	15 (93.8)	16 (100.0)
경기	-	16 (100.0)	16 (100.0)	7 (43.8)	9 (56.3)	16 (100.0)	3 (18.8)	13 (81.3)	16 (100.0)
충청	1 (3.8)	25 (96.2)	26 (100.0)	9 (34.6)	17 (65.4)	26 (100.0)	-	26 (100.0)	26 (100.0)
충북	-	11 (100.0)	11 (100.0)	-	11 (100.0)	11 (100.0)	-	11 (100.0)	11 (100.0)
충남	1 (6.7)	14 (93.3)	15 (100.0)	9 (60.0)	6 (40.0)	15 (100.0)	-	15 (100.0)	15 (100.0)
영남	-	42 (100.0)	42 (100.0)	7 (16.7)	35 (83.3)	42 (100.0)	-	42 (100.0)	42 (100.0)
경북	-	24 (100.0)	24 (100.0)	2 (8.3)	22 (91.7)	24 (100.0)	-	24 (100.0)	24 (100.0)
경남	-	18 (100.0)	18 (100.0)	5 (27.8)	13 (72.2)	18 (100.0)	-	18 (100.0)	18 (100.0)
호남·제주	1 (2.5)	39 (97.5)	40 (100.0)	13 (32.5)	27 (67.5)	40 (100.0)	1 (2.5)	39 (97.5)	40 (100.0)
전북	-	14 (100.0)	14 (100.0)	5 (35.7)	9 (64.3)	14 (100.0)	1 (7.1)	13 (92.9)	14 (100.0)
전남	1 (4.5)	21 (95.5)	22 (100.0)	5 (22.7)	17 (77.3)	22 (100.0)	-	22 (100.0)	22 (100.0)
제주	-	4 (100.0)	4 (100.0)	3 (75.0)	1 (25.0)	4 (100.0)	-	4 (100.0)	4 (100.0)

주 1) 계는 시·군수 기준이며, ( ) 내는 각 계에 대한 구성비임.

2)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 시·군·구에서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비중은 3.6%로 극히 일부에 그침. 또한, 최근 3년간 농기계 임대사업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는 사업소 비중은 3.6%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4-18>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운영 및 최근 3년간 사업포기 경험  
단위: 개소 수, %

권역	밭작물 공동경영체 운영 경험			최근 3년간 농기계 임대 사업 포기 경험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전국	5 (3.6)	135 (96.4)	140 (100.0)	5 (3.6)	135 (96.4)	140 (100.0)
경기·강원	-	32 (100.0)	32 (100.0)	1 (3.1)	31 (96.9)	32 (100.0)
강원	-	16 (100.0)	16 (100.0)	1 (6.3)	15 (93.8)	16 (100.0)
경기	-	16 (100.0)	16 (100.0)	-	16 (100.0)	16 (100.0)
충청	1 (3.8)	25 (96.2)	26 (100.0)	-	26 (100.0)	26 (100.0)
충북	1 (9.1)	10 (90.9)	11 (100.0)	-	11 (100.0)	11 (100.0)
충남	-	15 (100.0)	15 (100.0)	-	15 (100.0)	15 (100.0)
영남	2 (4.8)	40 (95.2)	42 (100.0)	1 (2.4)	41 (97.6)	42 (100.0)
경북	1 (4.2)	23 (95.8)	24 (100.0)	-	24 (100.0)	24 (100.0)
경남	1 (5.6)	17 (94.4)	18 (100.0)	1 (5.6)	17 (94.4)	18 (100.0)
호남·제주	2 (5.0)	38 (95.0)	40 (100.0)	3 (7.7)	37 (92.3)	40 (100.0)
전북	-	14 (100.0)	14 (100.0)	1 (7.1)	13 (92.9)	14 (100.0)
전남	2 (9.1)	20 (90.9)	22 (100.0)	2 (9.1)	20 (90.9)	22 (100.0)
제주	-	4 (100.0)	4 (100.0)	-	4 (100.0)	4 (100.0)

주 1) 계는 시·군수 기준이며, ( ) 내는 각 계에 대한 구성비임.

2)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임대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비중은 96.4%로 대다수를 차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소가 3.6%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9>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농업인 대상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 여부  
단위: 개소 수, %

권역	임대농업인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여성 농업인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TV, 신문 등 홍보 실적 여부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전국	135 (96.4)	5 (3.6)	140 (100.0)	79 (56.4)	61 (43.6)	140 (100.0)	118 (84.3)	22 (15.7)	140 (100.0)
경기·강원	30 (93.8)	2 (6.3)	32 (100.0)	22 (68.8)	10 (31.3)	32 (100.0)	26 (81.3)	6 (18.8)	32 (100.0)
강원	16 (100.0)	-	16 (100.0)	12 (75.0)	4 (25.0)	16 (100.0)	13 (81.3)	3 (18.8)	16 (100.0)
경기	14 (87.5)	2 (12.5)	16 (100.0)	10 (62.5)	6 (37.5)	16 (100.0)	13 (81.3)	3 (18.8)	16 (100.0)
충청	25 (96.2)	1 (3.8)	26 (100.0)	15 (57.7)	11 (42.3)	26 (100.0)	21 (80.8)	5 (19.2)	26 (100.0)
충북	10 (90.9)	1 (9.1)	11 (100.0)	8 (72.7)	3 (27.3)	11 (100.0)	10 (90.9)	1 (9.1)	11 (100.0)
충남	15 (100.0)	-	15 (100.0)	7 (46.7)	8 (53.3)	15 (100.0)	11 (73.3)	4 (26.7)	15 (100.0)
영남	41 (97.6)	1 (2.4)	42 (100.0)	18 (42.9)	24 (57.1)	42 (100.0)	36 (85.7)	6 (14.3)	42 (100.0)
경북	23 (95.8)	1 (4.2)	24 (100.0)	12 (50.0)	12 (50.0)	24 (100.0)	20 (83.3)	4 (16.7)	24 (100.0)
경남	18 (100.0)	-	18 (100.0)	6 (33.3)	12 (66.7)	18 (100.0)	16 (88.9)	2 (11.1)	18 (100.0)
호남·제주	39 (97.5)	1 (2.5)	40 (100.0)	24 (60.0)	16 (40.0)	40 (100.0)	35 (87.5)	5 (12.5)	40 (100.0)
전북	14 (100.0)	-	14 (100.0)	11 (78.6)	3 (21.4)	14 (100.0)	12 (85.7)	2 (14.3)	14 (100.0)
전남	21 (95.5)	1 (4.5)	22 (100.0)	11 (50.0)	11 (50.0)	22 (100.0)	21 (95.5)	1 (4.5)	22 (100.0)
제주	4 (100.0)	-	4 (100.0)	2 (50.0)	2 (50.0)	4 (100.0)	2 (50.0)	2 (50.0)	4 (100.0)

주 1) 계는 시·군수 기준이며, ( ) 내는 각 계에 대한 구성비임.

2)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전체의 56.4%로 과반 이상임. 권역별로는 경기·강원지역의 68.8%가 실시 경험이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영남지역은 실시 경험이 42.9%로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음.
- 농기계 임대사업소 중, 임대농기계에 대해 TV나 신문 등에 홍보한 실적이 있는 비중은 84.3%로 나타나 많은 사업소가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도별로는 전남과 충북의 홍보 실시 비중이 각각 95.5%, 90.9%로 90% 이상의 비중을 보임.

## 2. 평가지표 분석결과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는 조사표를 통한 임대사업소 조사결과를 기초로 산정되었으나, 2016년에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여 실적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기계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이 때문에 일부 분석결과가 앞의 1절 임대사업소 실태 결과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예컨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의 임대일수는 대당 평균 10.9일이나, 평가지표 분석에서는 1년이 경과하지 않는 농기계는 제외하기 때문에 대당 평균 임대일수가 12.6일이 됨.

### 2.1. 인력 및 조직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인 인력 및 조직은 인력 확보, 전문성, 조직 확보의 3가지 평가지표가 있음. 첫 번째 평가지표인 인력 확보 가운데, 최소인력



대비 정규직 보유인력 비율은 평균 56.9%이며, 권역별로는 영남지역이 58.9%로 가장 높음. 최소인력 충족률 평가지표 산정결과, 평균 83.5%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권역별로 영남지역이 94.7%로 가장 높은 반면, 경기·강원이 73.6%로 제일 낮음.

<표 4-20>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인력 및 조직의 권역별 평가결과

단위: %

권역	인력 및 조직					
	인력 확보		전문성		조직 확보	
	최소인력대비 정규직 보유인력 비율	최소인력 충족률	보유인력 대비 전문인력 비율	전문인력 질적 평가	팀(계) 이상 조직	심의위원회 적절성
전국	56.9	83.5	69.3	87.3	68.6	95.0
경기·강원	54.7	73.6	73.1	85.5	75.0	93.8
강원	53.9	74.8	68.7	83.4	75.0	100.0
경기	55.4	72.5	77.0	87.3	75.0	87.5
충청	57.3	80.6	65.3	84.1	84.6	96.2
충북	52.5	82.6	65.2	83.0	81.8	90.9
충남	60.8	79.2	65.4	84.9	86.7	100.0
영남	58.9	94.7	68.3	88.7	66.7	90.5
경북	54.2	98.8	64.4	89.8	70.8	95.2
경남	65.0	89.2	73.5	87.3	61.1	94.4
호남·제주	56.2	81.6	69.9	89.3	55.0	100.0
전북	52.5	80.1	70.9	96.1	71.4	100.0
전남	57.0	77.4	68.4	85.3	54.5	100.0
제주	65.0	110.0	74.2	87.5	0.0	100.0

- 주 1) 평가결과는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출하였음.  
 2) 조직 확보 가운데, 팀(계) 이상 조직 평가지표는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더라도 팀(계) 이상 명시된 조직·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사업소만 추출하여 산정하였음.  
 3)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 전문성 평가지표인 보유인력 대비 전문인력 비율은 평균 69.3%로 경기·강원지역이 7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문인력 질적 평가 지표의 경우 평균 87.3%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96.1%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sup>16</sup>
- 평가지표인 조직확보에서 사업소가 팀(계) 이상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비중은 평균 68.6%이며, 권역별로는 충청지역이 84.6%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제주지역은 55.0%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 2.2. 사업성과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인 사업성과는 임대실적과 이용 농가 수의 평가 지표로 측정함. 임대실적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로 측정되는데,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는 평균 12.6일임.
  - 도별로는 제주가 22.7일로 가장 많은데 비해 강원은 8.7일로 제일 적은 임대일수를 보임.
- 평가지표 이용 농가 수의 경우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 비율로 측정하는데, 전국 평균은 48.2%로 거의 과반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가장 높은 이용 농가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은 강원도로 70.7%를 기록하고 있음.
  - 반면, 제주와 경기는 각각 11.7%, 28.4%로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을 나타냄.

<sup>16</sup> 전문인력 질적 평가는 전문인력 가운데 전문경력관, 5년 이상 경력자, 농기계학과 졸업자, 농기계 자격증 소지자인 임대사업소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함.

&lt;표 4-21&gt;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성과의 권역별 평가결과

단위: 일, %

권역	사업성과	
	임대실적	이용 농가 수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 비율
전국	12.6	48.2
경기·강원	12.5	49.5
강원	8.7	70.7
경기	15.3	28.4
충청	12.9	48.6
충북	13.2	60.7
충남	12.8	39.7
영남	11.6	43.7
경북	12.9	48.6
경남	9.7	37.0
호남·제주	13.6	51.7
전북	12.8	67.7
전남	12.4	50.2
제주	22.7	11.7

- 주 1) 평가결과는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출하였음.  
 2) 2016년 실적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기계는 평가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음.  
 3)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4) 이용 농가 수는 한 농가가 동일 농기계를 중복 사용한 경우도 포함된 수치임.

### 2.3. 임대료

-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항목인 임대료는 임대료 수준이 평가지표이며, 이는 실제 임대료를 표준 임대료로 나눈 표준 단기 임대료 이행률로 측정하게 됨. 분석결과, 표준 단기 임대료 이행률은 평균 43.6%로 나타나 표준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의 표준 단기 임대료 이행률이 48.4%로 가장 높

으며, 제주와 경남의 이행률은 각각 31.4%, 37.4%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 4-2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임대료의 권역별 평가결과

단위: %

		임대료
		임대료 수준
		표준 단기 임대료 이행률
전국		43.6
경기·강원		45.9
	강원	47.6
	경기	44.3
충청		42.7
	충북	46.3
	충남	40.1
영남		43.7
	경북	48.4
	경남	37.4
호남·제주		42.0
	전북	40.0
	전남	45.3
	제주	31.4

- 주 1) 평가결과는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출하였음.  
 2) 2016년 실적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기계는 평가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음.  
 3)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 2.4. 발농업기계화 촉진

- 발농업 기계화 촉진 평가항목의 평가지표는 발농사용 농기계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임. 발농사용 농기계의 측정지표인 발농사용 농기계 비율은 평균

61.0%이며, 권역별로는 충청지역이 6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파종·이식·수확기 기종 구성 비율은 전국 평균이 20.5%인데, 경기·강원 지역이 26.7%로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도별로는 충남이 68.8%로 상당히 높은데 비해 제주는 7.5%에 불과한 수준임.
- 발농사용 농기계 대당 이용실적은 평균 12.4일이며, 도별로는 충남과 전북이 각각 21.7일, 21.6일로 가장 많음.

- 여성친화형 농기계 평가지표 중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14.7% 정도이며, 권역별로 호남·제주지역이 17.9%로 가장 높은 반면에 경기·강원지역은 가장 낮은 12.2%로 파악됨.

<표 4-23>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발농업기계화 촉진의 권역별 평가결과  
단위: %

	발농업 기계화 촉진				
	발농사용 농기계			여성친화형 농기계	
	발농사용 농기계 비율	파종·이식· 수확기 기종 구성 비율	발농사용 농기계 대당 이용실적(일)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성 비율	여성농업인 이용비율
전국	61.0	20.5	12.4	14.7	5.6
경기·강원	59.9	26.7	10.4	12.2	5.6
강원	48.9	30.7	12.0	7.7	6.6
경기	70.9	22.7	8.7	16.7	4.5
충청	66.1	21.0	13.5	12.8	5.1
충북	62.3	20.0	8.7	15.2	6.7
충남	0.7	68.8	21.7	17.0	3.9
영남	56.0	15.4	8.6	14.7	5.2
경북	61.7	14.4	8.9	13.7	4.4
경남	48.5	16.7	8.1	16.0	6.2
호남·제주	63.8	20.4	17.2	17.9	6.5
전북	65.4	19.7	21.6	13.8	5.5
전남	57.3	23.2	15.7	21.3	7.1
제주	89.3	7.5	13.0	8.4	5.3

- 주 1) 평가결과는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출하였음.  
 2) 2016년 실적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기계는 평가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음.  
 3)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 2.5. 사업 지속성 확보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인 사업 지속성 확보의 평가지표 중 하나는 임대 농기계 정책적합도인데, 이는 임대 농기계 정책적합 이용률로 측정함. 측정 결과, 전국 평균이 61.7%이며, 경기·강원 및 충청지역은 평균 이상인 반면, 영남 및 호남·제주의 경우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음.

<표 4-24>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 지속성 확보(1)의 권역별 평가결과  
단위: %

	사업 지속성 확보(1)					
	임대농기계 정책적합도	총 수입과 운영비용		연간수익		
	임대 농기계 정책적합 이용률	적정 수입 창출 달성률	최소비용 달성률	연간 수익률	매출원가 비율	1인당 수익(천원)
전국	61.7	66.6	179.3	-1,221.9	1,321.2	- 98,684.1
경기·강원	79.8	65.4	128.4	-1,037.5	1,137.5	- 91,158.3
강원	78.1	66.6	105.5	-1,079.4	1,179.4	- 93,357.1
경기	81.4	64.1	151.2	- 995.6	1,095.6	- 88,959.4
충청	72.2	67.8	175.5	-1,028.0	1,128.0	- 85,621.9
충북	66.1	65.7	121.4	- 923.0	1,023.0	- 98,865.6
충남	76.7	69.4	215.1	-1,105.0	1,205.0	- 75,909.8
영남	49.7	69.5	222.7	-1,422.0	1,522.0	-108,404.2
경북	50.5	66.4	258.9	-1,231.5	1,331.5	- 95,109.3
경남	48.6	73.6	173.6	-1,676.0	1,776.0	-126,130.6
호남·제주	52.9	63.9	177.3	-1,285.3	1,382.8	-102,863.1
전북	55.6	59.7	217.0	-1,030.4	1,123.2	-108,055.9
전남	57.5	62.9	165.9	-1,596.2	1,696.2	-105,751.4
제주	22.3	84.8	88.0	- 659.4	759.4	- 75,407.5

- 주 1) 평가결과는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출하였음.  
 2) 2016년 실적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기계는 평가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음.  
 3)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 평가지표인 총 수입과 운영비용의 적정 수입 창출 달성률은 평균 66.6% 정도로 정부 권유 적정 임대수입액보다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음. 제주도와 경남은 달성률이 각각 84.8%, 73.6%로 평균보다 높는데 비해 전북은 59.7%로 상대적 저위 수준임.
  - 최소비용 달성률은 총 운영비용을 농기계 잔존가치로 나누어 산정하였는데, 평균 17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북과 충남, 전북의 경우 최소비용 달성률이 20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됨.
- 연간수익 평가지표 가운데, 연간 수익률은 전국 평균이 -1,221.9%에 달하는데, 이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수익성 창출이 곤란하기 때문임. 권역별로 살펴보아도 모든 권역에서 연간 수익률은 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매출원가 비율은 평균 1,321.2%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1인당 수익의 경우 9,868만원 내외 적자인 것으로 조사됨. 도별로는 경남과 전북, 전남의 1인당 수익이 1억 원 이상 적자로 분석됨.
- 평가항목인 사업 지속성 확보의 또 다른 평가지표는 이용 농가 비용절감효과 및 사업 지속성임. 이용 농가 비용절감효과 중에서 이용 농가 비용절감 규모는 농가당 평균 2억 9,739만원이며, 권역별로는 충청지역이 4억 1,637만원으로 가장 비용절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실효적 농사비용 절감을 계측한 결과, 평균적으로는 46.0%로 산정되었으며, 영남지역이 51.3%로 타 권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사업 지속성의 측정지표인 농기계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는 평균 42.9%이며,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는 99.3% 보유한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기금 조성 및 운용은 평균 3.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표 4-25>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사업 지속성 확보(2)의 권역별 평가결과  
단위: %

	사업 지속성 확보(2)				
	이용 농가 비용절감효과		사업 지속성		
	이용 농가 비용절감 규모(원)	실효적 농사비용 절감	농기계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여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 유무	기금 조성 및 운용 유무
전국	297,386,525	46.0	42.9	99.3	3.6
경기·강원	227,687,774	35.8	46.9	96.9	9.4
강원	307,463,526	29.1	25.0	100.0	6.3
경기	148,272,021	42.6	68.8	93.8	12.5
충청	416,369,741	49.3	34.6	100.0	0.0
충북	686,964,807	47.7	27.3	100.0	0.0
충남	217,933,359	50.5	40.0	100.0	0.0
영남	264,682,818	51.3	47.6	100.0	4.8
경북	256,573,421	55.8	41.7	100.0	4.2
경남	275,495,348	45.2	55.6	100.0	5.6
호남·제주	310,001,327	46.4	40.0	100.0	0.0
전북	290,121,712	48.7	57.1	100.0	0.0
전남	348,075,083	45.9	36.4	100.0	0.0
제주	217,428,527	39.0	0.0	100.0	0.0

- 주 1) 평가결과는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출하였음.  
 2) 2016년 실적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기계는 평가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음.  
 3)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 2.6.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

-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항목인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는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임대사업소 조직원 자체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측정함. 만족도 조사결과,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1점이며, 권역별로 점수의 편차는 크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조직원 자체 평가결과는 18점 만점에 평균 11.4점이며, 도별로는 경북이 12.0점으로 가장 높는데 비해 충남은 10.6점으로 제일 낮음.

<표 4-26>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의 권역별 평가결과  
단위: 점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	
	수요자 평가	조직원 평가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 만족도	임대사업소 조직원 자체 평가
전국	7.1	11.4
경기·강원	7.1	11.1
강원	6.9	11.4
경기	7.1	11.2
충청	7.2	10.9
충북	7.3	11.3
충남	7.2	10.6
영남	7.0	11.9
경북	7.0	12.0
경남	6.6	11.5
호남·제주	7.2	11.1
전북	7.2	10.8
전남	7.3	11.3
제주	6.8	10.7

- 주 1) 평가결과는 농기계 임대 농업인 및 임대사업소 조직원 설문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가중평균한 후 산출하였음.  
2)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 2.7. 가점/감점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해 여러 가지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각각의 세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는데, 이외에도 별도의 가점 및 감점을 설정

한 바 있음. 가점 항목 중의 하나인 타 시·군, 농협, 민간 등과 농기계 공동 이용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평균 12.1% 정도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농이나 여성농에 대한 우대 지원의 경우 평균 21.4%가 존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담당자 및 사업소 인센티브는 담당자 민원수당과 근무평가 가점부여가 각각 2.1%, 3.6%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며, 포상은 31.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비중을 보임.

<표 4-27>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가점(1)의 권역별 평가결과

단위: %

	타 시·군, 농협, 민간 등과 농기계 공동이용 여부	고령농·여성농 우대 지원	담당자 및 사업소 인센티브		
			담당자 민원수당 여부	담당자 및 조직 포상 여부	담당자 근무평가 가점부여
전국	12.1	21.4	2.1	31.4	3.6
경기·강원	21.9	40.6	3.1	46.9	12.5
강원	12.5	56.3	6.3	50.0	6.3
경기	31.3	25.0	0.0	43.8	18.8
충청	11.5	34.6	3.8	34.6	0.0
충북	0.0	36.4	0.0	0.0	0.0
충남	20.0	33.3	6.7	60.0	0.0
영남	7.1	7.1	0.0	16.7	0.0
경북	0.0	4.5	0.0	8.3	0.0
경남	16.7	11.1	0.0	27.8	0.0
호남·제주	10.0	12.5	2.5	32.5	2.5
전북	7.1	14.3	0.0	35.7	7.1
전남	13.6	13.6	4.5	22.7	0.0
제주	0.0	0.0	0.0	75.0	0.0

주 1) 평가결과는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출하였음.

2)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시 또 다른 가점 항목은 발작물 공동경영체 운영 여부인데, 평균 3.6%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교육인의 별도 안전교육 여부는 과반 이상인 평균 56.4%이며, 임대농기계 홍보 실적 및 임대농업인 안전교육 실시 여부는 각각 84.3%, 96.4%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4-28>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가점(2)의 권역별 평가결과

단위: %

	발작물 공동경영체 운영 여부	TV·신문 등 홍보 실적	여성 교육인의 별도 안전교육 여부	임대농업인 안전교육실시 여부
전국	3.6	84.3	56.4	96.4
경기·강원	0.0	81.3	68.8	93.8
강원	0.0	81.3	75.0	100.0
경기	0.0	81.3	62.5	87.5
충청	3.8	80.8	57.7	96.2
충북	9.1	90.9	72.7	90.9
충남	0.0	73.3	46.7	100.0
영남	4.8	85.7	42.9	97.6
경북	4.2	83.3	50.0	95.8
경남	5.6	88.9	33.3	100.0
호남·제주	5.0	87.5	60.0	97.5
전북	0.0	85.7	78.6	100.0
전남	9.1	95.5	50.0	95.5
제주	0.0	50.0	50.0	100.0

주 1) 평가결과는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출하였음.

2)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 가점이 아닌 감점 항목으로는 최근 3년간 임대사업 포기 또는 사업비 이월 여부인데, 전국 평균이 3.6%로 미미한 정도임.

&lt;표 4-29&gt;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 감점의 권역별 평가결과

단위: %

		사업 포기 또는 사업비 이월 여부
전국		3.6
경기·강원		3.1
	강원	6.3
	경기	0.0
충청		0.0
	충북	0.0
	충남	0.0
영남		2.4
	경북	0.0
	경남	5.6
호남·제주		7.7
	전북	7.1
	전남	9.1
	제주	0.0

- 주 1) 평가결과는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출하였음.  
 2) 2016년 실적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기계는 평가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음.  
 3)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전남은 광주광역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이 포함된 수치임.

### 3. 평가결과 종합

-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를 위해 설정된 각각의 평가지표를 측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후, 각 평가지표별 배점에 맞춰 재계산하였음. 재계산된 점수는 140개 시·군 전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적용되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점수가 높은 상위 10개 시·군의 임대사업소만 별도로 선정하였음.

○ 평가지표 이외에 가점 및 감점까지 감안하여 산정한 총점을 살펴보면, 전체 임대사업소 가운데 1위를 한 사업소의 총점은 75.6점이며, 공동 9위는 72.0점으로 1~10위 간 점수 편차는 크지 않음.

- 1위 임대사업소는 감점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조직 확보, 임대실적, 임대료 수준, 여성친화형 농기계 등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분석됨.

<표 4-30>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에 의한 상위 10개 시·군의 각 지표별 점수

시·군	인력 및 조직			사업성과		임대료	발농업 기계화 촉진	
	인력 확보	전문성	조직 확보	임대 실적	이용 농가 수	임대료 수준	발농사용 농기계	여성친화형 농기계
A	9.5	4.7	5.0	13.1	2.5	10.0	3.9	4.4
B	9.2	5.0	5.0	13.3	9.1	2.9	3.4	4.4
C	8.4	4.9	5.0	11.3	8.2	8.0	3.0	3.6
D	8.8	4.9	5.0	6.1	9.4	8.7	3.9	2.0
E	9.0	4.6	5.0	12.1	4.7	8.1	3.9	2.4
F	8.5	4.6	5.0	12.0	8.0	9.4	4.0	1.5
G	8.3	5.0	5.0	11.0	6.3	8.4	3.8	2.9
H	7.4	4.4	5.0	13.9	5.0	9.1	3.5	3.0
I	8.6	4.6	5.0	10.3	8.8	6.0	3.8	2.7
J	8.4	4.7	5.0	10.5	10.0	6.2	4.3	3.4

시·군	사업 지속성 확보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		가점/감점	총점	순위
	정책 적합도	수입과 운영비용	연간 수익	비용 절감효과	사업 지속성	수요자 평가	조직원 평가			
A	3.3	8.1	2.8	3.6	2.0	6.6	1.5	-2.0	75.6	1
B	4.5	5.9	2.9	2.0	2.0	7.0	0.6	3.0	75.5	2
C	2.4	7.2	2.7	3.3	3.0	4.8	1.6	-1.0	74.0	3
D	3.6	7.9	2.8	3.9	2.0	7.4	0.7	-	73.4	4
E	4.2	8.4	2.9	2.7	2.0	7.6	0.5	-1.0	72.9	5
F	3.8	7.0	2.7	4.1	2.0	3.5	1.4	-1.0	72.8	6
G	4.0	6.9	2.3	4.2	2.0	5.4	1.1	-	72.5	7
H	4.6	6.2	2.1	3.4	3.0	6.1	1.9	-2.0	72.2	8
I	3.1	7.3	2.2	3.6	3.0	5.6	1.5	-1.0	72.0	9
J	3.4	5.0	2.5	4.0	3.0	5.5	1.6	-2.0	72.0	9

- 140개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가운데, 상위 10개 사업소를 순위에 상관 없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보면, 남원시, 논산시, 무주군, 안동시, 연천군, 영광군, 예천군, 증평군, 평택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이에 해당함.
  - 권역별로는 경기·강원지역이 연천군과 평택시, 홍천군 등 3개소, 충청지역은 예천군과 논산시, 증평군의 3개소, 영남지역은 안동시 1개소, 호남·제주지역은 남원시와 무주군, 영광군의 3개소임.

<표 4-31>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상위 임대사업소 명단

구분	상위 임대사업소(가나다 순)
평가지표에 따른 집계 결과 및 평가위원회 최종의결에 의거한 평가결과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논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안동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 상위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각 평가지표별 우수 사항을 살펴보면,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경우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 비중, 비용절감효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었으며, 논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정책 적합도와 수요자 평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조직원 평가 등이 우수하며, 안동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전담인력 확보, 임대실적, 여성친화형 농기계 등의 지표에서 강점이 있음.
  -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전담인력 확보, 전문성, 임대실적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경우 이용 농가 수와 발농사용 농기계 구입 비중 등의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예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전담인력 전문성과 비용절감효과 등의 평

가점수가 좋으며, 증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이용 농가 수, 수입과 운영비용, 수요자 평가 등의 평가가 우수함.

-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임대실적과 조직원 평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경우 임대료 수준과 발농사용 농기계 구입 등의 지표가 좋은 평가를 받음.

<표 4-32>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상위 임대사업소의 주요 우수 사항

상위 임대사업소 (가나다순)	평가지표별 대표적인 우수 사항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논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안동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 비중, 비용절감효과 등</li> <li>· 정책 적합도, 수요자 평가 결과 등</li> <li>· 전문성, 조직원 평가 결과 등</li> <li>· 전담인력 확보, 농기계 대당 임대실적,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유 비율 등</li> </ul>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 확보, 전문성, 농기계 대당 임대실적 등</li> <li>·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 비중, 발농사용 농기계 구입 비중 등</li> </ul>
예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비용절감효과 등</li> <li>·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 비중, 총 수입과 운영비용, 수요자 평가 결과 등</li> </ul>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 대당 임대실적, 조직원 평가 결과 등</li> <li>· 임대료 수준, 발농사용 농기계 구입 비중 등</li> </ul>





## 제 5 장

###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평가를 위한 과제

#### 1. 임대사업소 주요 실태분석을 통한 과제

-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이용 용도별 비중은 밭농사용 농기계 비중이 54.4%, 논농사용과 밭농사용 겸용이 17.9%임. 그러나 임대사업의 취지는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향후 밭농사용 농기계를 중심으로 구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하면, 임대사업소는 임대농기계 중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함. 임대사업소 조사결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유 비중이 18.2% 정도(임대사업 평가에서 2016년 실적이 1년이 되지 않은 농기계를 제외할 경우 14.7%)임.
  -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농업인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 농가에서도 여성농업인이 농기계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기계 임대사업소 가운데 72.1%는 임대사업 관련 전담조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전담조직이 팀(계) 이상으로 명시된 비중으로 재산정할 경우 68.6%가 됨. 그러나 전담조직을 팀(계)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임대사업소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사업소는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비중은 42.9%로 과반 이상인 57.1%가 중장기 계획 없이 사업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임대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기계 구입 등에 관한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관련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조직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총 수입 및 운영비용을 측정한 결과, 사업소 당 평균 7억 4,127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임대사업소의 운영비용 가운데 농기계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부 지원인 농기계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적자는 2억 3,299만원임.
  - 임대사업소 입장에서는 농업인의 요청으로 지침으로 책정된 임대료 수준 이하로 농기계를 임대해 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음. 그렇지만 과도하게 낮은 임대료를 부과하면, 사업소 적자가 누적되어 부실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음.
  - 이 때문에 임대사업소의 비용 절감 방안과 함께 농가에게 적정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서에서는 농기계 임대의 경우 여성 및 고령농업인 등에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더욱이 농업부문의 고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농업인의 증가 경향도 앞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정부 정책과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소가 고령 농가 및 여성농가에 대한 우대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사업소 설문조사 과정에서 전담인력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출되었음.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가가 많아 빈번한 입출고 절차는 물론, 잦은 고장으로 수리 업무도 가중되고 있으며, 농번기에는 휴일에도 출근하여 농기계를 임대해 주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타 직종에 비해 큰 편임.
  - 그러나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담직원에게 민원수당이나 포상 등을 부여한 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음.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사기 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담직원의 포상 기회 확대 등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2. 임대사업 평가 과정상의 과제

### 2.1. 농기계 내용연수와 유희 농기계

- 정부 보조로 구입한 농기계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되며, 정한 기간 내 처리 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임대농기계와 작업기의 경우 여러 농가가 집중적으로 활용하다보니 법적 내용연수보다 짧게 사용할 수밖에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만하고 있어 그 자체로 손실이 발생하며, 유희 농기계 문제도 유발하게 됨. 이처럼 불용처리 되지 못함에 따라 임대실적은 저하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임대사업소 평가 시 미사용 농기계로 취급되어 불이익을 받게 됨.

- 임대농기계에 대한 별도의 처리가능 내용연수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연수를 넘는 농기계와 작업기의 사용실적은 추후 임대사업소 평가 시 평가대상 농기계에서 제외하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2.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인지도

- 정부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일정한 기종을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지정하여 사업 시행지침서에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범주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많지 않은 실정임.
  - 여성친화형 농기계이나 여성농업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친화형이 아닌 농기계도 실제 여성농업인이 이용하기도 함. 이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시 여성친화형 농기계 실적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음.
-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종류를 시행지침서나 설명서 등에 보다 자세히 게재할 필요가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 설정 시 판단 기준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3. 수익/비용 산정 및 이용비용 절감 계측

- 임대사업소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해당 평가지표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사업 관련 모든 비용을 가능한 산정하고자 함. 그런데 이때 고정자산 개별에 대한 자산 평가와 비용 추산이 필요하게 되어 기업회계 수준의 원가조사와 결산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2016년 기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는 처음 추진되었기 때문에 비용 항목은

- 큰 목으로 통합(고정설비와 장비의 연 감가상각비, 농기계 연 감가상각비, 인건비, 농기계 수리비, 차량 유지 관리비, 임대사업 수행 운영비)하여 조사 후, 활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임대료 수입과 운송비 등 기타 수입으로 되어 있음.
-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수입과 비용을 더욱 세분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회계 수준까지 정교화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차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시에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히 논의하여 합리적인 평가지표 측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 이용농가 비용절감 계측 시 임대작업면적이 필요한데, 농기계에 따라서는 면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예컨대 콩 정선기, 선별기는 조사 시 지역마다 단위가 다름. A 지역의 단위는 포당이며, B 지역은 kg, C 지역은 시간기준 등 제각각 설정하고 있음.
    - 이 때문에 임대사업소 조사 완료 이후에 단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단위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오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비용절감 계측에 필요한 항목은 가능한 한 농기계별로 전국적으로 통일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특정 농기계(지게차, 굴삭기 등)의 비용절감 계측방법은 일반 농기계와는 달리 적용해야 함. 차년도 평가 시 비용절감의 항목 조정이나 측정방법 세분화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2.4. 밭농업과 논농업 겸용 농기계 및 지역특화 작물 농기계

- 농약살포기와 트랙터 등의 경우 밭과 논에 동시에 사용 가능한 농기계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현재 정부지침에 60마

력 이상 트랙터(이전에는 50마력 이상을 구입 금지), 이앙기, 콤바인 등은 제외 됨. 정부 정책에 따라 해당 기종의 구입을 배제해야 하지만, 경운정지 같은 경우는 발농사용으로도 볼 수 있어 논과 밭 모두 사용한다면, 평가 대상 농기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별 특화농업에 필요한 농기계는 임대 농가 수도 많지 않고, 사용 면적도 크지 않아 임대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음. 이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장려대상인 지역 특화 농기계(혹은 작업기)가 평가에서 저평가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역 특화 농기계인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수요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의해 사용이 미미한 농기계(혹은 작업기)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이들 농기계를 지역 특화 농기계와 구분할 수 있는 지가 과제로 남음.

## 2.5. 우수 임대사업소 사례 처리

-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 시 다양한 형태의 우수 사례가 발견됨. 예컨대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여 농업인들의 자격면허취득을 돕거나 몇 개의 시·군이 연계하여 안전교육·농업인 기술인력과 일자리 연계 등의 프로그램까지 구축한 사업소들이 있음. 또한, 임대료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세륵장 설치, 농기계 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는 등 선도적인 운영 방식을 채택한 사업소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우수 임대사업소 사례는 가점 평가항목의 지표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향후 평가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가점의 평가지표를 조정함으로써 우수 사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평가지표 내 우수 사례 가점 기준은

마련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평가 완료 이후 평가위원들의 현장 실사를 통해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2.6. 평가업무 전산화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조사표는 보유한 농기계별로 임대실적, 임대농가 수, 임대면적, 임대료 등 상당히 많은 분량의 데이터를 확인 후 작성해야 함. 이로 인해 입력 과정에서 데이터가 누락될 수도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소 전담인력의 불만 요인이 되기도 함.
-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소가 기 입력한 임대농기계 자료들을 끌어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개발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임대사업소마다 사용하는 전산 관리 프로그램이 달라 단기간 내 호환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 따라서 향후에는 평가 시 사업소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평가용 전산 프로그램 간 호환이 이루어져 기 입력된 자료를 평가에 그대로 연동시킴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고, 조사 시간 단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제 6 장

### 요약 및 결론

- 정부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여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기계화가 미흡한 밭작물의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더욱이 2017년부터 지자체별 임대사업소 평가를 기초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 그러나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현 단계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실질적인 운영 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차등 지원에 대한 정책 의지에 대응하고자 수행하게 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합리적인 상세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전국 임대사업소의 사업평가 순위를 확정하도록 함. 또한,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는 수요자(농가 및 단체)의 만족도와 니즈 파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와 같은 목적에 의거하여 수행된 본 연구과제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개요와 지원 실적

- 정부는 기계화가 미흡한 밭농사 등의 저비용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가나 생산자 조직 등이 농업기계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여 농작업을 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음.
- 농기계 임대사업은 무엇보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은 물론, 구조적으로 농작업 기계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밭농사 등의 농작업 기계화 촉진이 가능해 짐으로써 경영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농기계 업체는 그동안 수요가 없어 공급하지 못했던 농기계의 수요가 창출됨으로써 농업기계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농기계 임대사업은 2014년까지 총 3,079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2017년에는 540억 원, 2018년 이후에는 620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음. 농기계 임대사업의 정부 지원은 2015년까지 전액 밭농사용 임대사업에만 투입되었음.
  -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은 2016년부터 책정되었으며, 매년 60억 원이 투입되어 전체 예산의 10~1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함.
  -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비도 2016년부터 책정되어 2017년까지 매년 40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2018년 이후는 60억 원으로 상향되어 집행될 예정임.
  -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비는 2016년까지 없었으나, 2017년에 20억 원, 2018년 이후는 매년 100억 원이 책정되어 있음.

##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 설정 및 평가 개요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의 조사대상 사업소는 정부의 지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전국 140개 시·군의 41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함.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조사대상 농기계는 전국 140개 시·군의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본체는 물론, 부속기를 포함한 일체임.

- 평가 시점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임대사업소 운영 및 임대실적 등으로 하되,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기계(부속기 포함)의 경우 평가 대상 농기계에서 제외함.
  -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외에 임대농업인은 총 3,577명, 임대사업소 전담인력 1,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지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하에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초안을 마련하였음. 작성된 평가기준 초안은 본 과제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각 지표별 상세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이를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위원회의 논의 및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 수정안이 마련되었음.
- 수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논의한 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가 확정되었음.
  - 평가항목의 지표 수정, 각 지표별 배점을 조정하는 등의 과정을 완료하여 최종적으로는 평가항목 6개 및 평가지표 15개를 확정하였으며, 각 지표별로 상세 평가지표도 결정하게 되었음.
- 확정된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각 지표별 수치 도출이 가능하도록 조사표를 작성하였음. 설문조사표는 안내문(인사말), 임대사업소 일반 현황, 사업소 농기계 보유 현황, 사업소 전담인력 현황, 조직 확보 현황, 사업소 수입 및 비용, 사업의 지속성, 기타 현황 등 크게 8개로 구분하였음.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용 조사표는 작성해야 할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많은 평가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방문조사를 통해 조사표 회수를 담당하는 조사원과 거취 조사 시에 직접 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소 전담인력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용 조사표 작성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

하여 배포하였음.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과제를 수행하고자 연구팀을 구성하였음. 평가사업 총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담당하며, KREI의 관리 하에 평가 사업 조사 대행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각 권역별로 선정하였음.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임대사업 의의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 도모는 물론, 평가지표 관련 데이터를 정확히 입력하여 오차·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사전 설명회를 권역별로 나눠 3차례 개최하였음.
-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임대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음.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등 20인으로 구성하였으며, 4차례 회의가 개최되었음.
-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 관련 정보를 사업소 전담인력들과 공유하고, 평가 결과 공지 및 이후 추진되는 컨설팅 일정 등을 설명하고자 각각 1박 2일씩 2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실시하였음.

#### ■ 농기계 임대사업소 실태와 평가지표 분석결과

- 전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체를 조사한 결과, 지소(분소)를 보유한 임대사업소는 64.3%로 2/3 정도는 지소(분소)를 가지고 있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비중은 평균 94.3%로 대부분임.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77.9%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훈련 비중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임.
-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5만 7,555대

- 이며, 임대사업소(시·군 기준) 당 평균 41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농기계 이용 용도별로는 밭농사용이 전체의 54.4%인 3만 1,288대를 보유하고 있음.
-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가운데,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보유 비중은 18.2%로 높지 않은 편임.
-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의 해당 임대일수는 임대일수가 0인 농기계를 모두 포함하여 평균 10.9일임. 이용 용도별로는 밭농사용 농기계의 경우 임대일수가 평균 10.4일, 논농사와 밭농사 겸용 농기계는 11.9일로 조사됨.
-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한 농가 수는 해당 평균 8.6농가이며, 이중 밭농사용은 평균 8.4농가임.
  -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임대기간은 단기임대 형태가 전체의 99.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장기임대는 0.2%에 불과함.
-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전국적으로 총 1,357명이며, 임대사업소 당 전담인력은 시·군 기준으로 9.7명임.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905명으로 66.7%이며, 계약직은 33.3%인 452명으로 나타남.
-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전담인력의 전문인력 비율은 평균 69.3%로써 전문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전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가운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비중은 72.1%로 높은 편이나, 여전히 전담조직 없이 운영되는 사업소도 27.9%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농기계 임대사업소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소는 평균 95.0%의 비중으로 대부분이며, 이중 위원회에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농기계 구입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소의 비중은 89.5%임.

- 심의위원 가운데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가 각 1인 이상이 포함된 경우는 평균 93.2%로 대부분임.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수익 구조를 분석해 보면, 사업소의 총 수입은 9,781만원인 반면, 총 지출액은 8억 3,908만원으로 7억 4,127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사업 지속성 관련 항목 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증장기 추진 계획 수립 여부를 살펴보면, 사업소의 42.9%는 수립하고 있는 반면, 과반 이상인 57.1%는 증장기 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임대사업소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가 있는 비중은 99.3%로 거의 대부분 관련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비중은 3.6%로 극히 미미한 수준임.
  - 고령농가나 여성농가에 대해 우대지원이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전체의 21.4% 정도이며, 농기계를 공동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중은 12.1%로 분석됨.
- 농기계 임대사업소 담당자가 민원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업소는 전체의 2.1%, 근무평가에서 가점을 부여 받은 전담인력 비중도 3.6%에 불과한 실정임. 다만, 임대사업소 담당자 및 조직이 포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중은 31.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편임.
- 시·군·구에서 발작물 공동경영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비중은 3.6%로 극히 일부에 그침. 또한, 최근 3년간 농기계 임대사업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는 사업소 비중은 3.6%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지표 분석결과, 최소인력 대비 정규직 보유인력 비율

- 은 평균 56.9%이며, 보유인력 대비 전문인력 비율은 69.3%, 전문인력 질적 평가 지표의 경우 평균 87.3%임.
- 평가지표인 조직확보에서 사업소가 팀(계) 이상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비중은 평균 68.6%이며, 임대실적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로 측정되는데,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는 평균 12.6일임. 평가지표 이용 농가 수는 평균 48.2%로 거의 과반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항목인 임대료는 표준 단기 임대료 이행률이 평균 43.6%로 나타나 표준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음.
  - 발농사용 농기계 비율은 평균 61.0%, 파종·이식·수확기 기종 구성 비율은 20.5%이며, 발농사용 농기계 대당 이용실적은 평균 12.4일,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성 비율은 14.7% 정도임.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항목인 사업 지속성 확보의 평가지표 임대 농기계 정책적합 이행률은 평균이 61.7%이며, 총 수입과 운영비용의 적정 수입 창출 달성률은 66.6% 정도임. 최소비용 달성률은 평균 179.3%에 달하며, 연간 수익률은 -1,221.9%이나 됨.
    - 매출원가 비율은 평균 1,321.2%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1인당 수익의 경우 9,868만원 내외 적자인 것으로 조사됨.
    - 이용 농가 비용절감효과 중에서 이용 농가 비용절감 규모는 평균 농가당 2억 9,739만원이며, 실효적 농사비용 절감 비율은 46.0%로 산정됨.
  -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항목인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는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임대사업소 조직원 자체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측정함. 만족도 조사결과,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1점이며, 조직원 자체 평가결과는 18점 만점에 평균 11.4점임.

-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를 위해 설정된 각각의 평가지표를 측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후, 각 평가지표별 배점에 맞춰 재계산하였음. 재계산된 점수는 140개 시·군 전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적용되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점수가 높은 상위 10개 시·군의 임대사업소만 별도로 선정하였음.
  - 선정결과, 상위 10개 사업소(가나다 순)는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논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안동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임.

#### ▣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평가를 위한 과제

- 농기계 임대사업소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된 과제로는 첫째, 발농사용 농기계 비중이 54.4% 정도이므로 향후 발농사용 농기계 구입을 하여 발농업 기계화 촉진을 도모해야 함.
  - 둘째, 여성농업인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 농가에서도 여성농업인이 농기계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임대사업소의 20% 이상은 전담조직 없으며, 과반 이상인 57.1%가 중장기 계획 없이 사업소를 운영 중이므로 향후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조직화 및 중장기 플랜 마련으로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넷째, 사업소 당 평균 7억 4,127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 부실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용 절감 방안과 함께 농가에게 적정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임대사업소는 농업부문의 고령화 심화와 여성농업인 증가 경향을 감안하여 고령 농가 및 여성농가에 대한 우대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여섯째,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사기 진작이 무



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담직원의 포상 기회 확대 등 동기 부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농기계 임대사업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음. 첫째, 임대농기계(작업기 포함)는 여러 농가가 집중적으로 활용하다보니 법적 내용연수보다 짧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 유희 농기계 문제가 유발됨. 이 때문에 임대농기계에 대한 별도의 처리가능 내용연수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연수를 넘는 농기계의 사용실적은 평가 시 제외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함.
  - 둘째, 여성친화형 농기계에 대해 현장에서는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여성친화형 농기계 이외의 농기계도 실제 여성농업인이 이용함. 따라서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종류를 상세화하여 현장에 인지도시킬 필요가 있으며, 평가지표 설정 시 판단 기준을 단순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
  - 셋째, 임대사업소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해당 평가지표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사업 관련 모든 비용을 가능한 산정하고자 함. 그러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수입과 비용을 더욱 세분화하는 것은 어려움. 차년도 평가 시 보다 합리적인 측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비용절감 계측에 필요한 항목은 가능한 한 농기계별로 전국적으로 통일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특정 농기계(지게차, 굴삭기 등)의 비용절감 계측방법은 일반 농기계와는 달리 적용해야 함.
  - 다섯째, 밭과 논에 동시에 사용 가능한 농기계 중에서 경운정지 같은 경우는 밭농사용으로도 볼 수 있어 평가 대상 농기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지역 특화 농기계(혹은 작업기)가 평가에서 저평가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평가지표 이외의 다양한 우수 사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가점 기준을 마련하거나 평가 완료 이후 평가위원들의 현장 실사를 통해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 일곱째,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위한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시간적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소가 사용하는 프로그

램과 평가용 전산 프로그램 간 호환이 이루어져 기 입력된 자료를 평가에 그대로 연동시킬 수 있는 전산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 강정일 외. 1988. 「농업자재시장의 구조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강창용 외. 2003.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강창용 외. 2005.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 방향과 농기계 산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강창용 외. 2012.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운영기관 일원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복 외. 2015. 「2015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6. 「2015년 농협경제사업 평가지표 개선 및 성과평가」.
- 마상진·김수석·김인혜. 2014. 「농어업회의소 교육 컨설팅사업 진단 및 성과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이규승 외. 2016. 「밭작물 경영규모별 농기계 이용형태 및 경영비 상관분석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조성주·박평식·김사균. 1999. 「벼농사용 주요 농기계의 교체시기 분석」. 농촌진흥청.



## 부록 1

---

「2016년 기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조사 지침서

2016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조사 지침서

2017. 6.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I

##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시점 및 실시기간
3. 조사주기
4. 조사대상 및 규모
5. 조사내용
6. 조사방법

## I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임대사업 추진 방안 도출

### 2. 조사시점 및 실시기간

- 기준시점 : 2016. 12. 31.
- 대상기간 : 2016. 1. 1. ~ 12. 31.(1년간)
- 실시기간 : 2017. 6. 5. ~ 6. 16.

### 3. 조사주기 : 매년

### 4. 조사대상 및 규모

- 조사대상 :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전국 139개 시·군의 임대사업소(전수)
- 조사규모 : 410개소

권역	시·군 수	임대사업소 수	비고
경기·강원	32	94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포함
충청	26	79	세종시 포함
호남·제주	40	121	광주광역시 포함
영남	42	116	부산, 대구, 울산 포함
계	140	410	

### 5. 조사내용

- 임대사업소 인력 및 조직, 사업성과, 임대료, 발농업 기계화 촉진, 사업지속성 확보, 수요자 및 조직원 평가 등

### 6. 조사방법

- 면접조사 원칙
  - 조사원이 대상 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 필요시 전화 및 자기기입식 e-mail, fax 등 활용 가능



## II

### 조사표 작성요령

1. 작성 시 유의사항
2.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 조사대상기간(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간의 실적을 조사한다.
- 수량 및 금액은 1, 2, 3, ...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해당란에 바르게 기입하며,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한다.
- 숫자는 조사표에 있는 단위에 맞도록 기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단위를 확인하여 지정된 단위에 맞게 기입한다.
- 상호 연관 항목의 내용도 재검토 후 반드시 일치되도록 한다.
- 해당 사항이 없는 조사항목은 빈칸(공란) 처리한다.
- 응답항목 중 '기타'에 표시된 것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 2. 조사항목별 작성 요령

### 2.1. 표지(인사말씀) 사항

- 조사표 일련번호(조사원이 기입합니다.)
  - 광역시·도, 시·군의 번호는 아래의 코드 부여 표를 확인하여 각각의 코드 번호를 기입한다.
  - 임대사업소 번호는 조사대상 임대사업소의 일련번호를 001부터 연속으로 부여하여 기입한다.

광역시·도 코드	시·군 코드	임대사업소 순번

## 2.1.1. 시·도별 코드 부여(17개소)

광역시·도별		코드	비고
특별시	서울	01	
광역시	부산	02	
	대구	03	
	인천	04	
	광주	05	
	대전	06	
	울산	07	
특별자치시	세종	08	
도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특별자치도	제주	17	

## 2.2.2. 시·군 코드 부여(16개소)

광역시·도	시·군	코드	비고
서울(01)		00	0100
부산(02)		00	0200
대구(03)	기장군	01	0201
		00	0300
인천(04)	달성군	01	0301
		00	0400
	강화군	01	0401
광주(05)	옹진군	02	0402
		00	0500
대전(06)		00	0600
울산(07)		00	0700
	울주군	01	0701
세종(08)		00	0800
제주(17)		00	1700
	제주시	01	1701
	서귀포시	02	1702

## 2.2.3. 도·시·군 코드 부여

## 1) 경기도(28시, 3군)

도	시·군	코드	비고
경기도(09)	수원시	01	0901
	성남시	02	0902
	의정부시	03	0903
	안양시	04	0904
	부천시	05	0905
	광명시	06	0906
	평택시	07	0907
	동두천시	08	0908
	안산시	09	0909
	고양시	10	0910
	과천시	11	0911
	구리시	12	0912
	남양주시	13	0913
	오산시	14	0914
	시흥시	15	0915
	군포시	16	0916
	의왕시	17	0917
	하남시	18	0918
	용인시	19	0919
	파주시	20	0920
	이천시	21	0921
	안성시	22	0922
	김포시	23	0923
	화성시	24	0924
	광주시	25	0925
	양주시	26	0926
	포천시	27	0927
	여주시	28	0928
	연천군	29	0929
	가평군	30	0930
	양평군	31	0931

## 2) 강원도(7시, 11군)

도	시·군	코드	비고
강원도(10)	춘천시	01	1001
	원주시	02	1002
	강릉시	03	1003
	동해시	04	1004
	태백시	05	1005
	속초시	06	1006
	삼척시	07	1007
	홍천군	08	1008
	횡성군	09	1009
	영월군	10	1010
	평창군	11	1011
	정선군	12	1012
	철원군	13	1013
	화천군	14	1014
	양구군	15	1015
	인제군	16	1016
	고성군	17	1017
	양양군	18	1018

## 3) 충청북도(3시, 8군)

도	시·군	코드	비고
충청북도(11)	청주시	01	1101
	충주시	02	1102
	제천시	03	1103
	보은군	04	1104
	옥천군	05	1105
	영동군	06	1106
	증평군	07	1107
	진천군	08	1108
	괴산군	09	1109
	음성군	10	1110
	단양군	11	1111

## 4) 충청남도(8시, 7군)

도	시·군	코드	비고
충청남도(12)	천안시	01	1201
	공주시	02	1202
	보령시	03	1203
	아산시	04	1204
	서산시	05	1205
	논산시	06	1206
	계룡시	07	1207
	당진시	08	1208
	금산시	09	1209
	부여군	10	1210
	서천군	11	1211
	청양군	12	1212
	홍성군	13	1213
	예산군	14	1214
	태안군	15	1215

## 5) 전라북도(6시, 8군)

도	시·군	코드	비고
전라북도(13)	전주시	01	1301
	군산시	02	1302
	익산시	03	1303
	정읍시	04	1304
	남원시	05	1305
	김제시	06	1306
	완주군	07	1307
	진안군	08	1308
	무주군	09	1309
	장수군	10	1310
	임실군	11	1311
	순창군	12	1312
	고창군	13	1313
	부안군	14	1314

## 6) 전라남도(5시, 17군)

도	시·군	코드	비고
전라남도(14)	목포시	01	1401
	여수시	02	1402
	순천시	03	1403
	나주시	04	1404
	광양군	05	1405
	담양군	06	1406
	곡성군	07	1407
	구례군	08	1408
	고흥군	09	1409
	보성군	10	1410
	화순군	11	1411
	장흥군	12	1412
	강진군	13	1413
	해남군	14	1414
	영암군	15	1415
	무안군	16	1416
	함평군	17	1417
	영광군	18	1418
	장성군	19	1419
	완도군	20	1420
	진도군	21	1421
	신안군	22	1422

## 7) 경상북도(10시, 13군)

도	시·군	코드	비고
경상북도(15)	포항시	01	1501
	경주시	02	1502
	김천시	03	1503
	안동시	04	1504
	구미시	05	1505
	영주시	06	1506
	영천시	07	1507
	상주시	08	1508
	문경시	09	1509
	경산시	10	1510
	군위군	11	1511
	의성군	12	1512
	청송군	13	1513
	영양군	14	1514
	영덕군	15	1515
	청도군	16	1516
	고령군	17	1517
	성주군	18	1518
	칠곡군	19	1519
	예천군	20	1520
	봉화군	21	1521
	울진군	22	1522
	울릉군	23	1523

## 8) 경상남도(8시, 10군)

도	시·군	코드	비고
경상남도(16)	창원시	01	1601
	진주시	02	1602
	통영시	03	1603
	사천시	04	1604
	김해시	05	1605
	밀양시	06	1606
	거제시	07	1607
	양산시	08	1608
	의령군	09	1609
	함안군	10	1610
	창녕군	11	1611
	고성군	12	1612
	남해군	13	1613
	하동군	14	1614
	산청군	15	1615
	함양군	16	1616
	거창군	17	1617
	합천군	18	1618

※ 조사입력시스템(<http://www.amrbe.kr>) 활용 시 ID는 위 광역시·도 및 시·군 코드번호를 활용한다.

○ ID : 광역시·도 및 시·군 코드번호 + 0

- 예: 경남 창원시 소재 임대사업소의 ID는 1601+0, 즉 16010

○ 비밀번호 : ID번호 + 123

- 예: 경남 창원시 소재 임대사업소의 비밀번호는 1601+0+123, 즉 16010123



## 2.2. 농기계임대사업소 일반 현황

- 모든 항목은 2016. 1. 1. ~ 12.31.까지의 1년간의 실적을 조사한다.
- 2-1) 사업소 개설연도는 숫자로 기입하고 뒤에 년 혹은 연도(예: 2005년)를 붙이지 않는다.
  - 2-2) 개설연도가 2016년으로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소이면 1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빈칸(공란)으로 둔다.
- 3) 지소(분소) 보유 여부에서 없음(2번)을 선택하였으면, 3-1)은 기입하지 않고 빈칸(공란)으로 둔다.
- 4) 농기계 교육훈련 여부에서 하고 있지 않음(2번)을 선택하였으면, 4-1) 및 4-2)는 기입하지 않고 빈칸(공란)으로 둔다.
  - 4-1) 교육시간 및 4-2) 참가자 수에서 지소(분소)가 있는 경우 본소와 지소(분소) 실적을 합한 수치로 기입한다.
  - 참가자 수는 농기계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훈련에 참가했던 전체 인원수를 남/녀 성별로 구분하여 적는다(농기계 임대를 하지 않는 농가도 교육훈련에 참가하였다면 인원수에 포함시킨다).
- 5) 농기계 순회수리 여부에서 하고 있지 않음(2번)을 선택하였으면, 5-1)은 기입하지 않고 빈칸(공란)으로 둔다.
  - 5-1) 총 회수에서 지소(분소)가 있는 경우 본소와 지소(분소) 실적을 합한 수치로 기입한다.
- 6) 임대사업소 시설별 면적의 단위는 m<sup>2</sup>인데, 면적을 m<sup>2</sup>가 아닌 평으로 알고 있는 경우 평에 3.306을 곱하여 기입한다. (예시: 200평×3.306=661.2m<sup>2</sup>)
  - 지소(분소)가 있는 경우 시설별 면적은 본소와 지소(분소)를 합한 수치로 기입한다.
  - 사업소에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숫자 0을 적는다.
  - 6-6) 기타 면적을 기입한 경우 6-6-1)에 기타의 시설명을 적는다.
- 7) 임대사업소 고정설비 및 장비 조달 비용은 현재 사업소에 갖춰져 있는 설비와 장비를 만약 작년(2016년)에 설치했다라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

되었을 지를 추정하여 천원 단위로 작성한다.

- 지소(분소)가 있는 경우 설비 및 장비 금액은 본소와 지소(분소)를 합한 수치로 기입한다.
- 사업소에 없는 설비 및 장비의 경우에는 빈칸(공란)으로 둔다.
- 7-2) 농기계 보관창고 내 시설과 장비는 보관창고 내에 있는 지게차, 운반차 등 운반장비와 고정설비(호이스트, 선반 등)를 말한다.
- 7-4) 농기계 수리실 내 시설과 장비는 부품보관 선반과 각종 박스, 용접기, 그라인더 등 수리장비 일체를 말한다.
- 7-7) 일반창고는 농기계나 부품관련 이외의 물품과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
- 7-9) 농기계 세척실 내 시설과 장비는 농기계 세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 7-10) 기타 비용을 기입한 경우 7-10-1)에 기타의 설비 및 장비명을 적는다.
- 관내 지역 통계 데이터 가운데, 16-1) 논 면적 중 밭작물 이용면적의 경우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였다면 그 면적을 기입한다.
  - 예컨대 논에서 수도작을 한 뒤 이모작으로 감자를 재배했다면, 감자 재배면적을 논 면적 중 밭작물 이용면적으로 한다.
- 17) 주요 밭작물 재배 작목 및 비중은 관내에서 재배되는 밭작물 가운데 면적 기준으로 비중이 가장 큰 5개 작목명을 각각 17-1) ~ 17-5)에 적고, 그 비중도 기입한다.

### 2.3.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보유 농기계 현황

- 구입 시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2016. 1. 1. ~ 12.31.까지의 1년간의 실적을 조사한다.
- 이 문항은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하나하나별로 기입해야 하며, 해당

- 사항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빈칸 없이 반드시 해당란에 모두 기입해야 한다. 단, 조사대상기간인 2016년도에 폐기한 농기계는 기입하지 않는다.
- 18) 관리번호는 해당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운영·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여하여 사용 중인 일련번호 등을 그대로 적도록 한다.
  - 19) 농기계 기종에서 19-1) 기종명은 임대사업소에서 분류를 위해 자체적으로 명명한 이름이 아닌 정식적인 표준 통용명칭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이 혼용되는 경우 가능한 한 국문 명칭으로 적는다.
    - 19-2) 규격에서 기종별로 규격이 없는 경우 기재를 생략해도 된다.
  - 21) 농작업 용도에서 트랙터, 경운기, 포크레인, 굴삭기, 트럭, 로더, 지게차 등의 경우는 기타로 분류한다.
  - 22)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아래의 농기계에 해당 될 경우 1을 기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2를 적는다.
  - 23) 구입시기는 숫자로 기입하고 뒤에 년 혹은 연도(예: 2005년)를 붙이지 않는다.
  - 24) 구입시기가 2016년으로 조사대상기간인 2016년 1년간 실적이 되지 않는 경우이면 1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빈칸(공란)으로 둔다.
  - 26) 농기계 구입가격에서 26-3) 기타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임대사업소 자체수입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중앙정부는 국가(국비)를 의미하며, 지자체에는 광역시·도나 시·군이 모두 해당된다.
    - 26-3) 기타 금액을 기입한 경우 26-3-1)에 재원조달 방법을 기재한다.
    - 구입가격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숫자 0을 기입한다.
  - 27) 내용연수는 27-1) 법정연수와 27-2) 자체판단연수를 각각 작성하되, 법정연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자체판단연수만 기입한다.
  - 28) 임대에서 트랙터의 경우 트랙터 본체만 임대해 주었으면 임대일수를, 트랙터 본체 및 부속기를 같이 임대해 주었거나 부속기만 임대해 주었다면 임대일수와 임대작업면적을 모두 기록한다. 경운기나 관리기 등 원동기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적는다.

## &lt;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편이장비 &gt;

	개발 농업기계명	특성	제조회사
2010	하이브리드식 농수산물건조기	농수산물을 히트펌프 열을 이용해 건조	길빙 등
	반건시 제조장치	감을 균일한 품질로 빠른 기간에 반건시로 제조	태인기업 등
	바퀴부착 직립형목초가위	밀고 다니면서 목초 절단	
	레일이동형 작업의자	레일 위에서 밀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의자	
	헤어리베치 종자선별장치	헤어리베치 종자 선별	
2011	발작물 중경제초기	발작물의 제초작업	
	견과류 수확물 조핍장치	견과류 과실을 간편하게 수확할 수 있는 포집장치	아강 등
	논농사용 제초기	논에서 조간, 주간의 제초	
	슬립 조인트형 3륜 손수레	방향전환 가능한 뒷바퀴를 갖는 3륜 손수레	대경정공
2012	분화류 이식시스템	프러그묘를 자동으로 이식하는 장치	죽암기계 등
	반자동 인삼정식기	묘삼을 공급하면 골을 파고 심는 장치	삼생공업
	시설원예 원격 환경제어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온실환경 자동제어	남경 등
	속옷일체형 서열작업복	자외선 차단, 쾌적성 등 기능성 소재 작업복	
	외기 및 토양환경측정장치	외기환경과 토양환경을 동시에 측정	
2013	참깨 예취기	참깨를 예취하여 배출	한서정공
	손잡이 회전가위	손 등 쪽으로 돌려 착용 가능한 절단 가위	
	재귀반사 기능 작업복	냉감 및 흡한속건 기능 농작업	
	재귀반사 기능 방제복	경량소재, 땀 배출 용이	대경정공
	보행지지겸용 운반수레	보행지지 및 농작물 운반 겸용	대경정공
	고추 수확운반차	수확한 고추를 수집 및 운반	신화정공 등
2014	잡곡 파종기	조, 수수 등 씨앗을 심는 기계	신진기계 등
	꽃감 중량 선별기	꽃감을 무게별로 선별하는 기계	
	송풍기능 농약 방제복	바람이 잘 통하는 농약 방제복	
	발누름판 부착 삽	땅을 쉽게 팔수 있도록 발누름판을 부착하는 삽	
	농작업화	편하게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한 농작업화	
그 외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60마력 미만),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자료: 농촌진흥청.

- 28-1-1) 임대일수에서 임대해준 실적이 없을 경우 임대일수에 숫자 0을 기입한다.
  - 28-1-2) 임대작업면적은 해당 농기계를 임대한 농가들이 작업한 임대작업면적의 합계를 적는다.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추정된 면적이라도 기입하도록 한다.
  - 28-1-3) 1일 작업 가능면적은 해당 농기계가 1일(8시간 기준)에 어느 정도의 면적에서 작업이 가능한지를 적는다. 해당 농기계의 판매회사에서 산정한 작업 가능면적이 있더라도 임대사업소의 관내 농작업 환경을 고려한 가능면적을 추산하여 작성한다. 예컨대 A 농기계의 작업 가능면적은 제조회사에서 1일 1,000㎡로 산정하고 있지만, B 지역의 농작업 여건상 1일 500㎡만 실제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500을 적는다. 만약 해당 농기계의 작업 가능면적을 ㎡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수치와 함께 단위를 같이 표기 한다(예를 들어 B 농기계의 1일 작업 가능면적이 8톤인 경우 단위인 톤을 같이 표기하여 ‘8톤’이라고 적는다).
  - 28-2-1) 일 기준 임대료는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준 농기계의 순수한 임대료만을 의미하며, 농기계의 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유공자나 고령인은 임대사업소에서 책정된 금액보다 할인해 준다고 해도 할인금액이 아니라 당초 사업소에서 책정한 일일 임대료를 기입한다.
  - 28-2-2) 면적기준 임대료는 28-2-1) 1일 임대료를 28-1-3) 표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28-2-2)는 임대사업소에서 적지 않고 조사원이 추후 계산하여 기입한다.
- ※ 면적의 단위는 ㎡인데, 면적을 ㎡가 아닌 평으로 알고 있는 경우 평에 3.306을 곱하여 기입한다. (예: 200평×3.306=661.2㎡)
- 28-3) 임대기간에서 장기임대는 농가가 1년 이상 임대한 농기계를 의미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단기임대로 간주한다.
  - 28-3-1) 장기임대의 실사용 일수는 28-3)에서 장기임대(2번)를 선택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빈칸(공란)으로 둔다. 장기임대 기간이 1년이더라도 실제 해당 농기계는 통상 연간 며칠 정도 사용하는 것인

지 실사용 일수를 기입한다.

- 28-4) 이용농가수는 해당 농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의 성별을 구분하여 적는다. 28-1-1) 임대일수를 기입하였다면 반드시 이용농가수를 적어야 한다. 만약, 임대해준 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이용농가수 남녀에는 각각 숫자 0을 기입한다.
- 28-5) 안전교육 여부는 해당 농기계를 임대한 농업인 가운데 안전교육을 받은 농업인 수를 성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해당되는 농업인이 없을 경우 숫자 0을 기입한다.

#### 2.4.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담인력 현황

- 모든 항목은 2016. 1. 1. ~ 12.31.까지의 1년간의 실적을 조사한다.
- 30) 직원번호는 해당직원에 대한 누락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며, 임대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번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기입한다.
- 33) 고용형태에서 정규직은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정규 직원으로서 통상 상용근로자를 의미한다.
  - 계약직은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 35) 계약직의 근무일수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했던 일수를 기입한다.
  - 예를 들어 A라는 인력을 2016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시직으로 고용하였다면 근무일수에 214일(법정 휴일 포함)을 적는다.
  - B라는 인력은 일용직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용하였다면 근무일수에 63일(일용직이므로 법정 휴일 제외)을 기입한다.
- 36) 담당업무는 임대사업소 전담인력의 주 업무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 예를 들어 C라는 정규직 인력이 농기계 수리 및 관리 업무 이외에 임대 사업 관리도 담당하지만, 농기계 수리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이 투입된다면, 농기계 수리 및 관리에 해당하는 2를 적는다.
  - 37-2) 담당업무 중 임대사업 투입비율은 해당 전담인력이 임대사업 이외에 타 업무도 수행한다면, 총 업무 중에서 임대사업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노동시간 기준)을 기입한다.
    - 예컨대 기술센터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대사업소 업무도 겸임하고 있는데,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임대사업소 업무에 60% 정도 투입한다면 37-2)에 60을, 타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임대사업소 업무만 수행한다면 100을 기입한다.
  - 38) 전문인력 여부의 경우 전담인력별로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1을 적고, 해당되지 않으면 빈칸(공란)으로 처리한다.
    - 예를 들어 D라는 전담인력이 5년 이상의 농기계 분야 경력자일 뿐만 아니라 농기계학과 졸업자이자 농기계 자격증 소지자라면 5년 이상 경력자, 농기계학과 졸업, 농기계 자격증 소지자 란에 1을 기입한다.
    - 단, 전문교육 이수자는 농기계 관련 실습을 포함하여 전문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말한다.
- <예시>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 인력이 본소에 정규직 3명이 있으며, 지소(분소)에 정규직 1명과 임시직 1명이 있다면, 조사표에는 이들 5명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모두 작성한다.

사원번호	성별 (남: 1, 여: 2)	근무지 (본소: 1, 지소(분소): 2)	고용형태 (정규직: 1, 계약직: 2)	정규직의 경우 근무연수 (년)	계약직의 경우 원간근무 일수(일)	담당업무 (임대사업소 관리: 1, 농기계수리 및 관리: 2, 사무: 3, 기타: 4)	인건비		전문 인력 여부(제시된 항목에 해당될 경우: 1)						
							인건비 금액(천원)	담당업무 중 임대사업 투입비율 (%)	전문경력관	5년이상 경력자	무기계학적 공무원	임기계 공무원	농기계학과 졸업자	농기계 자격증 소지자	전문교육 이수자
2001-12A	1	1	1	15		1	50,000	100		1		1	1	1	
2005-05E	1	1	1	10		2	40,000	100		1			1	1	
2007-01C	1	1	1	7		2	35,000	80		1					1
2015-11Z	2	2	1	2		3	25,000	50	1					1	1
2016AAR	2	2	2		214	2	18,000	100							1

※ 기본적으로는 전담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서류 사본,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자의 직급, 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훈련 이수 실적(교육이수증

등), 해당분야 경력사항(이력사항) 등 근거 자료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로서 근거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작성한 전담인력에 대한 고용이나 이력사항 등을 방문 조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 근거 서류의 제출 혹은 방문 조사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근거 서류 제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란에 기입해서는 아니 된다.

## 2.5. 농기계임대사업소 조직 확보 현황

- 모든 항목은 2016. 1. 1. ~ 12.31.까지의 1년간의 실적을 조사한다.
- 40-3) 농기계 임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시 위원회 위원 중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각 1인 이상 포함 여부에서 여성농업인 1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1인 등 최소한 2명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어야 1을 적으며, 그 이외에는 2를 기입한다.
  - 예컨대 만약, 위원 중 여성농업인은 1인 포함되어 있으나, 여성농업인 단체 1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를 적어야 한다.
- ※ 농기계 임대 관련 전담조직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농기계 임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활동 기록(농기계 수요 조사, 민원 처리 이력 등), 위원회 구성원 정보(소속, 분야 등) 등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2.6. 농기계임대사업소 수입 및 비용

- 모든 항목은 2016. 1. 1. ~ 12.31.까지의 1년간의 실적을 조사한다.



- 41) 총 수입은 41-1) 임대료 수입, 41-2) 운송비 등 기타 수입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숫자 0을 적는다.
- 42) 총 지출의 경우 42-4) 농기계 수리비, 42-5) 차량 유지 관리비, 42-6) 임대사업 수행 운영비만 기입한다.
  - 42-1), 42-2), 42-3)은 앞에서 조사된 결과를 활용하여 본 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후 별도로 산정한다.
  - 42-4) 농기계 수리비는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부품 등 일체의 모든 수리비용을 말한다.
  - 42-5) 차량 유지 관리비는 임대사업소가 운용하고 있는 차량의 유지 관리비를 말한다.
  - 42-6) 임대사업 수행 운영비는 감가상각비, 농기계 수리비, 차량 유지 관리비,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타 모든 비용을 말한다.
- 43)~56) 파종, 이식, 수확, 탈곡, 정선, 결속, 박피의 해당 지역 대표 두 작목을 기준으로 작성
  - 예를 들면 파종의 경우 고구마와 배추의 경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 매출원가 자료와 결산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 2.7. 농기계임대사업의 지속성

- 모든 항목은 2016. 1. 1. ~ 12.31.까지의 1년간의 실적을 조사한다.
- 59-2) 기금 금액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의 금액을 기입한다.

※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조례가 있는 경우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2.8. 기타 현황

- 65)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2016. 1. 1. ~ 12.31.까지의 1년간의 실적을 조사한다.
- 66-1), 66-2), 66-3)은 앞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사업소가 아닌 조사원이 추후 계산하여 기입한다.

※ 각 문항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부록 2

---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위원회 및 워크숍 회의록

#### 1. 평가위원회 회의록

##### 1.1. 제1차 평가위원회

###### 1.1.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년 5월 16일(화), 11:00~12:30
-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층 중회의실(219호)

###### 1.1.2 참석자

- 원내(5명) : 강창용, 박기환, 서대석, 최진용, 김예리
- 원외(14명) : 오세익(전 KREI원장), 남주석(강원대학교), 김학진(서울대학교), 조가옥(전북대학교), 정선옥(충남대학교), 김윤식(경상대학교), 신승엽(국립농업과학원), 김경선(농촌진흥청), 김경수(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임병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박철선(한국과수농협연합회), 심창훈(한

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마두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승목(농림축산식품부), 김철순(농림축산식품부), 한민우(더비엔아이), 현성민(더비엔아이), 유승옥(에코비즈), 김동현(에코비즈), 김우형(에그리나), 정영근(에그리나), 이상호(하딘)

### 1.1.3. 주요 논의 내용

- 오세익(평가위원장):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들은 평가지표가 제대로 만들어 졌는지, 평가항목별로 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외에 농민들이 어떻게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해서 코멘트를 줘야 하지만 오늘 잠깐으로 평가지표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임. 현재 평가지표 측정 기준에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평가항목 외에 더 추가하여야 할 항목이 있는지 논의해 보고 제안해 주시길 바람.
- 임병희: 지역별로 특화된 농업부분이 있는데, 임대농기계 사업소에도 특화 농업에 대한 적절한 농기계 보유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장과 매치되는 농기계 보유수가 평가지표에 들어갔으면 함.
- 오세익: 밭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이 있고 논농업에 집중된 지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안할 것인지 논의해 봐야 함. 밭농업 기계화 촉진에 전체 10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밭농업이 활성화 되지 않은 지역은 불리하게 됨.
- 조가옥: 농협의 농기계 은행사업은 트랙터, 이앙기, 콤팩트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밭작물 위주이므로 차별성이 있어야 함.
- 최승목: 조가옥 위원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것은 수도작 위

주의 농기계이며, 임대사업은 발작물 축진을 위한 사업임. 배점 10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음. 현재 쌀은 남아도는 실정이므로 논에도 발작물을 심자는 것이 정부의 기조임. 평가라는 것은 정부정책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도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 정책의 정책방향을 보았을 때, 발농업 기계화 축진에 배점을 많이 주는 것이 합리적임.

- 임병희: 수도작 발농업의 구분 보다는, 지역별로 필요한 기계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음.
- 박기환: 2-1.임대실적의 평가지표를 보면 작업기의 특성에 따른 작업일수가 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안이 될 것임.
- 오세익: 발농사용 기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음. 본체가 아닌 작업기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벼농사용 작업기도 여기에 해당 될 것이며, 발농사용 작업기 역시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평가 시 불이익은 없을 것임. 결국 발농사용 농기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박기환: 발농사용 농기계는 따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소를 조사할 때, 임대농기계 용도를 구분해서 분류하게 되어 있음. 농기계 평가에서는 동력기는 제외됨.
- 강창용: 농식품부 지침에 60마력 이상 트랙터, 이앙기 등은 제외됨. 경운정지 같은 경우는 발농사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음.
- 오세익: 강창용 박사의 말씀대로 분류하게 되면 논농사 지역이 받는 큰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 신승엽: 현재의 평가지표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밭농업 지역은 파종·이식 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벼농사 지역에 분명히 불리한 점이 발생함. 벼농사 지역이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봐야 함.
- 오세익: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음. 먼저,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밭농업 기계화의 활성화임. 평가사항에 밭농업에 대한 메리트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임. 또한, 현재 완성된 평가지표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규분포화한 후 도출된 결과가 논농업 지역에 현저하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때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할지 건의함.
- 정선옥: 시뮬레이션이 필요함. 평가지표 중 어느 항목은 다른 항목과 상충되는 것이 있음. 예를 들어 사업이 잘 지속되려면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 하나,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농민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지 않게 됨. 어느 쪽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함.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함.
- 오세익: 의견을 추가하여 평가항목 여섯 가지에 대한 배점인데, 여섯 가지 항목의 배점이 중요한 항목별로 잘 배점이 되어 있는지 봐야 함.
- 임병희: 수요자 평가가 너무 낮게 배점되어 있음. 수요자 평가에 따라서 이용실적이나 제한, 추후의 지속성 여부 등이 더 크게 더 작용할 것임. 수요자 평가의 배점을 늘리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함.
- 김윤식: 사업지속성 확보 부분의 가점이 올라가야 함. 임대사업소의 지속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사업지속성의 5번 항목의 배점이 낮음.

- 조가옥: 인력확보 부분의 배점이 너무 높게 측정되어 있으며, 6번의 평가항목은 1번과 5번에 넣어 유사한 항목들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선옥: 농가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옳은지 논의해 보아야 함. 조직의 안정적 확보, 인력부분에서 전문직의 확보, 예산 확보가 지속성에 도움이 되지 농가 만족도 제고가 도움이 되는지는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조직이 정규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렬에 상관없이 예산과 조직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함. 수요자 위주로 맞추다 보니 누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함.
- 마두환: 현재보다 더 나은 평가지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새로운 지표도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음. 필요성과 목적에 충실하였으면 좋겠음. 임대사업소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지,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목적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한 사업소를 시뮬레이션하여 측정한 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음.
- 최승묵: 실질적으로 평가항목과 배점은 현장에 있는 농기계임 대사업소 담당자의 의견과 국회의 요구 자료, 그리고 기재부의 예산 심의 시의 요청 사항 등을 아울러서 선정한 것임. 배점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체적인 요구이며, 예산 심의하는 곳의 의도에 맞게 책정한 것임. 하지만 평가위원들이 문제를 제시하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것임.
- 오세익: 이 사업은 정책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연구진과 농식품부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임. 여러 평가위원들이 코멘트를 주셨고, 코멘트 내용들이 모두 다 중요함. 모든 위원님들이 돌아가셔서 고민을 좀 더 해 보시고, 이러한 내용은 꼭 보완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진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함. 연구진도 코멘트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며, 지표상에 수정·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조사를 해 보고 결과

에 따라 2차적으로 수정·보완 하였으면 함. 또한, 조직원 평가라는 것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곳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모두 다 만점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과연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될 것인지 고민해 보기로 함.

## 1.2. 제2차 평가위원회

### 1.2.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년 7월 6일(목), 11:30~16:00
-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송 농업관측상황실

### 1.2.2. 참석자

- 원내(4명) : 강창용, 박영구, 최진용, 김예리
- 원외(12명) : 오세익(전 KREI원장), 정선옥(충남대학교), 김윤식(경상대학교), 김태균(경북대학교), 신승엽(국립농업과학원), 김경선(농촌진흥청), 한민우(더비엔아이), 정단비(더비엔아이), 유찬주(에코비즈), 김동현(에코비즈), 김우형(에그리나), 정명기(에그리나)

### 1.2.3. 주요 논의 내용

#### 가. 평가조사 결과

- 조사업체들은 농기계의 실제 내용연수가 법정 내용연수보다 적다고 했는데, 조사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오히려 많은 경우도 있음.
  - 전자는 개별사용에 따른 비효율로, 후자는 사용하지 못해서 나타는 경우



와 정말 사업소에서 잘 관리해서 나오는 결과로 추정됨.

- 조기 폐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자료가 중요함.
- 유휴 농기계 발생
  - 유휴 농기계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별로 예비용 내지는 지역 특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농가는 신형에 비해 구형 모델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음.
- 여성친화형 농기계
  -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과거에 구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분하기도 어렵고 실익이 없음.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므로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여성친화형 농기계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올해 결과(데이터)를 확인 후 내년에 검토하기로 함.
- 비용 처리문제
  - 운영비용이 많은가 적은가를 판단하려면, 농기계 잔존가치로만 나눠서 총 운영비용을 산출하는 것보다 농기계 운영사업을 위해 필요한 농기계 수리, 창고 등을 다 포함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함.
- 이용농가 비용절감 효과
  - 여러 방법으로 검토하여 사용

#### 나. 지역특화, 수도작 농기계

- 지역별 특화농업에 대한 농기계 평가 조정
  - 사실 면적이거나 규모가 작은 지역특화 농기계의 경우 이용실적이 저조할 텐데 다른 이유로 인한 실적 저조와는 다름.

- 임대사업은 이러한 소규모 사용 부분도 중요하다고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밭농업 활성화는 이해되나,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 피해 우려
  -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구입하여 운영하는 경우나 극단적으로 중앙정부 지원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이후 새로 지역에 맞도록 수도권 농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경우 등은 평가 기준이 모호함.
  - 일단 지대별로 구분한 다음 결과를 보고 지나친 결과 나오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밭농사용과 밭과 논 동시 사용농기계 구분
  - 현재 정부지침에 60마력 이상 트랙터, 이앙기 등은 제외 됨. 이전에는 50마력 이상을 구입 금지함.
  - 물론, 중앙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해당기종의 구입을 배제해야 하지만, 경운·정지 같은 경우는 밭농사용으로도 볼 수 있음. 따라서 논과 밭 모두 사용하는 농기계는 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앙기와 콤바인은 제외하도록 함.

#### 다. 평가배점

- 수요자 평가점수가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사업지속성도 낮은 반면, 인력 확보는 배점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배점을 조정했음.
- 임대농기계 정책 적합도
  - 경운·정지, 일반관리, 파종, 수확, 이식 중에서 이식, 수확, 파종, 일반관리, 경운·정지 순으로 많이 사용해야 정책 적합도가 높다는 판단임.

## ○ 임대료 수준

- 임대사업소는 전반적으로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수익사업이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연구원 내부적으로 고민 중임.
- 그러나 정부에서 표준 단기 임대료 기준을 설정한 것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이야기이므로 임대료에 근접 할수록(100에 가까울수록) 배점을 주기로 함.

**라. 상충지표**

- 농민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임대사업소 운영을 잘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야 함. 이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동반됨.
- 임대사업소 직원의 내부 평가가 공정할지 의문시 됨. 대부분 좋게 나올 것으로 판단됨.
- 임대사업소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은 아닐 것임. 지금으로는 정부 제안 표준 임대료 달성하면 높은 점수를 주는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음.

**마. 특이사항**

-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여 농민들의 자격면허취득을 돕고 있음.
  - 영천, 경산, 청도 임대사업소는 각기 출자, 연계사업으로 농기계훈련센터 건립을 위하여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임. 이들 3개 시군 사업소는 안전교육, 농업인 기술인력과 일자리 연계 등 3개 시군이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임.
- 노후농기계를 임대일수에 반영해야 함. 내구연안을 감안해서 조정해주지 않

는다면 노후농기계는 불이익을 받게 됨.

- 어느 임대사업소나 공통된 사항이므로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함.

#### 바. 가점 및 감점

-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노력하여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임대료의 카드결제, 농기계 뒤 반사판 설치, 세차장, 음주측정 등),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길 바람.
- 귀농자 우대를 조례에 포함시킨 곳이 있는데, 이것이 정책에 부합하다면 가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보험의무 여부, 교육장 설치 유무 등은 가점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평가항목에 추가했으면 좋겠음.
-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력 운영
  - 신규 인력 채용, 단기계약의 장기 무기계약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시책에 부합한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3. 제3차 평가위원회

#### 1.3.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년 7월 26(수) 11:00~16:00
- 장소: 서울스퀘어(중회의실2)

#### 1.3.2. 참석자

- 원내(6명) : 강창용, 박기환, 서대석, 박영구, 최진용, 김예리

- 원외(20명) : 오세익(전 KREI 원장), 남주석(강원대), 안병일(고려대), 김학진(서울대), 조가옥(전북대), 정선옥(충남대), 김윤식(경상대), 신승엽(국립농업과학원), 김경수(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임병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박철선(한국과수농협연합회), 최호종(농림축산식품부), 최승묵(농림축산식품부), 김철순(농림축산식품부), 한민우(더비엔아이), 정단비(더비엔아이), 유찬주(에코비즈), 김동현(에코비즈), 김우형(에그리나), 정명기(에그리나)

### 1.3.3. 주요 논의 내용

#### 가. 조사업체의 추천 임대사업소 관련 논의

- 최호종: 지표를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며, 차기 지표 검토 시에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3)추천 임대사업소’에 관해서는 10개 이상의 시군에 포상을 하게 되면 포상금이 푼돈이 되므로 평가를 하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되어 내년 평가에서 고려하도록 함. 금년은 정량적인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는 생각임. 조사업체로부터 추천 받은 우수임대사업소는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되어 있으며, 어떤 조사업체에서 하느냐에 따라 추천 임대사업소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임.
- 최승묵: 금년 사업이 시범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10억 정도임. 이 평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전국적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전제조건 하에 국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상태임. 지역을 할당하여 순위를 배분하기 보다는 기존 안대로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지표의 기준을 가지고 순위를 정하여 평가하면 좋겠다는 입장임.
- 강창용: 10개의 우수 임대사업소를 뽑는 것은 원칙이지만, 이것을 전국단위로 10개를 선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할당 배분을 할 것인지가 논의 사항

임. 그런데 지역 할당 배분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지대별로 주요 농작물 등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역별로 호남 3, 영남 3, 중부 4로 지역 농업환경을 고려하여 배분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김윤식: 평가 결과를 확인하니 당초 이 평가에 대하여 초기에 우려했던 부분이 나타남. 하지만 올해는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수용하며, 대신 내년도 평가의 평가지표가 수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임대사업소가 순위권에 있어야 하는데, 조사업체가 추천한 우수 임대사업소와 전체 순위 결과가 상이함. 이것은 평가지표를 나름대로 잘 했다고 했지만, 감안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방증임. 그렇다면 이런 임대사업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센티브 주는 것은 평가 상위 10개 사업소를 주되, 우수 추천 임대사업소는 포상을 해줌으로써 보완하는 것이 어떠한지 건의함.
- 오세익(평가위원장): 김윤식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음. 금년은 정량 분석 위주로 하되, 정성분석에 의하여 추천된 임대사업소는 엄선하여 다른 방법으로 포상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최호종 과장은 금년 인센티브가 한정되어 있어 이것을 나누면 푼돈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여 주셨음. 장관 표창 같은 경우도 추가로 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금년은 정량분석 위주로 된 순위를 가지고 상위 10개 임대사업소를 결정하도록 하며, 정성분석은 이번 년도에 고려치 않는 것으로 함. 금년은 시행착오 연도로 생각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포함하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좀 더 고민하는 것이 좋겠음.
- 신승엽: 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이며, 정성적인 평가는 어떠한 관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 조사 후, 판단하여 추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김철순: 금년의 평가 결과가 내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함. 내년 평가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금년의 평가 결과가 내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논의의 관점이 달라짐.
- 강창용: 100%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가점을 주는 정도이지, 금년도 평가와 내년도 평가는 원칙적으로 무관함.
- 최호중: 우수 임대사업소 추천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나. 임대사업소 상위 시군 개소수 결정 관련 논의

- 정량분석에 의하여 상위 14개 임대사업소를 결정하도록 함.

#### 다. 상위 시군의 지역 배분 검토 유무

- 조가옥: 현재 권역별로 분소 개수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함.
- 이상호: 이번 평가조사에서 이미 임대사업소 분소까지 모두 조사하였으며, 결과 분석 시에 시·도별로 묶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최승목: 임대사업을 평가하는 목적은 각 지자체가 정책 목표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해 나가라는 의미이며, 이는 각 지방자치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임대사업의 운영성과가 달라짐. 이번 조사의 결과만을 보았을 때 여실히 나타남.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는 평가가 잘 나왔다고 판단이 되며, 이와 반대로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은 평가가 잘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됨. 그러므로 이 결과를 존중하되, 컨설팅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임대사업에 대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독려

가 되어야 함.

- 정선옥: 평가 순위를 미루어 생각해보면, 발농사가 중요한 곳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기울였을 것임. 이 평가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맞는 시군에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 임병희: 결과만 보았을 때, 일부 사업소 등은 아쉬운 부분이 있음. 이용실적 과 이용농가가 많고 수요자 평가가 높으나, 순위에는 들지 못했기 때문임. 이번 평가로 예산 등의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포상 등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오세익: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배점 표에서 고려가 되었음. 전국 순위 14위 중, 중부권이 몇 곳인지 궁금함.
- 박기환: 전국순위 14위 중, 중부권 6개, 호남권 6개, 영남권 2개임.
- 오세익: 현재 결과의 전국 순위 10권 안에는 중부 5, 호남 3, 영남 2의 임대 사업소가 있음. 논의의 주목적은 전국 10위권 순위에 지역별로 형평성을 헤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임. 염려하는 부분은 영남권의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되었으나, 전체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직원의 숫자가 영남권이 가장 적으나 임대사업소 수는 가장 많음. 그러므로 전국 순위에 영남권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나 생각됨. 아울러 금년도가 이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기 힘든 부분이 있음. 시물레이션 결과에 따라 금년도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고려하여 내년도 평가지표를 논의 하는 자리에서는 보완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함. 내년도 평가에서는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되어야 함.
- 전체결론: (1) 임대사업소 상위 시군 개소수는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에 상



위 14개 임대사업소를 올리되, 농식품부에서 결재 받은 상황에 따라 포상을 하도록 함. (2) 상위 시군의 지역 배분 검토 유무에 대한 부분은 제1안인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 점수 순서로 결정하기로 함.

## 라. 질의사항

- 김경수: 임대사업은 지자체 임대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대부분 운영하지만, 지난해나 올해 같은 경우 임대사업을 부분적으로 농협에 위탁 운영 하는 사례가 있는데, 조사하면서 권역별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함.
- 유찬주: 호남권은 없었음.
- 김경수: 호남권 같은 경우 A시에서 최근에 부분적으로 농협에서 위탁하는 사례가 더러 있으며, B 지자체에도 있음. 이것은 좋은 사례일 수도 있으나,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음.
- 이상호: 일례로 C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250대이며, C시 농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1000대임. 이 때문에 이번에는 농협으로 넘어간 부분은 조사대상 포함되지 않으며,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조사하였음. 향후 농식품부에서 용역으로 넘겨서 운영하는 것을 일원화시켜 정리하는 방향을 계획해야 함. 이번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됨.
- 오세익: 금년도는 위탁 운영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고, 문제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에는 제외를 시키도록 함. 그러나 내년도 조사에서는 연구원에서 사전조사 등으로 파악하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사하도록 함. 이번 연도는 제외 함.
- 조가옥: 농협 위탁운영에 관한 중요성이 있을 텐데 무엇인지 궁금함.

- 오세익: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농기계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위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됨.
- 신승엽: 이는 앞으로 권장해야 할 사항임.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면서 지역농협에 위탁을 하여 운영하면, 비용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임.
- 오세익: 그래서 권장하고 싶은 사항은 이 사업이 끝난 직후에 조사를 하든지 혹은 미리 위탁하고 있는 지자체 몇 곳을 사전조사하여 조사표에 넣어야 할지의 여부를 선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다만, 금년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반영 혹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마. 기타 평가의원 건의사항

- 김학진: 이번 조사가 의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췄다고 생각함. 평가를 위한 조사이지만, 실태조사를 한 것이므로 향후 임대사업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인력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임대사업을 위하여 이러한 부분들은 보완하였으면 함.
- 오세익: 조사업체 쪽에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람.
- 유찬주: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으며, 데이터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면 임대사업소 업무적으로 플러스가 될 것임. 데이터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평가하는데 있어 상당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두 번째로는 임대사업소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함. 계약직은 2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업무 매뉴얼, 운영지침 등이 있으면 인력이 수시로 바뀌더라도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

여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음. 현재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정선옥: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농기계팀의 역할이 배제된 부분이 있음.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사를 할 때에도 3개 업체에서 도농업기술원을 통하여 자료를 종합하고, 관리, 데이터 취득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조가옥: 우수 임대사업소 추천을 분야별로 할 것인지 등을 논의 하여야 함.
- 강창용: 필요하다면 우수임대사업소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할 생각임.

#### 바. 워크숍

- 강창용: 전국에 있는 교관들은 모아주면 서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며, 1박 2일로 했으면 함. 정량적 평가로 순위권 임대사업소를 발표하도록 하고, 정성적 평가로 우수 임대사업소를 추천받아 소개시키거나 연구원 차원에서 포상을 주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겠음.
- 기타 의견: 발표 4개, 주제발표 1개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면 좋겠음.

### 1.4. 제4차 평가위원회

#### 1.4.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년 12월 21(목) 10:00~12:30
- 장소: 용산역 회의실(itx3)

## 1.4.2. 참석자

- 원내(6명): 강창용, 박기환, 서대석, 박영구, 최진용, 김예리
- 원외(35명): 오세익(전 KREI 원장), 남주석(강원대), 안병일(고려대), 김학진(서울대), 조가옥(전북대), 정선옥(충남대), 김석현(전남대), 김운식(경상대), 김태균(경북대), 신승엽(국립농업과학원), 최호중(농림축산식품부), 최승묵(농림축산식품부), 이형석(농림축산식품부), 김철순(농림축산식품부), 한민우(더비엔아이), 현성민(더비엔아이), 정단비(더비엔아이), 고민구(더비엔아이), 박종화(더비엔아이), 박순철(더비엔아이), 박용민(더비엔아이), 최소원(더비엔아이), 유찬주(에코비즈), 김동현(에코비즈), 안기선(에코비즈), 송가영(에코비즈), 강혜경(에코비즈), 유승옥(에코비즈), 형노준(에코비즈), 김우형(예그리나), 정명기(예그리나), 정명근(예그리나), 김민철(예그리나), 박희(예그리나), 윤수진(예그리나)

## 1.4.3. 주요 논의 내용

### 가. 평가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 지역별 지표의 특성 비교 필요

- 개별 평가지표의 성격, 분포도가 어떠한지 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지표 중, 이용농가 수와 임대료 수준 등 중요 평가 항목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일정 특성별(지역별) 평가지표 별 분포도가 나올 것이므로 이러한 분포도를 통해 상충되는 항목들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나. 이용률 저위 농기계의 성격 상이

- 아래와 같이 각기 다른 경우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것인지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 경과 농기계의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가 필요함.

- 관리 부재로 미사용한 경우
- 지역 내 소규모 경영면적 대상 농기계의 경우
- 내용연수 경과 후 사용 농기계의 경우
- 내용연수 이내인데, 너무 많이 사용해서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 다. 질적인 부분의 미반영 부분

- 기본적으로 평가와 관련지표는 단순화해야 함. 지역별 특성을 전부 반영하다보면 평가가 불가능함. 어차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으므로 그 방향의 평가가 필요함.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지, 어디까지 반영할지는 매우 어려움.
- 정성적 평가 20%, 정량적 평가에 80% 비중을 두는 것이 이상적임. 하지만 정성평가가 어려우니 우수사례로 해서 처리하면 좋을 듯함. 평가는 가능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어려운 부분은 개별 시상으로 하면 좋겠음.

#### 라. 여성친화형, 발전용 농기계 구분의 실익

-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구성 비율을 계산하려면, 여성친화형 농기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함. 하지만 현장에서의 인식과 구별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기종을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지 검토가 필요함.
- 여성친화형 농기계, 발전용 농기계 구분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있음.

#### 마. 표준 총 인력, 정규인력 기준표 작성

- 임대농기계가 400대 이상인 임대사업소는 71개소인데, 적용기준이 없는 실정이어서 2017년에는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함.
- 2018년도 기준표로 기존의 표에 조사치, 평균치를 활용해서 연장, 사용하면 좋겠음.

#### 바. 평가지표 사전공개

- 2018년도 평가지표가 변경될 경우 평가지표를 미리 공지함으로써 임대사업 운영자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할 수 있음.

#### 사. 배점 조정과 가·감점 부분 등

- 임대실적 및 이용농가수와 이용농가 비용절감효과 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배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음.
- 2017년도 컨설팅에서 지적된 사항을 2018년에 개선하였을 경우 가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남음. 각 항목별로 일정 비율(00%)을 가(加)하는 방법과 정량(건당 몇 점)으로 하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함.
- 주산단지의 경우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임대는 중복지원의 여지가 있음. 농촌진흥청 “편의장비지원사업(명칭은 정확하지 않는데)”과도 중복되고 있다고 함. 들녘별 경영체사업과도 장기임대 시 중복여지 있는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주산단지의 여부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우수사례집도 좋지만 열등사례집은 어떠한지 검토할 여지가 있음.

## 2. 전국 임대사업소 담당자 대상 워크숍 회의록

### 2.1. 제1차 워크숍(“전국 농기계임대사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

#### 2.1.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년 9월 4~5일(1박 2일)
- 장소: 천안 상록리조트(그랜드홀)

#### 2.1.2. 참석자

- 원내(6명): 강창용, 박기환, 서대석, 박영구, 최진용, 김예리
- 원외: 최호중(농식품부 과장) 및 관계 담당자, 각 도 담당자와 전국 14개 시군 임대사업 담당자, 조사협력업체 등 약 200여명

#### 2.1.3. 주요 발표 내용

-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추진 정책 설명
  - 최호중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평가결과와 향후 컨설팅 내용과 일정
  - 박기환 박사, 서대석 박사

- 우수 사업소 사례발표
  - 홍천군, 무주군, 안동시
  
- 전체와 집단 토의
  - 김승주 전국 협의회장 주도

## 2.1.4. 주요 논의 내용

### 가. 조직과 업무분장 관련

- 임대사업의 경우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로 2원화되어 있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함. 임대사업과 시행에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도 이야기해야 함.
  
- 설명: 농촌진흥청은 교육과 훈련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농진청 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임. 정책은 농식품부에서 만들고, 행정라인을 통해 시행, 감독하고 있음. 평가결과와 컨설팅 등은 자치단체장을 포함, 농업기술센터장에게도 전달될 것임.

### 나. 인력과 직렬, 인건비, 임시고용에 의한 전문성 결여 등

- 임대사업규모에 비해 정규인력이 적고, 공업직, 지도직, 행정직, 전문경력관, 공무원, 기간제, 임시직, 인턴직 등 너무 복잡함.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면 좋겠음. 공무원도 몇 년 후 재계약하거나 떠나게 되어 전문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상존함.
  
- 설명: 실태를 먼저 정확하게 조사해 보겠음. 현재로 인건비 지원은 불가능함. 인력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문제로 보임.



#### 다. 임대료의 통일

- 시·군 단위 임대료가 달라서 갈등이 표출됨.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설명: 현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심의위원회에서 합당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칫 지역 실정을 모르고 중앙에서 결정했다고 비난이 쇄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라. 전산 시스템 강화, 카드결제

- 설명: 현재 관리 시스템과 평가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내년에는 시행하고, 여기에 바코드, 신용카드 사용실적 연계 등을 검토할 예정임.

#### 마. 여성친화형 농기계 재고

-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렵고, 사실 어느 것이 여성친화형인지도 잘 모르겠음.
- 설명: 여성경영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이 권장되었고, 일부에서는 좋다는 의견도 있음.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명단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바. 세차장 관련

- 세차의 경우 환경법 저촉 문제가 있으며, 세륜장 역시 기름이 유출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간단한 사항이 아님.
- 설명: 농기계를 세척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움. 관련 부분에 대한 KREI 현장조사에서 문제와 개선안을 찾으려 하는 것

이 좋겠음.

#### 사. 지게차, 소형건설기계 규격 문제

- 건설용 지게차를 농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전복사고의 문제가 있으며, 보험도 적용되지 않음. 굴삭기의 경우 현재 1톤 미만은 무면허 사용이 가능한 농업용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무면허 범위 규격을 2~3톤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음.
- 설명: 국토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했지만 상당히 어려움.

#### 아. 신기술, 신기종의 경우 3~4년 평가 유예, 기계구입 편의성

-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농기계의 경우 초기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실제 현장 적용 시까지 평가에서 유예해 주면 좋겠음. 현재 조달과 입찰에 의해 농기계를 확보하는데, 방법의 단순화가 가능한지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음.
- 설명: 신기술이 적용된 농기계의 경우 정책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농기계 구매 방법을 별도로 단순화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사안으로 어려움.

#### 자. 포상관계

- 평가 우수 사업소 예산의 추가 지원과 함께 포상과 상금도 고려해 주길 바람. 아울러 외국 선진지 견학도 필요함.
- 설명: 포상과 상금 지급은 향후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임. 선진지 견학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검토할 사안이며, 바로 시행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차. 평가 시 지역별 특성 반영

-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평야지와 산간지가 다르고, 주 재배작목에 따라 다름. 이를 반영한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음. 참외 산지는 퇴비살포기가 많이 사용됨. 대상 품목과 면적에 따라 임대설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섬의 경우 섬마다 농기계를 보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설명: 기본적으로 밭작물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보유 농기계 대수가 많거나 혹은 적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지대별 구분의 실익이 현재로는 없음. 주 재배작목과 재배면적의 차이까지를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임. 다만, 섬의 경우 활용도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평가 전에 검토를 하겠음.

#### 타. 컨설팅의 그룹화

- 설명: 추후 각 임대사업소 컨설팅 자료가 나오면 권역별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으며, 개별 임대사업소별로도 할 것임.

## 2.2. 제2차 워크숍(“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활성화 방안 워크숍”)

### 2.2.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년 12월 14~15일(1박 2일)
- 장소: 천안 상록리조트(그랜드홀)

### 2.2.2. 참석자

- 원내(6명): 강창용, 박기환, 서대석, 박영구, 최진용, 김예리

- 원외: 농식품부 관계자, 도 및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담당자, 조사협력업체 등

### 2.2.3. 주요 발표 내용

- 주요 8차 농업기계화 계획과 내년도 농기정책 설명
  - 이형석 주무관(농기자재정책팀)
- 전국 임대사업소 평가 세부 결과 설명
  - 박기환 박사(KREI 연구진)
- 농기계임대사업소 컨설팅 경과와 결과
  - 서대석 박사(KREI 연구진)
- 농기계 임대사업의 10대 과제와 개선방안
  - 박영구 연구원(KREI 연구진)
- 전체와 집단 토의
  - 김승주 전국 협의회장 주도

### 2.2.4. 주요 논의 내용

- (강원 형성) 1)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임대사업소의 개소수를 확대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나, 개소수만 확대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차라리 2~3개의 적은 사업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대농민 서비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사업소 확대에 투자되는 예산을 농기계 교체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한지 생각해 봄. 2) 금일 KREI에서 발표한 내용

을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 관련 전국 농기계 보유대수가 18% 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현재 실적 또한 18% 이상인 것인지 궁금함.

- (농식품부 답변) 임대사업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기계 임대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부분에 있음. 임대된 농기계는 차량 운송을 통하여 가져가는 것이 원칙임. 이에 임대인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사업소를 확대할 예정이나, 농식품부에서는 평균 적정 임대사업소 개수를 시군당 3개소 내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 필요성에 의해 사업소를 신청하면 됨.
- (농식품부 답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련 예산은 임대사업소 확대보다는 농기계 교체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음. 또한, 예산 수립 시 시군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농식품부 답변)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도입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부분임. 해당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으로서 이를 배려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됨. 처음 도입시기부터 다소 공격적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 2016년도에 많은 이슈가 발생하였음. 사업소 담당자 분들의 의견을 받아 2018년에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기종을 확대할 예정임.
- (KREI 답변) 현재 2016년 평가 및 컨설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내용에 대해 실적을 확인해 보겠음.
- (전남 고흥) 워크숍 자료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30%가 농기계 임대업무라고 하는데, 이를 근거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과체제'로 가야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 또한,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명확한(농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성친화형 농기계인지, 여성이 쓰기 편하도록

제작된 농기계가 여성친화형인지) 범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KREI 답변) 농업기술센터 및 임대사업소의 인력수를 보고 업무량을 판단 하였음. 다만, 근무시간 및 강도가 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는 다르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의 인력이 오히려 더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에 농업기술센터 하위 조직에 두는 것 보다는 과체제(별도조직)로 가야 타당하다고 생각함.
  - (농식품부 답변) 농기계 자체가 여성 체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농식품부에서 생각하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여성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조작하기 편한 농기계, 여성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농기계로 보고 있음.
  - (농식품부 의견) 여성친화형 농기계에 대한 개정의견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현장에서의 의견이 부족하였음. 공문서상 의견 개진이 많이 없을 경우 정책에 반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요조사 시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함.
- (경남 창원) 발농사용 농기계(작목 또는 지목)에 대한 기준이 궁금함.
- (농식품부 답변) 작목에 따라 발농사용 농기계를 구분함.
- (경기 연천) 주산지 장기임대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함. 임대농가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임대사업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됨.
- (농식품부 답변) 장기임대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단기 위주로 추진하고 있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소 담당자

의 부담 및 우려가 없는 부분으로 관리방향을 설정할 것이며, 장기임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겠음.

- (전남 영암) 단시간기간제근로자보호법(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기간제 인력을 최대 2년까지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기간제 인력의 활용기간 증가에 대해 서면 공문을 통한 의견개진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소가 시행하고 있는 편의서비스에 대해 전국 사업소 공유가 필요함. 또한, 지침 상에서는 임대료를 1%로 책정하게 되어있으나, 실제 군수의 공약으로 50%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있음. 이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적어지게 되는데, 평가 시 이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KREI 답변) 금년도 비용절감효과 부분을 분석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함.
- (농식품부 답변) 평가점수에 대한 공유는 할 수 없음. 다만, 어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어떠한 편의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하여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겠음.
- (KREI 답변) 임대료는 정부에서 제시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 (전남 영광) 현재 평가지표는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음. 오히려 농기계 임대가 임대인에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었는가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이 선호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기여효과(정량/정성적) 분석을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음. 평가에 대한 시상이 없는 부분이 아쉬움.

- (KREI 답변) 금년도 평가에서 비용절감효과 부분을 분석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시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차년도에는 시상식(공식적인 자리)을 마련토록 하겠음.
  
- (경북 청송) 농업직 공무원 직렬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사업소별 농기계 대수에 따른 인력 규모 등의 지침(정규직 n명 등) 등이 필요함.
  
- (농식품부 답변) 인력문제는 농림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의제기를 계속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